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718-01

정책보고서 2019-9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임완섭·김태완·김문길·최현수·함영진·황도경·정은희·김은정
안수란·정용문·윤여선·박은주·안영



【책임연구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용문 경남대학교 교수

윤여선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Research Fellow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 | |
|--|------------|
| 요 약 | 1 |
| 제1장 서 론 | 17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
| 제3절 주요 부정수급 대책 및 현황 | 30 |
| 제2장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 47 |
| 제1절 개요 | 49 |
| 제2절 사회보장급여 | 50 |
| 제3절 부정수급 | 58 |
| 제3장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 및 사후관리 체계와 조사방향 | 73 |
| 제1절 사회보험 | 75 |
| 제2절 공공부조 | 114 |
| 제3절 사회서비스 | 126 |
| 제4절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 143 |
| 제4장 해외 사례 | 169 |
| 제1절 개요 | 171 |
| 제2절 영국 | 172 |
| 제3절 호주 | 185 |
| 제4절 미국 | 209 |
| 제5장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 225 |
| 제1절 주요 결과를 통한 개념적 접근 | 227 |

제2절 조사방안 234

참고문헌 245

부록 256

[부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관부처별 보장기관 현황 256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259

[부록 3] 호주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267

[부록 4] 실태조사표 268

표 목차

| | |
|--|----|
| 〈표 1-1〉 e나라도움 부정수급 관리체계 | 32 |
| 〈표 1-2〉 복지·보조금 신고센터 도입연혁 | 34 |
| 〈표 1-3〉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2013.7) | 42 |
| 〈표 1-4〉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2010~2012) | 42 |
| 〈표 1-5〉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결과(2013.6~11월) | 43 |
| 〈표 1-6〉 검·경 국고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결과(2014) | 43 |
| 〈표 1-7〉 영유아 보육·교육분야 신고 유형별 현황(2018.10~2019.1) | 44 |
| 〈표 1-8〉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및 유형 | 45 |
| 〈표 1-9〉 국고보조금 분야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 45 |
| 〈표 2-1〉 작동원리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 53 |
| 〈표 2-2〉 한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분류 | 54 |
| 〈표 2-3〉 사회보장사업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형태(지원형태) | 56 |
| 〈표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 56 |
| 〈표 2-5〉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 현황 | 57 |
| 〈표 2-6〉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별 분류: 제도, 지원 대상, 급여지원 형태 | 57 |
| 〈표 2-7〉 type I, type II 오류 | 60 |
| 〈표 2-8〉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대분류 | 61 |
| 〈표 2-9〉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중분류 | 61 |
| 〈표 2-10〉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소분류 | 61 |
| 〈표 2-11〉 부정수급 유형 표준 분류(안) | 62 |
| 〈표 2-12〉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 64 |
| 〈표 2-12〉 부정수급 유형 분류 : 대분류 | 69 |
| 〈표 2-13〉 부정수급 유형 분류 : 고의성 중분류 | 69 |
| 〈표 2-14〉 부정수급 유형 분류 : 비고의성 중분류 | 69 |
| 〈표 2-15〉 유형화 1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방식 | 70 |
| 〈표 2-16〉 유형화 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 70 |
| 〈표 2-17〉 유형화 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 71 |
| 〈표 2-18〉 유형화 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 71 |
| 〈표 3-1〉 부정수급 관리 조직체계 | 78 |

| | |
|--|-----|
| 〈표 3-2〉 부정수급 관리 인원 | 78 |
| 〈표 3-3〉 부정수급 발생 현황(2015~2019.6) | 79 |
| 〈표 3-4〉 적발 경로별 부정수급 현황(2015~2019.6) | 79 |
| 〈표 3-5〉 부정수급 발생사유 순위별 현황(2015~2019.6) | 80 |
| 〈표 3-6〉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유형별 집계표 양식 | 82 |
| 〈표 3-7〉 건강보험 부당지출 유형 | 86 |
| 〈표 3-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 청구 및 환수 사유 코드 | 91 |
| 〈표 3-9〉 핵심사업과 기금사업의 유형별 집계표 양식(밀출 항목은 삭제) | 95 |
| 〈표 3-10〉 실업보험 부정수급 현황 | 99 |
| 〈표 3-11〉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2014~2018) | 107 |
| 〈표 3-12〉 포상금 지급기준 | 109 |
| 〈표 3-13〉 배액징수 사례(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별표1) | 110 |
| 〈표 3-14〉 산재보험의 유형별 집계표 양식 | 113 |
| 〈표 3-15〉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예시 | 128 |
| 〈표 3-16〉 사업별 지급보류 대상 세부유형 | 131 |
| 〈표 3-17〉 행복e음 환수사유 코드: 사회서비스 사업 | 134 |
| 〈표 3-18〉 전자바우처 지자체 처분 결과 등록 시 위반구분 | 135 |
| 〈표 3-19〉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유형 | 136 |
| 〈표 3-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2018년 기준) | 138 |
| 〈표 3-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점검 결과 | 139 |
| 〈표 3-22〉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국고보조금관리단) | 141 |
| 〈표 3-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부정수급 집계표 | 141 |
| 〈표 3-2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사업 부정수급 집계표 | 142 |
| 〈표 3-25〉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149 |
| 〈표 3-26〉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고의성인 경우 | 149 |
| 〈표 3-27〉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비고의성인 경우 | 150 |
| 〈표 3-28〉 사회복지부문 법령상의 품질관리 유관내용 | 154 |
| 〈표 3-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적정 이용유형 | 156 |
| 〈표 3-30〉 사전 모니터링 유형(43종) | 161 |
| 〈표 3-31〉 행복e음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부적정 대상자 관련 통계 | 167 |
| 〈표 3-32〉 부적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관련 통계 항목과 내역 | 168 |
| 〈표 4-1〉 부정수급의 종류 | 173 |
| 〈표 4-2〉 사회보장급여 부적절 지출 내역: 2018/19 | 175 |
| 〈표 4-3〉 부적절 지출 규모를 위한 표본 규모와 비율 | 176 |

| | |
|--|-----|
| 〈표 4-4〉 부정수급 관리전략 | 181 |
| 〈표 4-5〉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 | 187 |
| 〈표 4-6〉 사회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 | 195 |
| 〈표 4-7〉 데이터 매칭 외부데이터 원천(external sources) | 204 |
| 〈표 4-8〉 데이터 매칭의 비용 및 예산 절감 성과 | 207 |
| 〈표 4-9〉 부정수급 대응 성과 | 208 |
| 〈표 4-10〉 2018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 | 216 |
| 〈표 4-11〉 연도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2012-2019) | 216 |
| 〈표 4-12〉 연도별 미국의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2012-2019) | 217 |
| 〈표 4-13〉 2018년 정부부처·기관별 확인된 부정수급액 | 219 |
| 〈표 4-14〉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원인 | 220 |
| 〈표 4-15〉 부적절 지출 유형 표 | 222 |
| 〈표 5-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사회보장급여 현황 | 237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부정수급 발생 유형화 | 27 |
| [그림 2-1] World bank의 부정수급 유형화 | 58 |
| [그림 2-2]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 기준) | 59 |
| [그림 3-1] 부적정 지출의 스펙트럼 | 85 |
| [그림 3-2] 한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 88 |
| [그림 3-3] 재해발생이후 산재보험급여 수급절차 | 104 |
| [그림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프로세스 | 117 |
| [그림 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 120 |
| [그림 3-6]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 일람 | 122 |
| [그림 3-7]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구분 | 127 |
| [그림 3-8]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업무절차 | 130 |
| [그림 3-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모니터링 절차 | 132 |
| [그림 3-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연계 및 활용 개요 | 146 |
| [그림 4-1] 영국 복지 분야의 부적절 지출과 오류비율(2005-2019, 95% 신뢰구간) | 174 |
| [그림 4-2] GDP 대비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지출 비중 | 186 |
| [그림 4-3] 사회보장 부정수급 기소 추세 | 196 |
| [그림 4-4] 부정수급 분류 모델 | 200 |
| [그림 4-5] 부정수급 관리 방안 | 21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복지수요 증가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으며,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와 사각지대 축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준비 및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급격하고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등 미래사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복지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복지에산 : 123조('16년)→129조('17년)→145조('18년)→161조('19년)

• 이렇게 확대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선 사회보장급여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성장에 발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비수급자의 부적절한 수급을 적발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사회보장분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강화시킴

• 또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비적격 대상자의 부적절한 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부정수급 : 867억('15년)→1,062억('16년)→1,250억('17년)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18년 12월 개정, '19년 6월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하지만, 공적연금 등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도 300여개가

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 2020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그 준비를 위해 해당 조사 대상과 내용, 조사방법,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요구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있는 부정수급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설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동 법이 '19. 6월 시행되고 '20년 최초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방안 및 방법에 관한 사전 연구를 '19년 내에 실시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적용시키고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임

2. 조사 방향

- 실태조사의 목적이 부정수급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현황과 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통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해야 함을 제시
 - 방대한 사회보장분야의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피해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부정수급 현황과 피해

사례에 대한 통계 작성이 필요

- 피해사례는 대상의 특수성을 제시하는 사례중심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피해 사례를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된 분석틀에 투입하여 사업별로 비교 가능한 공통적 속성을 제시하는 양적 방법으로 접근
- 실태조사의 특성상 대상들의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속성 또는 평균적 특성을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밝히는 변수중심방법 (Variable-oriented method)의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피해사례는 부정수급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에 반영되는 형태로 활용되어야 하며, 분류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중요성이 크다면 이는 문헌 연구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

3.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및 분류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발생 현황 피해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됨
-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5호)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법률적 정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조사 범위)
 - 법률적 정의(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에

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따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 이는 중앙부처의 354개 사업('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록된 사업 기준)은 물론 별도의 공단조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회보험과 같은 기금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 모두 해당됨
- 하지만 약 5만 7천개로 추산¹⁾되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그 유형과 관리 실태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시간 및 예산 제약으로 불가능함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도별·급여지원형태별 특성 등에 근거한 유형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조사 방법도 실태조사가 아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그것을 취합하여 활용하는 빅 데이터 분석이 요구됨

○ 따라서 2020년 수행될 실태조사에는 중앙부처 소관의 사회보장급여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 한편, 중앙부처 소관사업의 경우도 사업 특성과 예산 및 부정수급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 정보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분류(유형화)

○ 사회보장급여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제도적 분류기준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임

- 학술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지급대상에 균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사회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범위가 준 보편적이며 차등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사회수당으로 구분하기 모호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여들을 공공부조성 급여로 분류

1) 정홍원 외(2017: 49-50)는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를 파악하였음

- 법률상 정의와는 달리 실제 해당 제로들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구분한다 하더라도 해당 제도 안에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보다 제도적 분류보다 실효성 있는 분류 기준이 필요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제도 분류

| 유형 | 제도명 | | 주요기능 | 보장범위 | 재원조달 |
|-------------|-----------|-------|----------------|----------------------|------------------|
| 사회보험 | 공적연금 | | 노후대비(미래) | 전 국민(직장·지역) | 기여 (임금·소득 기반) |
| | 건강보험 | | 건강보장 | 전 국민(직장·지역) | |
| | 고용보험 | | 소득보장(실직) 고용지원 | 전 임금근로자 자영업업자(임의) | 기여(임금기반) |
| | 산재보험 | | 소득보장(산재) 재활지원 | 전 임금근로자 자영업업자(임의) | |
| 공공부조성 급여 | 수당적 성격 | 기초연금 | 소득보장(노인) | 준 보편적(70%) | 조세 |
| | | 장애인연금 | 소득보장(장애인) | 준 보편적(70%) | |
| | 공공부조 | 기초보장 | 소득보장(빈곤) | 매우 선별적 (엄격한 선정기준) | 조세 |
| | | 자립지원 | 소득보장 (근로빈곤) | 매우 선별적 (수급자중심) | |
| 사회서비스 | 고용지원 | | 취업지원 직업훈련 | 프로그램별상이 선별적 | 조세 |
| | 교육복지 | | 교육서비스 | 보편적·선별적 | |
| | 주거복지 | | 주거서비스 | 선별적 | |
| | 보건의료 | | 의료서비스 | 선별적 | |
| | 복지서비스 | 노인 | 돌봄·생활서비스 | 선별적 | |
| | | 장애인 | 돌봄·생활서비스 | 선별적 | |
| | | 아동 | 돌봄서비스 | 보편적(보육) | |
| | | 가족 | 지원서비스 | 선별적 | |

자료 : 김미곤 외(2018, p.85) <표 2-1> 발췌 및 수정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지원형태’라는 항목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시되어 있는 지원형태는 7개로 구성되어 있음(대여/감면, 바우처,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금, 현물)
 - 위에 제시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분류기준²⁾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
|-----------------|----------------------------|
| 1) 대여/감면-① | ① 이용자_현금(대여비용,비용감면,기회제공포함) |
| 2) 바우처-③ | ② 이용자_현물(물품) |
| 3) 시설입소-④, ⑥, ⑦ | ③ 이용자_바우처 |
| 4) 자원봉사 | ④ 공급자_시설운영지원 |
| 5) 프로그램-⑤ | ⑤ 공급자_사업(프로그램)단위지원 |
| 6) 현금-① | ⑥ 공급자_인건비지원 |
| 7) 현물-② | ⑦ 공급자_시설설비등지원 |
| *이용자, 공급자 구분 필요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지원형태를 이용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으로 구분
(이용자 지원 : 대여·감면, 바우처, 현금, 현물; 공급자 지원 :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 이러한 분류기준을 결합하여 필요시 제도별·지원대상별·급여지원 형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표 제시 가능

| 제도별 | 지원대상 | 급여지원 형태 |
|-------------------------------------|------|---------|
|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성 급여, 사회서비스)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 바우처 |
| | 제공자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
| | | 자원봉사 |

4.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 개념과 범위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으로서의 부정수급의 개념

○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 등을 파악하고 공개해야할 부정수급은 **협의를 부정수급임**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조사해야 하는 부정수급은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

2)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안건(관계부처 합동, 2018.2)으로 제출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음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겠다는 협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함

- 오류나 실수 등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광의의 부정수급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 사후관리 파악과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과 보장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고 관리하는 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실태조사 수행 시 협의의 부정수급만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정수급’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광의의 부정수급은 ‘오류 수급’**으로 **협의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명칭 할 것을 제안함
 - 이는 뒤에 제시되어 있는 유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수급자 기망과 공급자 부패를 부정수급**으로, **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오류나 과실은 오류 수급**으로 분류하는 것임
 - 이는 2020년 실태조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은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함

5.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유형화)

- 실태조사에서 제시할 부정수급 규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탑재되어 있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분류기준과 급여지원 형태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에 적용되는 유형화 기준은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규모 및 실태파악을 위해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유형화)를 적용
- 부정수급 유형화는 고의성 여부,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
 - 대분류 : 부정수급의 고의성에 따라 ‘고의성’, ‘비고의성’으로 구분
 - 중분류 : 고의성 여부 및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

정 오류로 구분

- 하지만 사업별로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의성 판단 불가’ 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형화 1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방식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유형화 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 유형화 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서비스 공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서비스 공급자 |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 | | 서비스 공급자 |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

○ 유형화 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 공모 여부'를 추가

| 유형 구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 | 중분류 | 소분류 |
| | 부정행위 주체 | | 주체간 공모여부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
| | | 서비스 제공자 | 없음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제공자 기망 |
| | 행정담당자 | 없음 | 기망 |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 |
| | | | 부패 | 제공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제공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서비스 제공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제공자 오류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 | | 서비스 제공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정 수급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실태조사 적용

- 유형화1 또는 유형화2는 중앙부처 소관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회보장급여 별 기본 집계표로 적용
- 유형화3 또는 유형화4는 행위 주체중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가능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집계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집계표로 적용 가능
 - 이러한 집계표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코드를 매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초점을 맞출 분야의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6. 조사 내용 및 대상사업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크게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 실태’로 구분
 - ‘부정수급 규모’는 사업별 부정수급의 유형별 현황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관리 실태’는 개별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의미함

□ 대상사업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 즉,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의 조사 대상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등록된 354개(‘19년 기준) 사회보장사업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4개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임
 - 2020년 수행될 첫 번째 실태조사의 경우 정책 대상이 보편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4대 보험 등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 사회보장사업(보조금사업 등) 354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등재 되어 있는 354개의 사회보장사업의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과 부정수급 관리실태
 - 사회보험사업(비보조금사업) 4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 방식으로 가입자의 기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4개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실태
-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는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사업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의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현금급여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 측면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 높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실태 측면에서 가장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조사의 성과의 정책함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예산 규모 100억 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음

7. 조사대상 기관(작성기관)

- ‘부정수급 규모’의 경우 중앙부처의 소관부서가, ‘부정수급 관리 실태’의 경우 각 사업의 보장기관(시군구청, 보훈지청, 보건소 등) 이 조사대상 기관임
 - ‘부정수급 규모’의 조사대상 기관은 354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담당하는 21개 중앙부처의 127개 사업 소관과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부정수급 담당 부서에 대해 조사를 수행
 - ‘부정수급 관리 실태’의 조사대상 기관은 250개 지자체(17개 광역시도, 233개 시군구청), 28개 보훈(지)청, 보건소(약 250개소) 등의 보장기관과 사회보험사업의 운영 또는 사후관리 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고용노동청)임
 - 조사대상 기관은 조사범위와 조사내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음(‘19.4월 기준)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범위 | | 조사대상 기관(작성기관) | 조사방법 |
|----------------------------------|------------------|---|----------------------|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 (예산 등 기본정보 포함) | 354개 사회보장사업 | 21개 중앙부처의 127개 사업과 | 집계조사 (e-나라도움 활용) |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집계조사 (자체 시스템 활용) |
|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실태 | 보장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 250개(17개 광역시도, 233개 시군구) 지자체 | 실태조사표 조사 (조사원 취합) |
| | 지자체가 아닌 보장기관 | 보훈(지)청(6개 지방보훈청, 22개 보훈 지청), 보건소(전국 254개소), 17개 교육청 등 | |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 | |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규모) 집계자료 작성 기관

○ 354개 사회보장급여 : 중앙부처 소관과

○ 사회보험사업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연금급여실 급여조사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 의료기관지원실 · 요양심사실
- 고용보험 :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실질적 담당)

□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 조사 작성 기관

○ 100억원 이상의 현금급여 : 시군구청, 보훈(지)청, 보건소, 교육청 등

○ 사회보험사업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 7개소(연금지급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6개소(보험급여부 · 요양지원부 등), 지방고용청 6개청(부정수급 조사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6개소(부정수급예방부)

8. 조사방법

□ 조사의 방향과 방법은 2020년 수행될 실태 조사에 대한 거버넌스 형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실태조사의 수행이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되면 조사 대상 범위와 조사표 발송 및 취합부문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다른 형태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음

□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축 형태에 따라 조사 방향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조사 단계별 내용과 조사 종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

□ 2단계 조사 실시(1단계 : 중앙부처, 2단계 : 보장기관)

- 1단계 조사는 중앙부처,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로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와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예산, 보장기관, 지원형태 등 확인)를 파악
 -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별 예산, 지원형태, 부정수급 규모 등을 바탕으로 2단계조사('부정수급 관리 실태')를 조사할 사업들을 선정(판별조사)
 - 1단계 조사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고 2단계 조사는 필요한 부문만 조사
-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에서 판별된 사업들의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해당 사업의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1단계 조사에서 부정수급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
 -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250개 지자체, 28개 보훈(지)청, 보건소(약 250개소) 등의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 종류 : 집계조사와 실태조사표 조사

- 집계조사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는 중앙부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집계조사를 활용하여 파악
 -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을 활용하고, 비국고보조금 사업은 해당 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또는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 1〉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행위 주체 | 중분류 | 환수결정 대상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환수건수 | 환수금액 | 제재부가금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 |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 |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 | | |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 | | | |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 2〉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행위 주체 | | 중분류 | 환수결정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실 환수건수 | 실 환수금액 | 제재부가금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부패 | |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 | | | |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 3〉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분류 | 환수결정 | 실제 환수실적 | |
|---------------|-------|----------|--------|-----------------|----------------|---------|--|
| | 행위 주체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기망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공급자 기망 | | |
| | 행정담당자 | 없음 | 부패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 | 부패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있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 | 서비스 공급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공급자 오류 |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
| 고의여부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 |
| | | 서비스 공급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정 수급 |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

- 모든 대상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실제 환수 현황을 작성
 - 환수 실적은 환수결정 대상 중 환수금액을 납부한 건수와 그 금액임

- <집계표 2>는 <집계표 1>에서 급여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로 다시 구분한 것이며, <집계표 3>은 행위주체간 ‘공모’를 고려한 것임
- 집계표 작성시 국고보조금사업은 ‘고의성 판단 불가’ 항목이 없음을 고려

○ 실태조사표 조사

- ‘부정수급 관리 실태’에서 보장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 및 안내는 발주 부처가 담당하고 조사표 발송과 취합, 조사표 에디팅은 조사원을 통해 수행
- 조사내용이 비교적 어렵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상대의 조사이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숙련된 조사원 확보가 중요

9. 조사결과 제시 방법

□ 공표 방안

-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보고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
- 통계청 KOSIS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주요 지표(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등) 제시
 - 승인통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해당 실태조사가 행정조사이면서 단순한 집계결과의 수준을 넘는 경우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조사를 통해 생성한 마이크로 데이터(식별 변수가 삭제된 분석용 데이터)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www.open.go.kr)나 해당 실태조사의 수탁용역기관에서 해당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 및 배포할 수 있음

*주요용어: 부정수급, 기망, 오류, 부패 전달체계, 보장기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주요 부정수급 대책 및 현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복지수요 증가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음.
- 또한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와 사각지대 축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준비 및 시행 중임.³⁾
 - 전통적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빈곤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수준과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노인예대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급격하고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등 미래사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복지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복지예산 : 123조('16년)→129조('17년)→145조('18년)→161조('19년)
 - 국민의 복지 욕구 증대와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보장제도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또는 낭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함

3)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2019a)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성장에 발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비수급자의 부적절한 수급을 적발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사회보장분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음
- 또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13년 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등)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적격 대상자의 부적절한 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부정수급 : 867억('15년) → 1,062억('16년) → 1,250억('17년)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통해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 수립 등을 지원

○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18년 12월 개정, '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하지만, 공적연금 등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도 300여개가 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 2020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그 준비를 위해 해당 조사 대상과 내용, 조사방법,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요구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있는 부정수급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설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동 법이 '19. 6월 시행되고 '20년 최초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방안 및 방법에 관한 사전 연구를 '19년 내에 실시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적용시키고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임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방향)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선행연구를 통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선행연구를 통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 복지사업 유형화 및 조사방법 제시
 - 조사표 작성(조사지표 포함)
 - 파일럿 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점검
 - 해외선진 사례 연구
 - 본 실태조사 운영계획 제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부정수급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데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1항)

○ 이를 위해, 동 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

1.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2. 부정수급 사후관리
3.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4.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부정수급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통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을 조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방대한 사회보장분야의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피해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통해 부정수급 현황과 피해사례에 대한 통계 작성이 필요
- 실태조사의 특성상 변수중심방법(Variable-oriented method)의 접근이 필요, 변수중심방법의 상대편에는 사례중심방법(Case-oriented method)이 있음(노대명 외, 2014; 임완섭 외, 2015)
 - 「사회보장급여법」에 제시된 실태조사의 내용 중 피해사례의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며, 피해사례를 일반적인 사례연구 접근법인 사례중심방법⁴⁾으로 접근 하는 것은 실태조사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
 - 실태조사에서는 주로 변수중심방법이 활용되는데 변수중심방법은 대상들의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속성 또는 평균적 특성을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밝히는 방법임.

4) 사례중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으로도 불리 우는데 주로 맥락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됨.

- 따라서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의 피해사례는 사업별(또는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에 반영되는 형태로 활용되어야 하며, 분류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 이는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사례의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임

○ 실태조사의 방향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제시된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규모 파악을 위한 집계조사와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표 조사의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조사수행에 있어 광범위한 조사 내용을 모든 사회보장급여와 보장기관⁵⁾에 적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연구내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관련 ‘①조사대상 및 범위, ②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③자료 분석방법, ④실태조사 운영계획(소요비용 등) ⑤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실태조사 설계와 시행에 대한 구체적 준비

○ 조사대상 및 범위

- 부정수급 정의 및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별 분류 형태를 제시
- 조사대상 : 조사 범위와 주기(3년)를 감안한 조사대상(중앙부처, 지자체 등) 설정
- 조사범위 : 사회보장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별 분류와 조사주기를 감안하여 조사범위 설정(근거 제시 포함)
 - 필요시 연도별 조사 대상 및 범위(19년 현재 중앙부처 사업 350여개) 등을 제시

5) 보장기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2019b)

○ 조사항목(조사지표 등 조사표) 개발

- 사업 유형별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항목 및 조사지표를 개발
- (조사표) 개발된 조사지표에 따라 실태조사에 적용할 유형별 조사표 작성
 - 선정된 조사지표를 바탕으로 세부항목(조사문항)을 제시
 - 제시된 조사 세부문항을 기반으로 파일럿 조사에 수록될 조사표 초안 작성
- 파일럿 조사 실시
 - 작성된 조사표(안)를 이용하여 파일럿 조사(방문·인터뷰)를 실시하고 조사표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조사표(안)을 수정
- 실태조사 조사 지표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오윤섭 외, 2016; 임완섭 외, 2017)
 - (관리운영체계) 관련 법 및 지침의 적정성, 관리 기획과 설계의 적절성,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성,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합리적 활용 등
 - (행정활동) 예방(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교육훈련, 부정수급 위험 평가 시스템), 적발(신고센터, 신고자 보호 정책, 내부통제 구축,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대응(부정행위 조사, 부정행위 처리) 등

○ 조사방법 제시

- 유형별·내용별 조사방법(안)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방법 제시

| 조사 | 조사방법 | 내용 |
|-----|------------------|--|
| 대상 | 행정조사 (집계표 조사) | - 조사대상 모든 사업의 소관부서에 대해 실시하고 예산 등 사업의 기본정보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파악 - 전산시스템 활용 여부에 따라 조사 방법의 변경 가능 |
| | 실태조사표 조사 | - 실태조사표가 필요한 대상 선정 필요 - 부정수급 관리, 관리조직·운영 등 조사 |
| 비대상 | - | - 부정수급 발생 및 예산 등 사업 규모가 미비한 사업 * 프로그램 운영, 시설입소, 비현금급여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 실태조사 자료 분석방법
 - 향후 실태조사 실시에 있어 항목별로 수집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방법 제시
 - 조사 범위, 조사 방법(집계자료 형식, 실태조사 형식 등)을 감안한 분석방법 제시 필요
- 실태조사 운영계획 제시
 - '20년 실시 예정인 본 실태조사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의 주요 방향성과 실태조사 일정 및 비용, 공표방법 등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 제시
- 해외사례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등과 같이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대응에 적극적인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실시
 - 부정수급 규모(또는 현황)에 대한 집계 및 추정 방법, 공표 방법, 부정수급 실태조사 추진 사례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한국의 부정수급 대응에 대한 정책함의 도출 및 부정수급 실태조사 수행에 반영

2. 연구 방법

□ 실태조사의 방향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목적은 부정수급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현황과 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통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해야 함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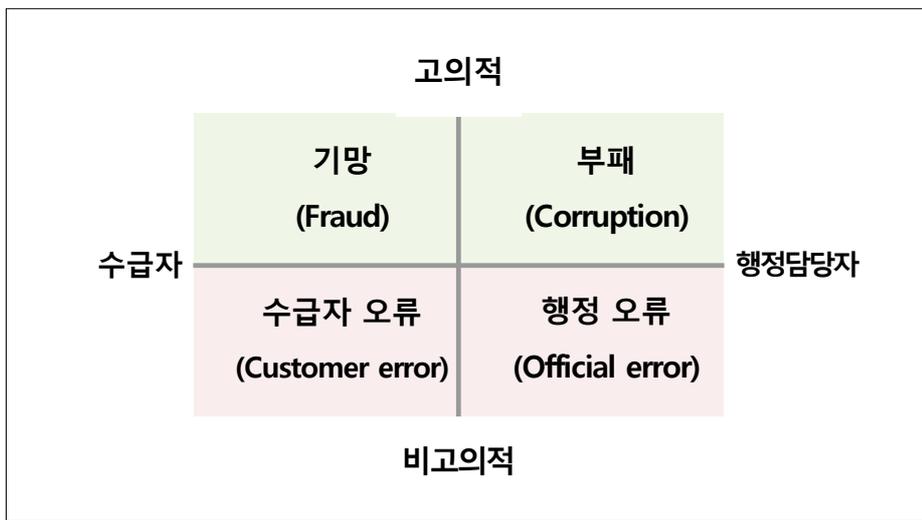
- 방대한 사회보장분야의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피해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부정수급 현황과 피해사례에 대한 통계 작성이 필요
 - 피해사례는 대상의 특수성을 제시하는 사례중심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피해 사례를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된 분석틀에 투입하여 사업별로 비교 가능한 공통적 속성을 제시하는 양적 방법으로 접근
- 실태조사의 특성상 대상들의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속성 또는 평균적 특성을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밝히는 변수중심방법 (Variable-oriented method)의 접근이 필요함(노대명 외, 2014).
- 따라서 피해사례는 부정수급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에 반영되는 형태로 활용되어야 하며, 분류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중요성이 크다면 이는 문헌 연구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

□ 문헌조사 및 집계자료 분석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정수급 개념 및 정의, 유형 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정수급 유형화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
- 기존의 부정수급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의 적격여부와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유형화하였음
 - 하지만, 현실의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사회보장급여 역시 매우 다양한 대상에 대해 각각에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방법과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및 부정수급 유형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실태 파악을 위한 부정수급 유형화 및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화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 제시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집계표 초안을 산출하여 향후 부정수급 유형, 사후관리 현황과 특성, 부정수급 관리방안의 성과와 문제점 파악에 활용
- 부정수급에 대한 규모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유형화) 필요

[그림 1-1] 부정수급 발생 유형화



자료 : World Bank (2010); 김문길 외(2015, p.17) 재인용

- 이러한 부정수급에 유형화 작업을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요 영역별 공통 조사표 초안을 산출
-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부정수급 규모 및 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 등을 파악하고 관련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현황 및 추이와 관련 실태에 대해 제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8),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18.1.11) 및 두 차례의 종합대책*에 제시된 집계자료를 정리하여, 부정수급 실태와 그 특성을 제시
 -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집계자료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이 발전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효과적인 사후 관리방안 모색
- 영국, 호주, 미국 등과 같이 복지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들을 사례국가로 선정하고 해당국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의 특성을 파악
 - 사례국의 부정수급 규모 추정방법, 공표 방법, 유사 실태조사 추진 사례 등을 문헌 및 온라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영국, 호주 등의 부정수급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의 정책 동향을 반영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담당 부서와의 협조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담당 부서(기관)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사업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
 - 전문가 자문위원은 본 연구의 연구진과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예상 분야별로 매칭되어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세부 조사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한된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연구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범위 및 내용을 설정하고 조사표 초안을 작성(필요시 자문위원을 연구진으로 전환하여 연구수행)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 등 탄력적 운용
 -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담당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본 연구사업 전반에 걸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향후 수행될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공감대 및 정책수용성 제고
- 전문가 자문회의의 운영
 - 기금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등 주요 사업보장사업 관리 기관 담당자들과의 면담 및 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전문가 자문위원회 대상의 인터뷰·서면자문 실시

□ 조사방법 제시

- 부정수급의 발생현황 및 유형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현황 파악과 구성 내용 분석
 - 본 보고서의 ‘제도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유형 및 사후관리 체계와 조사방향’에서 해당 제도를 관리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수관련 코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유형화 및 관리 현황 파악
- 사업별 부정수급 사후관리 및 관리조직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표(안) 마련
 -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사업별 보장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중앙부처의 부처별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문헌연구와 (학계 및 정책)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악
- 본 조사에서는 시스템이 없거나 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방안 검토
- 조사방법(안)
 - 조사내용별 조사방법(안) 제시 :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방법 제시
 - 부정수급의 발생현황 및 유형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을 체계적인 기준과 분류방법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유형화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 규모 파악 방법을 제시
 - 부정수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사업별·기관별(지자체, 사회보험 관리기관) 부정수급 사후관리 체계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방법 제시
 - 그 밖에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부정수급 관련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렴 등

□ 파일럿 조사

- 효과적인 파일럿 조사 수행을 위해 본 조사에서 적용되는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파일럿 조사의 결과와 조사 응답자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표를 수정 보완

제3절 주요 부정수급 대책 및 현황

1. 부정수급 대책

가. 부정수급 관리⁶⁾

1) 보조금 관리 시스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업무 단계별 검증을 통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설치(‘15.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16.12)를 거쳐 2017년 7월 17일에 개통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지급주체의 분산, 보조금 일괄지급 및 사후정산, 수기에 의한 사업 관리 등 비효율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한

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등)의 부정수급 관리’는 제3장 제4절에서 별도로 파악하였음.

승희, 2017, p.16).

- 국고보조금 지급 주체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단절로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음.
 - 또한 e-나라도움 도입 이전에는 지급 주체가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관리의 공백을 초래하였음.
- 국고보조금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이 증가하면서, 보조금 정보 관리·공개, 부정수급 방지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었음.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함(관계부처 합동, 2014. 12.4.).
- (정보 관리·공개) IT 인프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단계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부처별 보조금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도록 함.
 -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조금 집행자와 보조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업무처리 기능을 도입하여 모든 보조금과 출연금 집행 및 지급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목표는 크게 중복·부정수급의 방지, 업무 효율화, 정보공개 3가지임(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2020.1.14. 인출).
-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검증하고,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
 - (업무효율화)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
 - (정보공개) 필요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기능은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는 것임.

- 보조사업 신청, 집행, 사후 단계별로 시스템의 7단계 검증을 수행함(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2020.1.14. 인출).
 - 신청단계에서는 보조사업의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하고, 무자격자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자격을 검증함.
 - 집행단계에서는 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 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검증, 국세청·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거래증빙을 검증함.
 - 사후단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과 모니터링하여 중요재산을 검증함.

〈표 1-1〉 e나라도움 부정수급 관리체계

| 구분 | 시스템 검증 | 기능 |
|---------|---------------------|---|
| 신청 단계 | ① 유사·중복사업 확인 | 보조사업별로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 검증 |
| | ②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자격 검증 | 무자격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 검증 |
| 집행 단계 | ③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 보조사업자가 2개 이상 신청사례 검증, 사업자·수급자가 2개 이상 수행·수급사례 검증 |
| | ④ 물품가격 적정성 확인 | 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 적정성 검증 |
| | ⑤ 거래유효 검증 | 국세청·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 검증(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
| | ⑥ 부정징후 모니터링 |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검증 |
| 사후관리 단계 | ⑦ 중요재산 사후 검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과 연계 모니터링하여 검증 |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19, p.9).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교재(예치형).

- 특히, 보조금 부정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부정징후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여 2018년 8월부터 가동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 및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50개의 부정 유형 패턴을 만든 후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임(기획재정부 정보관리분석팀, 2019.10.31.).
 -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18.7~'19.6) 집행된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12개 부처에서 108건, 21억원을 적발함.

2)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개편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직제화를 통해 확대 개소됨.
 - 정부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의 총괄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하여 운영함(관계부처 합동, 2013.12.26, p.2).
 - 2015년 1월에는 기존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보조금까지 포괄하여 정부합동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함(관계부처 합동, 2014.12.4., p.33).
 - 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상담·안내 접수부터 신고사건 확인·조사, 검·경 등 이첩·송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까지 원스톱 처리를 수행함(관계부처 합동, 2014.12.4., p.33).
 - 위원회에 부정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조사결과를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함(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2019.10.8. 인출).
 - 신고대상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지원금까지 포괄함(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2019.10.8. 인출).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표 1-2〉 복지·보조금 신고센터 도입연혁

| 도입시기 | 이름 | 분야 | 조직성격 | 근거 |
|---------|--------------------|-------------|------|------------------------------|
| 2013.10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복지분야 | 임시조직 | 국무총리훈령 제629호 (2014.5.30. 제정) |
| 2015.1 | 정부합동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 | 복지분야, 비복지분야 | 정규조직 | 총리령 제1525호 (2015.1.19. 일부개정)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12.26, p.2); 관계부처 합동(2014.12.4., p.33);

-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소이래 2019년 2월까지 총 4,990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 하였음(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2019.3.11.).
 -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 집중신고기간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 30억, 포상금 최대 2억을 지급하기로 함.
 - 각 부처 및 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법령 또는 고시에 근거함.
 -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64호, 2019.6.11., 일부개정)에 근거함.
 -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보건복지부예규 제101호, 2018.10.05., 일부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확인조사는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공적자료, 금융재산정

보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한은희, 2017).

- 조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의 13개임.
- 정기 확인조사는 4월과 10월에 3개월씩 소요되어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월별 확인조사는 1월, 2월, 3월, 7월, 8월, 9월에 시행함.
 - 정기조사에서는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활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근거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됨.
 -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이 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급여변경, 급여중지, 환수 및 반환 등 조치함.
 - 소득재산 변동은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함(보건복지부, 2019b, p.181).
- 2018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7,233억원,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2,155억원의 복지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음(사회보장정보원, 2019).
- 특히,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가구원 변동, 거주지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을 관리하는데, 사망(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교정시설 입·출소, 군 입·제대 등 주요 인적자료를 일단위로 수집하여 연계함(보건복지부, 2019b, p.182).

나. 부정수급 방지 대책

1)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2013.12)

- 복지 수급자 및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

민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과 복지재정 효율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함(관계부처 합동, 2013.12.26).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는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간 현장 점검 및 단속, 사업별 부정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13.12.26.).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경찰청 11개 부처로 구성

○ 2013년 12월 26일에 보고된 복지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당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공급·이용,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대하여 부정수급 대책을 수립함(관계부처 합동, 2013.12.26).

○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인적·소득·재산 공적자료를 행복e음과 연계하여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함.

○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에서는 무자격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자의 허위·과다 청구,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 유사 서비스 중복 이용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함.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격변동·상실 정보를 적기에 반영하여 급여가 중지되도록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 징수를 강화함.

□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행복e음 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전담기구 설치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함.

□ 2013년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성과(관계부처 합동, 2014.12.9)

○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률 상승,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증가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내역통보제 시행, 건강보험 무자격자 사전제한 등을 통하여 재정 절감
- 대상자 선정 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실질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을 상승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

-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경제관계장관회의(2014.12.4.)에서 복지분야와 비복지분야를 포괄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함(관계부처 합동, 2014.12.4.).
- 2014년 3월 기획재정부와 부처로 구성된 「보조금 개혁 TF」가 구성되어 11월에 보조금 전 분야를 포괄하는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14.12.3.).
 - 추진경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복지분야에 대해 주요 부처별로 자체 실태점검('14.4~6월)을 먼저 수행한 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4.6~8)하였음.
 - 부처별 실태점검 결과와 지난 5년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을 4가지로 분류함.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가지 유형별로 부정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함.
 -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전반을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신고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보조금 신고센터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일원화 하고, 보조사업 관리 매뉴얼을 마련함.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기준을 개선함.

-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부처별, 주요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 부처별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하여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 국고보조금 종합대책 마력을 통해 합리적인 보조사업 선정·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신고인프라 구축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함.

3)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2015.4)

□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은 감소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다시 복지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2015.4.1.)에서 확정하였음.

○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② 부적정수급 근절, ③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④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의 4개 분야에 대하여 10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함(관계부처 합동, 2015.4.1.).

-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 행복e음의 자격 정보 연계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 단축, 출입국·주민등록 변동 정보 관리 강화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적격자를 판정하고 급여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

- 부적정수급 근절

- 부처별 복지사업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도 확대함.

-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함.
 -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의료비 등 지출 및 재정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중앙부터 현장까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함(관계부처 합동, 2015.4.1.).
- 중앙 대책단은 추진계획 수립, 실천과제 검토·보완, 실천상황 총괄 점검을 수행하고, 지자체 대책반은 지자체별 실천과제 이행, 추진성과 점검, 개선사항 발굴·건의, 재정절감 추진실적 등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함.

4)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2018.1)

-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17.10월)이 발생함으로 인해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의 미비점과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음(관계부처 합동, 2018.1.11.).
- 이에 부처별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현행 보조금 관리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 2017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은 36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① 기관별 보조사업 및 부정수급 파악 실태(사업수, 규모), ②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조직 구성·운영실태, ③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속 및 환수 현황, ④ 현행 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나타난 관리제도 및 시스템 체계와 현장 집행·점검 측면의 미비점 보완을 중점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함.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 및 신고활성화를 강조하였음.
 - 특히 기존 소관부처, 검찰, 경찰,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비효율적인 부정수급 단속체계에서 ‘시스템-관계기관 점검·단속-지역네트워크’의 3중 점검·감시체계로 개편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②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③ 부정수급 점검 강화, ④ 국민인식 제고 및 신고활성화 4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함.
- 이와 함께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17개 시·도별 ‘부정수급 전담 조직’, 부패예방감시단, 읍·면·동 단위의 지역네트워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부정수급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
- 유기적인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은 물론 사각지대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2019.10)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4개 부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등)가 참가하는 「부정수급 점검 TF」를 구성하여 ‘상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19.2~6월)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제시
- 이러한 집중점검은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20)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실효성 강화 및 근원적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서 기인한 것임*
- * (VIP 지시사항)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미미하므로, 적발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유형 등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차단방안 마련 필요
- 점검결과 ’19.1월~7월까지 총 1,854억 원(추가 조사를 통한 변동 가능)을 적발

하고 이 중 647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나머지도 환수 추진 중

- 환수 결정액이 '18년 1~12월(388억원) 대비 259억원 증가하였으며, 환수 결정액 647억 원 중에서 고의·거짓 등 의도적인 부정수급은 162억 원이며, 경과실에 따른 과오지급은 485억 원으로 나타남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 3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주요 과제

- 3대 추진전략으로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를 제시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 고위험사업(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등 포함) 집중관리 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 도입(기초생활보장,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등) 확대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부정수급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부정수급액 엄정 환수 추진
-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 시스템을 통한 사전자격 검증 강화(e나라 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 사전 컨설팅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활성화

2. 부정수급 현황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부정수급 서면조사(2013년 7월)

- 2012년 50여개 복지사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1,389억 원에 달함(관계부처 합동, 2013.12.26., p.33).
 - 총수급액 대비 부정수급액 규모가 큰 사업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부정수급액 13억원/총수급액 363억원), 산재급여(605억원/38,513억원), 고용유지지원금(5억원/336억원) 이었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42억원

/14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94억원/2,620억원) 이었음.

〈표 1-3〉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2013.7)

(기준: '12년도, 단위: 명/건/기관, 억원)

| 구분 | 적발 사업수 | 총수급 | | 부정수급 |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고용부 | 16 | 5,308,632 | 95,780 | 27,563 | 760.54 |
| 교육부 | 3 | 640,239 | 11,807 | 195 | 0.27 |
| 보훈처 | 4 | 603,479 | 32,997 | 790 | 10.60 |
| 복지부 | 17 | 59,506,864 | 635,821 | 208,225 | 614.5 |
| 여가부 | 2 | 215,739 | 793 | 3,008 | 3.10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12.26., p.33)

□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2013년 8월)

- 복지 전달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관리 미흡, 관련 제도 및 규정 불합리 등으로 인해 연간 약 1,500억 규모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관계부처 합동, 2013.12.26., p.4).

〈표 1-4〉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2010~2012)

(단위: 억원, 년)

| 개선요구 내용 (감사원) | 누수 추정액 (기간) |
|-------------------------------|---------------|
| 복지급여 신청자 금융정보 제공 범위 관련 규정 불합리 | 959 ('10~'12)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망자 관리 부적정 | 639 ('10~'12)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등급입력 부적정 | 163 ('10~'12)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바우처사업 수급자격 관리기능 미흡 | 375 ('10~'12) |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 반영주기 지연 | 752 ('12)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12.26., p.4)

□ 김·경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2013년 12월)

-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은 405억원으로 전체 1,700억원의 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 합동, 2013.12.26., p.5).
- 검찰 수사결과 806억원, 경찰 수사결과 894억원이 적발됨.

〈표 1-5〉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결과(2013.6~11월)

(단위: 명)

| 유형 | 보조금 편취 ¹⁾ | 보조금 횡령 ²⁾ | 공무원 비리 | 기타 | 전체 |
|-------|----------------------|----------------------|--------|-----|-------|
| 검찰 적발 | 428 | 29 | 10 | 140 | 607 |
| 경찰 적발 | 498 | 1,929 | 9 | 301 | 2,737 |

주 1) 보조금 편취: 허위청구

2) 보조금 횡령: 용도의 사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12.26., p.5)

□ 검·경 국고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결과(2014.12)

○ 2013년 8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하여 공조 및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조수사를 진행하였음(대검찰청 반부패부, 2014.12.4.).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552명을 인지, 253명 구속, 총 3,119억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여 환수조치 하였음.

- 검찰은 총 884명 인지, 174명을 구속 1,903억원의 부정수급액 적발

- 경찰은 총 4,668명 인지, 79명을 구속, 2,026억원의 부정수급액 적발

- 보조금비리가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도시개발, 문화·체육·관광, 의료, 교육 등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표 1-6〉 검·경 국고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결과(2014)

(단위: 명)

| 구분 | 계 | 검찰 | 경찰 |
|--------------------------|-------|-------|-------|
| 부정수급 적발(인지) 인원(계) | 5,552 | 884 | 4,668 |
| 국고보조금 편취 | 832 | 1,366 | 2,198 |
| 국고보조금 횡령 | 41 | 2,938 | 2,979 |
|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 | 9 | 52 | 61 |
| 허위공문서작성 | 8 | 312 | 320 |

자료: 대검찰청 반부패부(2014.12.4.)

□ 2014년 비복지분야 부처별 자체 실태점검 결과(2014.4~6월)

○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 95개 사업에서 101건의 부적정 수급사례를 적발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14.12.4., p3).

- 단계별로 살펴보면, 선정단계에서 14건, 집행단계 73건, 사후관리단계 17건이 적발되었음.

- 선정단계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 미흡, 유사·중복 사업 선정 등의 사례를 적발함.
- 집행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 등에 의한 목적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음.
-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담거래 등이 주로 적발되었음.

□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 한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총 181건의 부패·공익 신고가 접수되었음.

- 그 중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회계처리(47건, 23.4%), 급식 부적정 운영(19건, 9.5%), 운영비 사적사용(14건, 6.9%) 순이었음.

〈표 1-7〉 영유아 보육·교육분야 신고 유형별 현황(2018.10~2019.1)

(단위 : 건, %)

| 구분 | 보조금 부정수급 | 부적정 회계처리 | 급식 부적정 운영 | 횡령 사적 사용 | 원장 명의대여 | 검직 금지 위반 | 부상등 조치 미흡 | 부적정 운영 | 임금등 미지급 | 안전 기준 미흡 | 아동학대 | 기타 | 합계 |
|------|----------|----------|-----------|----------|---------|----------|-----------|--------|---------|----------|------|-----|-----|
| 신고건수 | 67 | 47 | 19 | 14 | 7 | 3 | 2 | 10 | 5 | 3 | 9 | 15 | 201 |
| 비율 | 33.3 | 23.4 | 9.5 | 6.9 | 3.5 | 1.5 | 0.9 | 5.0 | 2.5 | 1.5 | 4.5 | 7.5 | 100 |

주: 신고사건에서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집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2019.2.26., p.2)

□ 2019년 부처합동(14개) '상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19.2~6월)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4개 부처가 참가하는 「부정수급 점검 TF」를 구성하여 '상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19.2~6월)을 시행
- 과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등 13개 부처, 20조원 규모 사업을 선정, 경찰청(특별단속), 국민권익위원회(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점검
- 집중점검 추진 결과 '19.1월부터 7월까지 총 1,854억 원을 적발하여 이 중 647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
 - 고의·거짓 등 의도적으로 부정수급한 유형은 162억 원(3,745건), 경과실 등으로 인한 과오지급은 485억 원(11.7만건)

〈표 1-8〉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및 유형

(단위 : 억원)

| 구 분 | 합 계 | | 과오수급(경과실 등) | | 의도적(고의·거짓)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9년(1~7월)* | 120,869 | 647 | 117,124 | 485 | 3,745 | 162 |
| (국고보조금) | 119,511 | 601 | 116,602 | 469 | 2,909 | 132 |
| (지방보조금) | 1,358 | 46 | 522 | 16 | 836 | 30 |
| '18년(1~12월) | 42,652 | 388 | 34,264 | 226 | 8,388 | 162 |
| (국고보조금) | 40,856 | 349 | 33,941 | 216 | 6,915 | 133 |
| (지방보조금) | 1,796 | 39 | 323 | 10 | 1,473 | 29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표 1-9〉 국고보조금 분야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단위 : 억원)

| | 합계 | 고용 | 복지 | 산업 | 농림수산 | 문화 | 기타 |
|-------|---------|--------|--------|----|------|----|----|
| 부정수급액 | 601 | 368 | 148 | 53 | 16 | 15 | 1 |
| (건수) | 119,511 | 96,870 | 21,754 | 41 | 776 | 11 | 59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제 2 장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제1절 개요

제2절 사회보장급여

제3절 부정수급

2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

제1절 개요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설정 및 유형별 분류 작업은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
 - 조사범위: 조사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사업 급여의 범위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의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험(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조사의 기본적 범위라 할 수 있음
 -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급여 대한 자료 수집 및 유형화 작업 실시
 - 조사대상: 조사표 및 집계자료를 작성하는 전달체계 및 전달체계 소속 담당자
 - 신청기관, 조사기관, 보장기관, 제공기관의 현황 파악 필요. 현황 및 특성 파악 후 해당 기관 중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설정 필요
 - 사회보장급여는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 시킬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소관 부처별 분류에서부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구분으로 유형화 시킬 수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로도 유형화 시킬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조사방법의 기준 제시 및 조사를 통해 생성된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틀로 활용가능
-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별 분류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행위

주체의 고의성여부, 대상자의 수급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 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화를 제시하기 보다는 본 실태조사에 적용되었을 때 수용성이 높은 집계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형태의 유형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형별 분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각 사업별 집계 양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문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별(주요 사업만 해당) 집계 양식에도 적용

제2절 사회보장급여

1.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범위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19.6.12 시행)에 따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의 대책마련을 위해 부정수급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조문

| |
|--|
|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 즉,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발생 현황 피해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함을 명시

□ 사회보장급여의 정의

-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 위에 제시된 정의된 명확하지만, 실제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개념정의와 범위설정에 있어 논란이 있음

- 사회보장급여는 현금과 현물(서비스 포함)로 제공되어 지는데, 사회서비스의 경우 크게 수요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으로 구성됨.
- 공급자 지원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금과 현물 그리고 바우처 지원 등으로 구성된 수요자 측면의 개념에 비해 이를 부정수급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부정수급 실태조사 관련 사회보장급여 범위에 대한 원내 자문('19.8.5)

- 관련 정의 및 부정수급 실태조사 범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진회의 및 자문을 받은 결과 사회보장급여법상에 따르면 공급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법상에 수급, 수급권자에 대한 개념과 해당 개념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가 제기됨.
- 사회보장급여 대한 부정수급 규모 파악 시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파악하거나 우선순위 또는 개념화를 통해 복수의 정의에 의한 규모 집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기본법 제2장제9조) :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

○ 법률적 정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조사 범위)

- 법률적 정의(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 이는 중앙부처의 354개 사업(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록된 사업 기준)은 물론 별도의 공단조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회보험과 같은 기금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 모두 해당됨
- 하지만 약 5만 7천개로 추산⁷⁾되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그 유형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함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도별·급여지원형태별 특성 등에 근거한 유형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조사 방법도 실태조사가 아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그것을 취합하여 활용하는 빅 데이터 분석이 요구됨

○ 따라서 2020년 수행될 실태조사에는 중앙부처 소관의 사회보장급여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정홍원 외(2017: 49-50)는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를 파악하였음

- 한편, 중앙부처 소관사업의 경우도 사업 특성과 예산 및 부정수급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 정보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되 실질적인 분류는 제공형태(지원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제도로 구분할 경우 해당제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나타나며, 지원형태 역시 제도 내에서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형태를 기준으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제도별 또는 대상별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급여는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자세한 분류 방식은 아래와 같음

2. 사회보장급여의 분류 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제도적 분류기준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임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급여의 총체적인 집합체로 볼 수 있음. 사회보장제도를 작동시키는 주요 원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 작동원리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 범주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수당 (데모그란트) | 사회서비스 |
|------|-------------|----------|-----------------|---------------|
| 기여여부 | 기여 | 비기여 | 비기여 | 비기여, 기여 |
| 자격기준 | 비자산조사 | 자산조사 | 비자산조사 | 자산조사 또는 비자산조사 |
| | 비인구학적 | 비인구학적 | 인구학적 | 인구학적 |
| 급여형태 | 현금, 현물 | 현금, 현물 | 현금 | 주로 현물(서비스) |
| 시장원리 | 시장에서의 위치 반영 | 비반영 | 비반영 | 공급에서 일부 반영 가능 |
| 관리주체 | 중앙정부 | 중앙, 지방정부 | 대체로 중앙정부 | 중앙 지방정부, 민간 |

자료 : 이현주 외(2003, p.69) 수정

- 사회보장제도를 특정한 분류기준(작동원리)으로는 주로 기여 여부(재원조달), 보장범위(대상), 자격기준(자산조사여부), 급여형태, 관리주체 등이 활용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학술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지급대상에 균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사회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범위가 준 보편적이며 차등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사회수당으로 구분하기 모호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여들을 공공부조성 급여로 분류

〈표 2-2〉 한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분류

| 유형 | 제도명 | | 주요기능 | 보장범위 | 재원조달 |
|-------------|-----------|------------------|----------------------|----------------------|----------------------|
| 사회보험 | 공적연금 | | 노후대비(미래) | 전 국민(직장·지역) | 기여 (임금·소득 기반) |
| | 건강보험 | | 건강보장 | 전 국민(직장·지역) | |
| | 고용보험 | 소득보장(실직) 고용지원 | 전 임금근로자 자영업업자(임의) | 기여(임금기반) | |
| | | 산재보험 | 소득보장(산재) 재활지원 | | 전 임금근로자 자영업업자(임의) |
| 공공부조성 급여 | 수당적 성격 | 기초연금 | 소득보장(노인) | 준 보편적(70%) | 조세 |
| | | 장애인연금 | 소득보장(장애인) | 준 보편적(70%) | |
| | 공공부조 | 기초보장 | 소득보장(빈곤) | 매우 선별적 (엄격한 선정기준) | 조세 |
| | | 자립지원 | 소득보장 (근로빈곤) | 매우 선별적 (수급자중심) | |
| 사회서비스 | 고용지원 | | 취업지원 직업훈련 | 프로그램별상이 선별적 | 조세 |
| | 교육복지 | | 교육서비스 | 보편적·선별적 | |
| | 주거복지 | | 주거서비스 | 선별적 | |
| | 보건의료 | | 의료서비스 | 선별적 | |
| | 복지서비스 | 노인 | 돌봄·생활서비스 | 선별적 | |
| | | 장애인 | 돌봄·생활서비스 | 선별적 | |
| | | 아동 | 돌봄서비스 | 보편적(보육) | |
| 가족 | | 지원서비스 | 선별적 | | |

자료 : 김미곤 외(2018, p.85) 〈표 2-1〉 발췌 및 수정

- 명확하게 제시된 법률상 정의와는 달리 해당 제도들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구분한다 하더라도 해당 제도 안에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보다 제도적 분류보다 실효성 있는 분류 기준이 필요
 - 주로 공공부조성 급여와 사회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
- 사회보장급여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그 지원형태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활용)

-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양한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방법과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하지만, 공급자 지원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요자 측면(현금, 현물, 바우처)에 비해 개념적 명확성이 상대적으로 불분명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지원형태’라는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0년 사회보장사업 업무처리 효율화와 복지급여 이력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 이 중 범정부 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임(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범정부 시스템은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의 형태도 포함됨
 - 지원형태는 아래와 같이 7개로 제시되고 있음
 - 대여/감면, 바우처,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금, 현물
- 위에 제시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분류기준⁸⁾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18.2.9)에는 과거 사회보장사업의 분류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회보장사업의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해당 자료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으로 분류
 - 아래 <표 2-4>는 <표 2-3>를 공통적인 유형으로 묶어 유형화한 것임

8)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안건(관계부처 합동, 2018.2)으로 제출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음

〈표 2-3〉 사회보장사업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형태(지원형태)

| 소득보장 | | 사회서비스보장 | |
|------------|-------|---------|---------------|
| 소득보장 | 교육 지원 | 주거 지원 | 비용지원 |
| 소득보장_자금대여 | 자산형성 | 고용 지원 | 비용지원_바우처 |
| 비용지원_세금보험료 | | | 비용지원_감면-기회제공 |
| 기초보장 | | | 비용지원_대여 |
| 의료급여 | | | 현물지원_물품-이용기회 |
| 긴급복지 | | | 자원봉사 |
| 보상지원 | | | 공급자지원_시설운영 |
| | | | 공급자지원_사업단위 |
| | | | 공급자지원_인건비 |
| | | | 공급자지원_물품-이용기회 |
| | | | 공급자지원_시설설비등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2, p.39)

〈표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부처 사회서비스 현황 조사*상의 분류 |
|-----------------|-------------------------------|
| 1) 대여/감면-① | ① 이용자_현금(대여비용, 비용감면, 기회제공 포함) |
| 2) 바우처-③ | ② 이용자_현물(물품) |
| 3) 시설입소-④, ⑥, ⑦ | ③ 이용자_바우처 |
| 4) 자원봉사 | ④ 공급자_시설운영지원 |
| 5) 프로그램-⑤ | ⑤ 공급자_사업(프로그램)단위지원 |
| 6) 현금-① | ⑥ 공급자_인건비지원 |
| 7) 현물-② | ⑦ 공급자_시설설비등지원 |
| *이용자, 공급자 구분 필요 | |

주 : 2018년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및 보장수준 관련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지원형태를 이용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으로 구분 (이용자 지원 : 대여·감면, 바우처, 현금, 현물; 공급자 지원 :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 현금 : ①이용자_현금(대여비용, 비용감면, 기회제공 포함)
 - 대여/감면 : ① 이용자_현금
 - 현물 : ②이용자_현물(물품)
 - 바우처 : ③이용자_바우처
 - 시설입소 : ④공급자_시설운영지원, ⑥공급자_인건비지원, ⑦공급자_시설설비등지원
 - 프로그램 : ⑤공급자_사업(프로그램)단위지원
 - 자원봉사 : ⑥공급자_인건비지원

〈표 2-5〉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 현황

(단위: 개, %)

| 구분 | | 빈도 | 비중(%) |
|--------|-------|-----|-------|
| 이용자 | 현금 | 156 | 44.1 |
| | 현물 | 51 | 14.4 |
| | 대여·감면 | 27 | 7.6 |
| | 바우처 | 26 | 7.3 |
| 이용자 소계 | | 260 | 73.4 |
| 공급자 | 시설입소 | 12 | 3.4 |
| | 프로그램 | 80 | 22.6 |
| | 자원봉사 | 2 | 0.6 |
| 공급자 소계 | | 94 | 26.6 |
| 합계 | | 354 | 100.0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19년 4월 기준) 활용

- 이용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전체 사회보장급여의 73.4%인 260개 사업이며,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94개로 전체 사회보장급여의 26.6%를 차지
- 이용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4.1%)로 그다음은 공급자 지원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남(26.6%)

○ 이러한 분류기준을 결합하여 필요시 제도별·지원대상별·급여지원 형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표 제시 가능

〈표 2-6〉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별 분류: 제도, 지원 대상, 급여지원 형태

| 제도별 | 지원대상 | 급여지원 형태 |
|----------|------|---------|
| 사회보험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 바우처 |
| | 제공자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
| 공공부조성 급여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 바우처 |
| | 제공자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
| 사회서비스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 바우처 |
| | 제공자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
| | | 자원봉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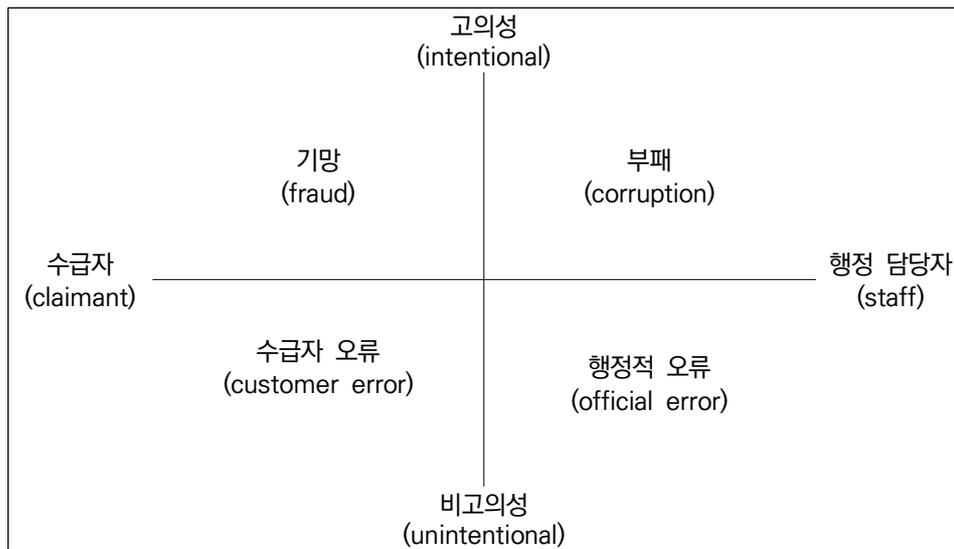
제3절 부정수급

1. 기존 부정수급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에 따르면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을 제기하고 있음
 - 이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그 규모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
 - 부정수급 유형은 기준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국내외 주요 연구들의 유형화를 살펴보고 본 조사에 적합한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부정수급 관련 유형화에 있어 World Bank의 연구(2010)는 고의성 여부와 대상자 측면(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공급자)에서 파악하고 있음.

[그림 2-1] World bank의 부정수급 유형화



자료: World Bank(2010), p. 3; 김문길 등(2014), p. 1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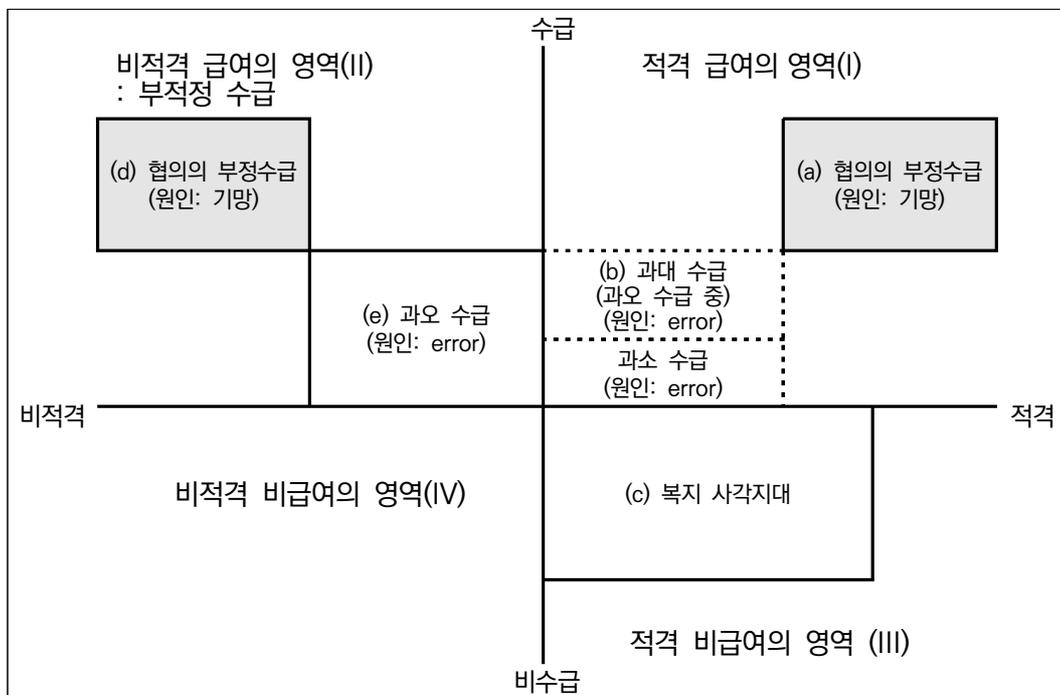
- 이 분류에 따르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 기망(Fraud)이 공급자 측면에서 부패(Corruption)가 협의적 차원의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 비고의적인 경우로 수요자 오류(Customer Error)와 행정상의 오류(Official Error)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협의의 부정수급에 이러한 오류 수급을 포괄하

게 되면 이는 광의를 부정수급을 의미

- 고의성이 있고 행정 담당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부패(corruption)이고, 고의성이 있고 수급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기망(fraud)임.
- 고의성이 없고 수급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수급자 오류(customer error), 고의성이 없고 공급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행정적 오류(official error)임.

□ 권오성 등(2013)은 적격성과 수급 기준을 통한 부정수급의 영역 구분(아래 그림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 참조)을 시도하였음.

[그림 2-2]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 기준)



자료: 박경돈(2013); 권오성 등(2013), p. 34에서 재인용

- 먼저, 적격성과 비적격성 등 적격성 유무, 수급과 비수급의 수급 유무를 교차하여 적격성과 수급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한다면, 복지 부정수급을 광의적 차원에서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즉, '적격 급여의 영역(I)', '비적격 급여의 영역(II)', '적격 비급여의 영역(III)', '비적격 비급여의 영역(IV)'으로 구분이 가능함

□ 적격성에 따른 유형화는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수급과 비수급에 해당하는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됨

〈표 2-7〉 type I, type II 오류

| | 수급 | 비수급 | |
|-----|------------------------------------|------------------------|-----------------------|
| | | 비신청 | 신청 |
| 적격 | 적격수급 | type Ia 오류 (불완전 수급) | type Ib 오류 (거부 오류) |
| 비적격 | type II 오류 (보상오류 : 부정 또는 오류 수급) | 비적격비수급 | |

자료: Klevin & Kopczuk(2008, 2011); 임완섭 외(2017. p. 44)에서 수정 및 재인용

○ 위 유형구분에서 부정수급은 Type II errors(보상오류)에 해당됨.
 - 비적격 수급 유형에 해당하는 보상오류(award errors)는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 부적격자가 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상의 유형화

○ 현재,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e나라도움 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유형별 부정수급 DB를 구축 중에 있음

○ 부정수급 발생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공표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유형화시켜 분류하여 조사 및 공표할 예정임⁹⁾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구축을 위한 유형화 작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 중에 있음(국고보조금관리단, 2019a)

〈대·중·소 3단계 분류에 따른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구축〉

- (대분류)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
- (중분류) 부정수급의 발생요인인 부정행위의 행태에 따른 분류

9) 따라서 아래의 분류기준(안)은 유형화 작업의 진행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소분류) 중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표 2-8〉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대분류

| 분류 기준 | 분류 유형 |
|--------------|--|
| 의도성 및 행위 주체별 | 의도, 수급자 : ① 기망 의도, 행정담당자 : ② 부패 비의도, 수급자 : ③ 수급자 오류 비의도, 행정담당자 : ④ 행정오류 |

자료 : 국고보조금관리단(2019a)

〈표 2-9〉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중분류

| 구분 (행위주체) | 대분류 (4종) | 중분류 (9종) | | | | | | | | |
|--------------|-------------|----------|----|----------|-----------|----------|----------|----------|----|----------|
| | | 허위 | 공모 | 임의 처리 | 가족간 거래 | 관리 미비 | 업무 미숙 | 증빙 미비 | 착오 | 중복 처리 |
| 수급자 | 기망 | ○ | ○ | ○ | ○ | | | | | |
| | 수급자오류 | | | | | ○ | ○ | ○ | ○ | ○ |
| 행정 담당자 | 부패 | ○ | ○ | ○ | ○ | | | | | |
| | 행정오류 | | | | | ○ | ○ | ○ | ○ | ○ |

자료 : 국고보조금관리단(2019a)

〈표 2-10〉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소분류

| 중분류 | 적용 범위(행위) : 이하 소분류에 해당 |
|-------|---|
| 허위 |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
| 공모 |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
| 임의처리 |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
| 가족간거래 |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
| 관리미비 |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
| 업무미숙 |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
| 증빙미비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
| 착오 |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착오, 인식착오 등 |
| 중복처리 |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

자료 : 국고보조금관리단(2019a)

〈표 2-11〉 부정수급 유형 표준 분류(안)

| 유형 구분 | | |
|---|---------|--------------------|
| 대분류(4개) | 중분류(9개) | 소분류(30개) |
| 기망/부패 | 가족간 거래 | 가족등록·채용 |
| | | 가족간 거래(가족 선정·지급 등) |
| | 공모 | 내부공모 |
| | | 외부공모 |
| | 임의처리 | 무단 담보 |
| | | 무단 양도 |
| | | 무단 임대 |
| | | 무단 인출 |
| | | 임의 사용(임의 처분) |
| | 허위 | 자부담금 대납 |
| 가격부풀리기 | | |
| 허위처리 (허위 등록·신청·선정·계약·청구·집행·작성, 위변조, 카드깡) | | |
|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 증빙미비 |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
| | | 카드영수증 미비 |
| | | 기타 증빙 |
| | 중복처리 | 중복 등록 |
| | | 중복 신청 |
| | | 중복 증빙 |
| | 업무착오 | 규정 미숙 |
| | | 절차 미숙 |
| | | 사용 미숙 |
| | | 거래처 착오 |
| | 관리미비 | 자격관리 미흡 |
| | | 평가관리 미흡 |
| | | 신청관리 미흡 |
| | | 타당성 미검토 |
| | | 과다집행 |
| | | 집행오류 |
| 정산 오류 | | |
| 분리 계약 | | |

자료 : 국고보조금관리단(2019a)

□ 2020년 실태조사에 있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의 경우 모든 부정수급 발생 사례에서 의 도성과 비의도성이 구분되는 것을 가정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 따라서 의도성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부정수급 유형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접근

-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부정수급’의 개념과 이에 따른 부정수급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학술적으로 ‘부정수급’이란 단어는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속임수와 같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물론 사회보장급여 지급 또는 수급과 관련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실수와 오류도 부정수급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부정(不正)은 사전적으로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이라는 의미(표준국어대사전, 2019.11.4. 인출)를 갖는데 의미 자체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공무원 등 행정담당자의 단순 실수 까지도 ‘부정수급’이란 용어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문제(단순 실수나 오류 등)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음.
 -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개념을 법령 및 선행연구 등에 나타난 유사개념들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명확히 제안하고자 함
- 부정수급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으로는 ‘비적격 수급’, ‘부적정 수급’, ‘부적정 급여’, ‘부적정 지출’, ‘중복수급’ 등이 있음.
 - 비적격 수급은 적격 수급의 반의적인 표현으로 해당 대상자의 자격이 적격하지 않지만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함.
 - ‘부정적 지출’은 행정담당자 또는 복지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급여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정적 수급’은 복지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 받게 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
 - ‘적정’은 사전적으로 ‘알맞고 바른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지출은 사전적으로 접근해 볼 때 사회보장 지출이 알맞지 않고 바르지 않은 상태로 지출됨을 의미함.

- ‘부적정’은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게 지출됨과 동시에 바르지 않은 상태를 포괄하고 있어 개념상 ‘부정’의 개념을 포괄하여 사용되어 있음
- 즉, 기망(fraud) 등으로 인한 혐의의 부정수급은 물론, 오류로 인한 과대·과소 수급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표 2-12〉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 유사용어 | 내용 | 특징 |
|-----------|---|--|
| 부정수급 | -정당한 급여의 수급이 아닌 기망, 불법과 같은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과 과오(과실)에 의한 수급을 포괄함(광의의 개념) | -부정수급의 규모 및 제재의 문제가 대두, 부정수급의 환수 문제가 중요함 -기관 책임 및 발생 영역의 식별이라는 문제 발생 |
| 중복수급 | -단일 정책 대상자에게 특정 기간에 복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단일 기관(사업)의 복수 지급 -복수 기관(사업)의 복수 지급 |
| 부적정수급(급여) | -적정 급여(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의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복지 대상과 관련된 인적 기준 및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기준 및 정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선정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보건사회연구원, 2011, p.60) | -비적격자에 대한 과오(과실)의 급여 제공과 부정수급을 모두 포함 -과대 지급, 중복 지급뿐만 아니라 과소 지급으로 인한 수급을 모두 포함 |
| 불법수급 | -불법적인 급여의 수급으로 부패와 범법적 행위를 의미함 | -법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됨 |

자료: 최현수(2011); 권오성 등(2013), pp. 21-22에서 재인용 및 수정.

○ 부정적 수급

- 부적정 수급은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에 대한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비적격 수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부적정 수급(부적정 급여)은 사각지대 영역에 해당하는 과소수급을 포함하고 있음(권오성 외, 2013; 김문길 외, 2015)

□ 제도 및 법 차원에서 부정수급과 유사개념에 대한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②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보건복지부, 2019c, pp.274-275)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음(협의의 개념)
- ‘부적정 수급’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에 대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적정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음(보건복지부, 2019c, p.274)

□ 부당청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p.9)

○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음

-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p.9)
- 법령상 기준위반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었을 경우 부당청구로 인정

- 건강보험제도상의 부당청구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수급자) 측면에서는 급여수급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서비스 공급자(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일반적인 부정수급 상황과는 다름
 - 부당청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급여(서비스)를 받은 상태라 사후적이지만 공급자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전적이라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환수사유 코드가 존재하는데 이중 부정수급액은 청구된 급여가 공급자에게 제공된 후 환수가 결정된 금액으로 볼 수 있음(협회의 개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급여(서비스) 또는 부당이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의료급여법(35조), 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 노인장기요양법(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5)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급여(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이 많은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고의성을 가진 협회의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0년 실태조사의 근거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부정수급은 협회의 부정수급을 의미함

○ 사회보장급여법

- (제22조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제19조의2 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
 -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 부정수급 사후관리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으로서의 부정수급의 개념

- 부정수급은 크게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망과 부패와 광의의 부정수급에 포함되는 수급자 오류와 행정오류로 구분할 수 있음
 -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 등에서는 부정수급을 기망과 부패와 같은 협의의 부정수급과 함께 의도성이 없는 수급자 오류와 행정오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 등을 파악하고 공개해야 할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임
 - 협의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를 의미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조사해야 할 부정수급을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보고 있음
- 오류나 실수 등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광의의 부정수급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 사후관리 파악과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보장기관에 따라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혼재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조직과 관리조직의 부정수급 사후관리는 협의 및 광의의 부정수급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수행 시 협의의 부정수급만을 따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정수급’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광의의 부정수급은 ‘오류 수급’으로 협의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명칭 할 것을 제안함
- 이는 뒤에 제시되어 있는 유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수급자 기망과 공급자 부패를 부정수급으로, 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오류나 과실은 오류수급으로 분류하는 것임
 - 이는 어디까지나 2020년 실태조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는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함(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의미를 기술)

3.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유형화)

- 사회보장사업의 유형별 부정수급 규모는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탑재되어 있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는 국고보조금사업을 행위 주체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한 후 여기에 다양한 기준을 부과하여 각 사업별로 상세한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규모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유형화) 필요
- 아래 표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유형화를 행위 주체에 복지서비스 공급자(제공기관 등)를 고려했을 때 재분류 하여 적용한 것임

〈표 2-12〉 부정수급 유형 분류 : 대분류

| 구분(행위주체) \ 의도 | | 고의성 | | 비고의성 | |
|---------------|---------------------------|-----|----|--------|-------|
| | | 기망 | 부패 |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
| 수급자 | 수요자 (개인 또는 가구) | ○ | ○ | ○ | |
| | 공급자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 | ○ | ○ | ○ | |
| 행정 담당자 | | | ○ | | ○ |

〈표 2-13〉 부정수급 유형 분류 : 고의성 중분류

| 구분(행위주체) \ 의도 | | 고의성 | | | | |
|---------------|---------------------------|-----|----------------------------|------------------------|----------------------|----|
| | | 기망 | 공모를 통한 기망 (수요자와 공급자 공모) | 부패공모2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 공모3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 부패 |
| 수급자 | 수요자 (개인 또는 가구) | ○ | ○ | ○ | | |
| | 공급자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 | ○ | ○ | | ○ | |
| 행정 담당자 | | | | ○ | ○ | ○ |

〈표 2-14〉 부정수급 유형 분류 : 비고의성 중분류

| 구분(행위주체) \ 의도 | | 비고의성 | | | |
|---------------|---------------------------|------|----------------------|----|------|
| | | 증빙미비 | 중복 (등록, 신청, 증빙 등) | 착오 | 관리미비 |
| 수급자 | 수요자 (개인 또는 가구) | ○ | ○ | ○ | |
| | 공급자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 | ○ | ○ | ○ | |
| 행정 담당자 | | | ○ | ○ | ○ |

- 유형별 부정수급 규모는 보장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e나라도움에 탑재되어 있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를 활용하며, 급여지원 형태 등의 사업 특성과 부정행위 주체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의도성 파악 여부 등에 따라 유형화 실시
- 부정수급에 대한 규모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유형화) 필요
- 부정수급 유형화는 고의성 여부,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

- 대분류 : 부정수급의 고의성에 따라 ‘고의성’, ‘비고의성’으로 구분
 - 중분류 : 고의성 여부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로 구분
- 하지만 사업별로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의성 판단’ 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에 적용될 유형화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유형화 1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의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구축 방식에 적용된 유형화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유형화 2는 유형화 1에 고의성 판단여부 불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임
 - 유형화 3은 유형화2의 수급자 항목을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며, 유형화 4는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하여 파악하는 방식임

〈표 2-15〉 유형화 1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방식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표 2-16〉 유형화 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표 2-17〉 유형화 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서비스 제공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서비스 제공자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 | | 서비스 제공자 | 부적정 수급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고의성 판단’ 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행복e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등에 활용되는 부정수급과 관련되는 다양한 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 해당 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8〉 유형화 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 대분류 | 유형 구분 | | | | 소분류 |
|---------|--------------|---------|-------------|-----------------|-----------------|
| | 부정행위 주체 | | 중분류 | | |
| | |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
| | | 서비스 제공자 | 없음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제공자 기망 |
| | 행정담당자 | 없음 | 기망 |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 |
| | | | 부패 | 제공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서비스 제공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제공자 오류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서비스 제공자 | |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정 수급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 실태조사 적용

- 유형화1 또는 유형화2는 중앙부처 소관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회보장급여 별 기본 집계표로 적용
- 유형화3 또는 유형화4는 부정행위 주체를 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행정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집계표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코드를 매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향후 실태조사에서 초점을 맞출 분야 중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 등에 적용하여 향후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제 3 장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 및 사후관리 체계와 조사방향

제1절 사회보험

제2절 공공부조

제3절 사회서비스

제4절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3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 및 << 사후관리 체계와 조사방향

제1절 사회보험

1. 국민연금

가. 제도개요¹⁰⁾

- 사회보험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 보장제도임. 사회보험 중에서 노령의 위험을 대비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임.
-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각출해서 이를 재원으로 노후로 인한 소득중단,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각각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임.
 - 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해오다가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민을 포괄하는 연금제도로 발전하였음.
- 이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하고,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 완화 등의 조치로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음.
- 국민연금 급여는 전술한 것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구성됨.

1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의 일시금 급여로 구분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기본적으로는 연금급여로 지급이 되지만 연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함.

나. 부정수급 유형

-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됨.
 -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급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급여를 환수금이라 하며, 환수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국민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부정수급이라 함.
- 국민연금제도의 부정수급 유형
 - 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수급 ‘유형화3’과 ‘유형화4’를 적용할 수 없음(본문 pp. 71-72 참조).
 - 이는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의료기관과 같이 수급자이면서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 간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엄밀히 보면 국민연금제도의 서비스 수요자는 가입자와 수급자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기망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부정수급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형화에 적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음(소분류 기준).
 - (고의성) 서비스 수요자 기망,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행정 부패
 - (비고의성) 서비스 수요자 오류, 행정오류
 - (고의성 판단 불가)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부적정 지출
- 국민연금제도의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 서비스 수요자 기망: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사

망한 수급자 대신 가족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소위 '유령연금'), 배우자와 혼인관계 변화 또는 생계유지 상태가 종료되었음에도 허위신고로 부양가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타 사회보험 급여를 수급함에도 허위신고나 고의 누락으로 장애연금을 과다수급하는 경우 등

- 서비스 수요자 오류: 수급권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혼인관계 또는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다.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1) 전달체계

□ 개요

- 공단 본부에 국민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고객센터지원실,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이 있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건강, 고용, 산재보험과의 정보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역본부 7개소(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와 109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그 밖에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가 각 지사에 배치되어 있음.

2) 사후관리 체계 및 현황

□ 사후관리 개관

-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주로 거짓 서류 제출, 거짓 진술, 수급권 변동사실 은폐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로 분류되며, 부정수급 해당 여부는 수급자의 진술이나 행위 등으로 드러나는 부정수급 의도¹¹⁾를 감안하여 지사 담당자가 판단

□ 사후관리 방법과 체계

- (수급권 변동 관리) 주민등록변동자료 및 대법원의 혼인(이혼)자료 등을 입수하여 사망, 재혼 등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 사실 조기 확인을 통해 전체적으로 수급권 변동 처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자료 입수주기 단축 등 부정수급(환수금) 발생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조사대상 전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축된 내·외부자료를 활용하여 선정 기준과 조사 대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확인조사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사기 사건, 건강보험부당이득 결정자 등 부정수급 의심 사건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음.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대상 선정시스템” 구축 및 공단 홈페이지에 “부정수급신고센터”(2015년~) 운영

〈표 3-1〉 부정수급 관리 조직체계

| 구분 | 부서 | 수행 업무 |
|---------------|-------------------|--------------------------------|
| 본부 | 급여조사팀 | 사업기획 및 업무지원 |
| 지역본부 (7개소) | 연금지급부 | 수급권 확인조사, 부정수급자 고발 업무 |
| 지사 (109개소) | 연금지급부 (수급권확인팀) | 수급권 확인조사 출장조사는 전체건수의 50% 이상 |

주: 지사 109개소에는 지역본부 7개소가 포함됨.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표 3-2〉 부정수급 관리 인원

| 구분 | 계 | 본부 | 지역본부 | 지사 |
|-----|-----|----|--------------------|-----------------------|
| 정규직 | 64명 | 6명 | 7명 (1명×7개 지역본부) | 51명 (0.5명×102개 지사) |

주 1: 본부:급여조사팀 인원(13명) 중 부정수급·확인조사관련 인력만 산정(팀장 포함)
 2: 지사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어 0.5명으로 계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11) 수급권 확인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거짓진술, 사실은폐, 허위 신고(신청), 변동사실 미신고 및 그로 인한 해당 급여 계속 수령 인지 여부 등

□ 부정수급 적발 경로

- (공적 변동자료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이혼 자료, 사망의심 자료 등 외부자료를 기초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정리하는 수급권 변동 확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 적발
- (공적 변동자료가 없는 경우) 수급권 변동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자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연간 6.5만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확인조사 업무 수행 및 기획조사(수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
- (기타 지사발굴 등)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인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급권 확인절차를 진행하여 부정수급을 적발·예방함.

〈표 3-3〉 부정수급 발생 현황(2015~2019.6)

('19년 6월말 기준. 단위: 건, 천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
| 부정수급 적발건수 | 44 | 52 | 65 | 40 | 20 |
| 연도별 수급자 수 | 4,029 | 4,362 | 4,693 | 4,769 | 4,834 |

주: 연도별 수급자 수는 (반환·사망)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현황임.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표 3-4〉 적발 경로별 부정수급 비중(2015~2019.6)

('19년 6월말 기준. 단위: %)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¹⁾ |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공적 변동자료 확인 | 기타 신고 등 | 계 |
|----------------------------|-----------------------|---------|-------|
| 15.8 | 71.1 | 13.1 | 100.0 |

주1 : 공적변동자료가 없는 수급자 중 '수급권변동' 개연성이 높은 자에 대한 출장 확인 등으로 적발 건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표 3-5〉 부정수급 발생사유 순위별 현황(2015~2019.6)

(‘19년 6월말 기준, 단위: 건)

| 순위 | 사유 | 사유 내용설명 | 건수 |
|----|-------------------------|--|-----|
| 1 |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 부양가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연금에 배우자, 부모(60세 이상), 자녀(19세 미만)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적 성격(배우자: 월 21천원, 자녀·부모 1인당: 월 14천원) | 127 |
| 2 | 수급권 취소 | 수급권 취소: 허위·부정 등이 확인되어 최초 수급권 발생부터 무효처리된 건 | 41 |
| 3 | 소멸 (재혼, 사망 등) | 소멸: 수급자의 사망, 유족연금수급자인 배우자의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시 수급권 소멸 | 27 |
| 4 | 산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령 계 | 산재보험 등 수령 시 유족·장애연금 1/2만 지급하며, 손해배상금 수령 시 최대 5년 지급정지 | 26 |
| | | | 221 |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 부정수급자 (징수 등)관리

- (납부독려 등) 고지서 발송 등 납부를 독려하고 지급할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급여에서 충당하며, 재산조사·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징수절차) 환수금(부정수급) 발생 즉시 납부의무자를 확정하고 고지 및 독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체납처분 집행
 - 매월 정기적으로 미납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자동이체 납부, 자동화 기기 납부 등 납부편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 건설기계, 자동차, 지적(토지), 어선자료, 부가세 환급자료, 공매자료 등을 입수하여 미납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 체납처분에 활용하고 있음.
 - 환수금(부정수급) 징수독려 절차(5단계)
 - (1단계) 고지서 송부 및 7일 이내 납부안내
 - (2단계) 독촉고지 및 납부 독려
 - (3단계) 미납사유 파악 및 재산조사 출장
 - (4단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장 등 발송
 - (5단계) 체납처분 승인 및 집행
- (고발) 부정수급자 중 금액 규모 또는 미납(납부 거부·회피)의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발 절차 진행.
 - 고발 기준(원칙)

- 부정수급액 1천만 원 이상인 자
- 부정수급액 5백만원 이상 & 부정수급 기간 24개월 이상 & 고의적인 납부 거부자
- 허위자료 제출, 공문서 위(변)조자는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과는 무관
- 고발 절차
 - (지사) 고발 예정자 조회 및 고발 여부 종합 검토 ⇒ 형사고발 대상 확정 및 지역본부로 고발 의뢰
 - (지역본부) 형사고발 절차 진행(고발예고, 입증자료 추가 확보 등) 및 결과 등 기록

라. 조사지표 및 조사방향

□ 조사지표

○ 부정수급 관리 조직

- 조직 현황 및 업무 분장
- 본부 외 지역본부 또는 지사 단위의 관리조직 운영 여부 및 현황

○ 부정수급 관리 방법

- (수급자) 수급권 변동 관리 방법, 수급자 확인조사 방법
- (수급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와 연계 여부 및 방법
- (공급자) 행정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여부 및 작동방식
- (수급자, 공급자)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및 운영 방식

○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운영

- 신고시스템 운영 방식(접수, 확인, 사후관리 등)
- 신고시스템 운영 성과(신고시스템을 통한 확인 건수, 금액 등)

○ 부정수급 적발 시 사후조치 방법

- 급여 환수 방법
- 부정수급 현황 관리(집계 주기 등)

□ 조사방향

- 국민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대상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임.
 - 본부와 지역본부(필요시 지사) 간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역할 확인 후 역할에 맞는 조사문항 개발 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기망에 의한 부정수급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담당자의 오류나 부패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조사 필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가능성 타진
 - 정보연계 통한 부정수급 관리 여부 확인. 관리가 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 모두 공통 질문 필요
 - 설문조사로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담당자와 각 제도별 부정수급 관리 담당자와의 FGI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형별 집계표

- 국민연금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위 주체에 서비스 공급자는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인 서비스 수요자와 행정담당자로만 구성됨.
- 따라서 부정수급 유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는 존재하지 않아 부정수급 유형별 집계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표 3-6〉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유형별 집계표 양식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분류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 행위 주체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 고의성 | 서비스 수요자 (수급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있음 |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행정담당자 | 없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있음 |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비고의성 | 서비스 수요자(수급자) |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 '수요자 행정담당자간 공모'의 경우 주된 '행위 주체'에 따라 중분류(기망, 부패)를 선택

2. 건강보험

가. 제도 개요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¹²⁾하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¹³⁾으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하며,
 -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보험급여의 범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내용을 적용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관련법에 의해 개설·등록된 병·의원·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수술 등의 서비스)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하며 총진료비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결정됨.

12) 가구 소득 및 재산이 특정기준이하인 대상자는 의료급여제도로 보호

13) 국민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구성

- 요양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인 100%로 부담함.

나. 부정수급 유형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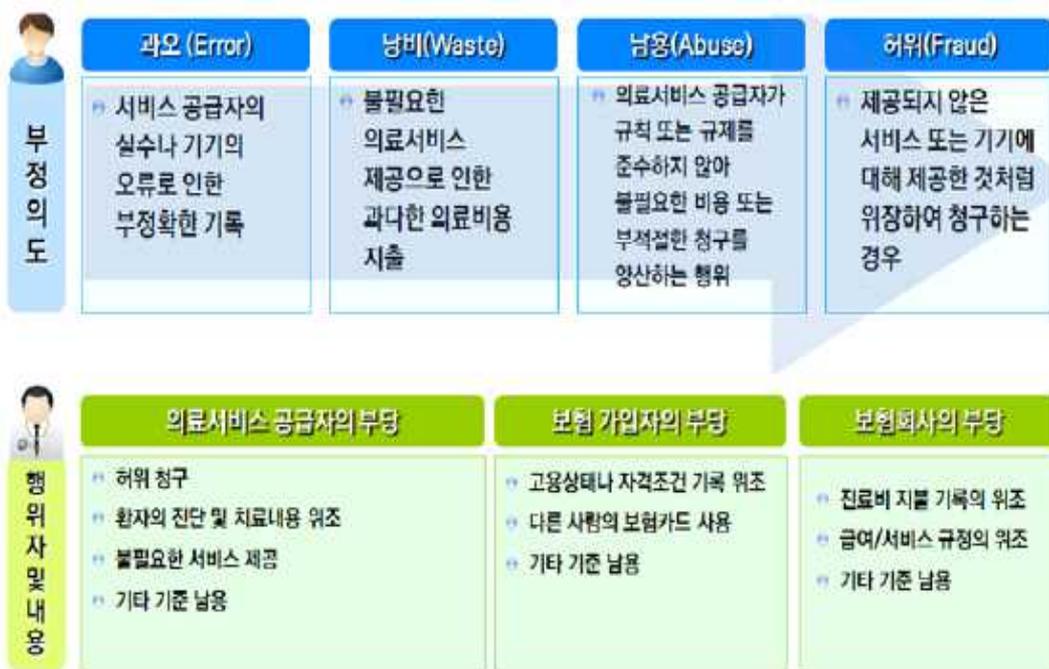
- 부적정 지출은 거짓 또는 사기 행위로 인한 부정(Fraud) 한 지출 외에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및 이용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지출의 연속적 개연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사용되고 있음.
 - 국가별로 의료비 관리의 중요도, 발생 기전, 사회적 이슈에 따라 부적정 지출의 구성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국민의료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국가들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모든 지출을 부적정 지출로 정의하고 있음.
 - 재정의 효율적 지출과 누수 관리에 대한 국가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낭비적 지출, 오류 까지도 부적정 지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폭넓은 범위로 접근하여 사전예방, 감지, 조사 및 처벌활동으로 연계할 때, 최종의 부정행위 근절과 전반적인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전적으로 단순과오, 남용, 부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다 해도 부정만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아울러, 공급자의 청구는 최근까지 단순과오에서부터 부정행위로의 발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접근들이 검토되어 온 반면, 가입자의 부정 및 부당 수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방지 방안이 검토되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 부적정 지출은 단순과오(error), 낭비(waste), 남용(abuse), 부정(Fraud)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갖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함.
 -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당청구의 개념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14) 신영석 외(2015)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의 부정수급 정의 및 유형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범주로 확대하고자 함.

- 단순 과오가 누적되어 남용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심화될 수 있는 연속적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상 설정은 광의의 부적정 지출로 접근해야 함.
- 기존의 부적정 지출 개념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한하여 논의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범위를 서비스 공급자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음.
 - 의료서비스 공급자(의사, 병원 등), 환자 보험가입자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지출의 개념에서 접근함.

[그림 3-1] 부적정 지출의 스펙트럼



자료 : 신영석 외(2015), 그림 2-3

- 의료공급자 측면의 주요 부정수급 유형
 - 입·내원 허위 청구 또는 증일 청구
 - 의료자원 허위 신고 관련 부당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청구, 의약품 대체, 증량 청구
 -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사무장병원, 중복개원, 개설 자격 등)
- 가입자 측면의 부정수급 유형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체납 등) 중 부당수급
 - 상해요인 진료에 의한 부정 및 부당수급
 - (광의) 과다 및 중복 진료

〈표 3-7〉 건강보험 부당지출 유형

| 유형 | 방법 | 세부사항 |
|----------|---|--|
| 부정지출(허위) | 신원도용 | 가입자 : 건강보험증 도용 대여, 무자격자·외국인 및 재외 국민 공급자 : 가짜환자, 허위 진료비 청구 등 |
| | 이중청구 | 보험 간 이중 청구 |
| | 허위과다청구 | |
| 남용 | 기준이나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남용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한 지출 | |
| 낭비 |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로 인한 중복적 의료 등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유인에 의해 부가적으로 발생한 지출 | |

자료 : 신영석 외(2015)

다.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1) 전달체계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등이 포함되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재정 관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료와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에 근거한 공단의 업무로 보험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청구·확인·심사·지급·사후관리 등 전반을 포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청구·지급체계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직접 받고, 나머지 공단부담금(요양급여)을 심평원에 청구
- 심평원은 진료의 적정(과잉, 착오 등)여부를 심사·평가 후 심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및 해당요양기관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아 이에 의거한 요양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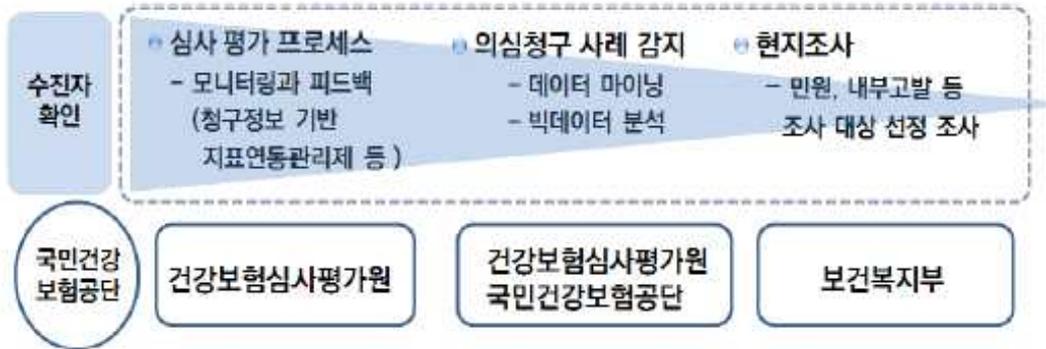
2) 관리 체계 및 현황

□ 부적정 지출 관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는 공단의 가입자 확인, 진료비 지급 전 심평원의 심사 활동, 진료비 지급 후 공단과 심평원의 확인심사 및 감지 활동, 부정 의심 사례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음(강희정 외, 2010).

[그림 3-2] 한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자료 : 신영석 외(2015)

-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삭감 조정을 할 수 있음.
 - 전산 청구시 오류 점검 과정을 통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 심평원은 추가적인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하여 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요양기관 대상 확인 활동을 통해 부적정 지출의 사전예방 및 사후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공단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가입자에 의한 감시 기전을 갖추므로써 부당청구의 사전 예방과 사후 감지 기능을 보완함.
 - 진료비 지급 후에도 심평원의 심사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환수 결정을 하고 있음.
- 공단과 심평원 모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사례를 선정하여 자체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 또는 부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양기관의 약 1% 규모의 부정 의심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① 가입자 대상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

○ 수진자의 진료내역 조회 제도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가입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 진료비 확인 제도

- 심평원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내역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출 감지를 위한 조사 시행

- 도용 및 대여를 통한 가입자 중심의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제보 및 신고를 통해 기획 조사하고 있음

② 요양기관 대상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

○ 전산 청구에서 오류 점검을 통한 부적정 지출 예방(심평원)

- 요양기관에서 전산을 통한 진료비 청구 접수 단계에서 청구 오류를 미리 점검 후 수정·보완

○ 심사·평가 과정에서 부적정 지출 감지 및 차단(심평원)

- 전문 심사 인력과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통해 사전에 규정된 규칙과 기준에 위배된 진료내역의 청구비용을 삭제 하는 등 청구 진료비 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진료내역 통보건 확인 조사, 전산점검결과 부당가능 건에 대한 조사, 내부 공익 신고조사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 관계 및 적법 여부 확인
 - 확인 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환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 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 제도 운영

- 사무장 병원 등 부당 의료기관 개설 및 청구 신고포상제도 운영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 관리 조직 및 역할

◎ 급여관리실

- 급여사후관리부 : 부당수급, BMS를 통한 급여조사, 소송업무, 요양기관진료비 환수, 공(직)무상 요양급여

◎ 의료기관지원실

- 조사기획부: BMS(benefit management system) 이상징후 모니터링, BMS를 통한 급여조사
- 조사1부 : 요양기관 방문확인(실사), BMS를 통한 급여조사(조사2부도 조사1부와 동일한 담당업무를 수행)
- 급여조사부 : 요양기관 방문확인, 이해관계자 관리, BMS를 통한 급여조사, 부당청구 유형발체 및 관리, 허위 부당청구 조치, 조정, 계도, 요양기관 진료비 환수, 소송업무

③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제도

-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집적 방문하여 조사
 - 현지조사의 종류 :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점검 실태조사
- 거짓청구 규모가 큰 기관(거짓청구금액 1천 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함.

〈표 3-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 청구 및 환수 사유 코드

| No | 기초 코드 | 기초코드명 | 대분류 | 행위주체 | 비고 | 사용여부 |
|----|-------|-----------------------------|-------------|------|------------|------|
| 1 | 010 | 중복청구(초재진, 이중청구)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2 | 020 | 복지부실사진료비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3 | 030 | 허위(부당)청구 | 고의성 | 공급자 | | Y |
| 4 | 040 | 무자격 및 비대상자 급여비 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5 | 050 | 휴·폐업 기간중 급여비 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6 | 060 | 타종 조합분 청구(의료보호)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7 | 070 | 비승인공상급여비 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8 | 080 | 공단 착오지급 급여비 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9 | 090 | 약제비 사후관리 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10 | 100 | 초심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1 | 104 |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수급 | 고의성 | 수요자 | | |
| 12 | 105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 고의성 | 수요자 | | |
| 13 | 110 | 기준초과 청구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4 | 111 | 발사르탄 문제의약품 약제비 정산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15 | 120 | 요양급여비 착오청구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16 | 130 | 보험자 이의신청 | 해당 없음 | | | Y |
| 17 | 140 | 심사관리부(사후)재심 | 해당 없음 | | | Y |
| 18 | 150 | 기타 (DRG, 녹색인증기관, 1차심사부)재심 | 해당 없음 | | | Y |
| 19 | 160 | 요양기관 자진신고 | 해당 없음 | | 행정처분 감면 | Y |
| 20 | 170 | 행정처분통보(원외) | 해당 없음 | | | Y |
| 21 | 180 | 인센티브 | 판단 불가 | | | Y |
| 22 | 190 | 차등수가 차감액 재정산 | 해당 없음 | | | Y |
| 23 | 200 |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24 | 210 | 실사(내부공익신고)진료비환수 | 해당 없음 | | | Y |
| 25 | 211 | 실사(공익신고)진료비환수 2014.9.1 이후지급 | 해당 없음 | | | Y |
| 26 | 220 | 장기 미상계건 현금고지 | 해당 없음 | | | Y |
| 27 | 230 | 보험료 2개월이상 체납진료 | 고의성 판단불가 | 수요자 | | Y |
| 28 | 240 | 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진료 | 고의성 판단불가 | 수요자 | | Y |
| 29 | 250 | 원외처방약제 비정산(민법750조) | 해당 없음 | | | Y |
| 30 | 251 |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원금 환수 | 해당 없음 | | | Y |
| 31 | 252 |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이자 환수 | 해당 없음 | | | Y |
| 32 | 260 | 원외처방약제비환수정산 | 해당 없음 | | | Y |
| 33 | 270 | 해외체류기간중수급 | 고의성 판단불가 | 수요자 | | Y |
| 34 | 280 | 심평원 실사진료비 환수 | 해당 없음 | | | Y |
| 35 | 290 | 공단 실사진료비 환수 | 해당 없음 | | | Y |
| 36 | 300 | 공상 | 해당 없음 | | | Y |
| 37 | 310 | 분만중복청구 | 고의성 | 공급자 | | Y |

9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 No | 기초 코드 | 기초코드명 | 대분류 | 행위주체 | 비고 | 사용여부 |
|----|-------|--|-------------|------------|------|------|
| | | | 판단불가 | | | |
| 38 | 320 | 건강검진 관련 진찰료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39 | 330 | 명세서 단순착오기재 청구건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40 | 340 | 양·한방 협진 요양기관 진찰료 청구건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41 | 350 | 휴·폐업일 이후 실제 진료한 경우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42 | 360 | 요양기관 재개설 후 전요양기관으로 청구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43 | 370 | 폐업신고 착오·행정기관 정정 미신고 | 해당없음 | | | Y |
| 44 | 380 | 휴·폐업일 이후 관련 미회신 | 해당없음 | | | Y |
| 45 | 390 | 휴·폐업일 이후 관련 기타 사유 | 해당없음 | | | Y |
| 46 | 400 | 보험사기수진자단독 | 고의성 | 수급자 | | Y |
| 47 | 401 | 보험사기 | 고의성 | 수요자 공급자 | | Y |
| 48 | 408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환수 | 해당없음 | | | Y |
| 49 | 409 | 부당행위(민법제741조) | 확인불가 | | | Y |
| 50 | 410 | 요양기관 주민번호착오(동명이인 등)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51 | 420 | 진료 예약 미삭제 청구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52 | 430 | 밤12시 이전 사망자 익일로 청구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53 | 440 | 원외처방발행 착오로 인한 약국 환수건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54 | 450 | 사망진단서, 연장신청서 등 발급시 청구 | 고의성 | 공급자 | | Y |
| 55 | 460 | 진료일수 착오(입원료 산정 등 적용 착오)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56 | 470 | 실제 사망일 이후 진료(고의청구 등) | 고의성 | 공급자 | | Y |
| 57 | 480 | 사망일 이후 관련 미회신 | 해당없음 | | | Y |
| 58 | 490 | 사망일 이후 관련 기타 사유 | 해당없음 | | | Y |
| 59 | 500 | 개설기준위반(건강보험법제 57조) | - | | | Y |
| 60 | 501 | 개설기준위반(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 | - | | | Y |
| 61 | 502 | 2개소 이상 요양기관 개설·운영(건강보험법제 57조) | - | | | Y |
| 62 | 503 | 2개소 이상 요양기관 개설·운영(민법제750조, 제741조) | - | | | Y |
| 63 | 504 |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민법 제741, 750조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64 | 505 | 2개소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민법 제741,750조) | 해당 없음 | | 환수사유 | Y |
| 65 | 510 | 환불(공무상요양 급여비 추가지급) | 해당 없음 | | | Y |
| 66 | 512 | 2개이상 기관개설(건보법제57조)2014.9.1 이후지급(공익신고) | 해당 없음 | | | Y |
| 67 | 513 | 2개이상기관개설(민법제741,750조)2014.9. 1.이후지급(공익신고) | 해당 없음 | | | Y |
| 68 | 514 | 2개이상(건보법57조,민법741,750조)2014.9 .1.이후지급(공익신고) | 해당 없음 | | | Y |
| 69 | 515 | 2개이상(건보법57조,민법741,750조)2014.9 .1.이후지급(공익신고) | 해당 없음 | | | Y |

| No | 기초 코드 | 기초코드명 | 대분류 | 행위주체 | 비고 | 사용여부 |
|-----|-------|---------------------------------------|-------------|------|----|------|
| 70 | 516 | 개설기준위반(건강보험법제57조)2014.9.1. 이후지급(공익신고) | 해당 없음 | | | Y |
| 71 | 520 | 환불(급여비 환수금 변경 결정) | 해당 없음 | | | Y |
| 72 | 540 | 환불(급여비 환수금 과납) | 해당 없음 | | | Y |
| 73 | 550 | 부당행위(민법제 750조) | 판단 불가 | | | Y |
| 74 | 560 |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입·내원일수 증일청구) | 해당 없음 | | | Y |
| 75 | 561 | 공익신고(입·내원일수 증일청구) 2014.9.1 이후지급 | 해당 없음 | | | Y |
| 76 | 570 | 내부공익신고(비급여대상 급여비용청구) | 해당 없음 | | | Y |
| 77 | 571 | 공익신고(비급여대상 급여비용청구) 2014.9.1 이후지급 | 해당 없음 | | | Y |
| 78 | 580 | 내부공익신고(미실시진료 급여비용청구) | 해당 없음 | | | Y |
| 79 | 581 | 공익신고(미실시진료 급여비용청구) 2014.9.1 이후지급 | 해당 없음 | | | Y |
| 80 | 590 | 내부공익신고(무자격자실시 진료비청구) | 해당 없음 | | | Y |
| 81 | 591 | 공익신고(무자격자실시 진료비청구) 2014.9.1 이후지급 | 해당 없음 | | | Y |
| 82 | 600 | 내부공익신고(기타) | 해당 없음 | | | Y |
| 83 | 601 | 공익신고(기타) 2014.9.1이후 지급 | 해당 없음 | | | Y |
| 84 | 610 | 임의대체조제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85 | 620 | 근로복지공단 연계자료 | 판단 불가 | | | Y |
| 86 | 630 | 환자유인 | 고의성 | 공급자 | | Y |
| 87 | 650 | 면허대여 | 고의성 | 공급자 | | Y |
| 88 | 660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추가환수 | 판단 불가 | | | Y |
| 89 | 680 | 기타의료관련법위반 | 해당없음 | | | Y |
| 90 | 690 | 인력현황 확인 | 해당없음 | | | Y |
| 91 | 695 | 간호 간병 산정기준 미준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92 | 700 | 공탁금 | 판단 불가 | | | Y |
| 93 | 710 | 동일처방전이증청구(동일약국)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94 | 720 | 동일처방전이증청구(타약국간)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95 | 730 | 의·약사 부재중 진료비 청구건 | 고의성 | 공급자 | | Y |
| 96 | 740 | 만성질환진찰료 착오청구건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97 | 750 |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 청구 | 고의성 | 공급자 | | Y |
| 98 | 760 | 산재입원중 건강보험 외래청구건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99 | 770 | 건강검진비 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00 | 780 | 치료재료대 착오청구건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101 | 790 | 치치및수술 야간·공휴가산 적용착오건 | 비고의성 | 공급자 | | Y |
| 102 | 800 | 입원기간중 입원의래 중복청구건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03 | 810 | 요양기관 대표자 본인진료건 | 확인불가 | | | Y |
| 104 | 820 | 무면허자의료행위 | 고의성 | 공급자 | | Y |

| No | 기초 코드 | 기초코드명 | 대분류 | 행위주체 | 비고 | 사용여부 |
|-----|-------|---|-------------|------|------|------|
| 105 | 830 | 실사원의처방환수 | 해당 없음 | | 환수결과 | Y |
| 106 | 840 | 업무(자격)정지기간중급여비환수 | 고의성 | 공급자 | | Y |
| 107 | 850 | 납부의무자사망에의한재결정 | 해당 없음 | | 환수결과 | Y |
| 108 | 851 | 납부의무자사망 이후 환수 결정(민법750조) | 해당 없음 | | 환수결과 | Y |
| 109 | 852 | 납부의무자사망후환수결정 민법750조 2014.9.1.이후지급(공익신고) | 해당 없음 | | | Y |
| 110 | 853 | 납부의무자 사망 이후 환수 결정(민법 제741조) | 해당 없음 | | | Y |
| 111 | 880 | 가지급 | 판단 불가 | | | Y |
| 112 | 890 | 결손처분 | 판단 불가 | | | Y |
| 113 | 900 | 수진자조회에 따른 급여비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14 | 910 | 타법령 이증청구 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15 | 920 |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급여비 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16 | 930 | 진료비청구명세서 착오청구건 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17 | 940 | 회귀난치성 | | | | Y |
| 118 | 950 | 전산확인 착오·부당 급여비 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19 | 951 | 일반상병 초재진 착오 | 고의성 판단불가 | 공급자 | | Y |
| 120 | 952 | 촉탁의 부당청구 | 고의성 | 공급자 | | Y |
| 121 | 960 | 상한제한환수 | 고의성 판단불가 | 수급자 | | Y |
| 122 | 970 | 사전상한제한환수(공단) | 고의성 판단불가 | 수급자 | | Y |
| 123 | 990 | 기타 | 판단 불가 | | | Y |
| 124 | 991 | 기타(본부) | 판단 불가 | | | Y |
| 125 | 998 | 세액환수 | 판단 불가 | | | Y |
| 126 | A4 |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민법 제741,750조 | 해당 없음 | | | Y |
| 127 | Z00 | 과거자료 일괄등록 | 판단 불가 | | | Y |

주1) '해당없음'은 부정수급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이며 '판단불가'는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판단할 수 없는 항목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협조자료 재구성

라. 조사지표 및 조사방향

-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요양심사실 등에 대해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와 사업별 관리실태 조사를 조사하고

- 지역본부(6개소 보험급여2부·장기요양2부)에 사업별 관리실태 및 기관별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
- 조사표에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 및 관리에 대한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유형별 집계표 작성과 관련하여 세부 집계표상에서 아래 삭제 처리한 부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표 3-9〉 건강보험의 유형별 집계표 양식(밑줄 항목은 삭제)

| 유형 구분 |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분류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 행위 주체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있음 | 기망(공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공급자 기망 | | |
| | 있음 |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행정담당자 | | 없음 | 부패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있음 | 부패(공모) | 행정 부패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서비스 공급자 | |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공급자 오류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 |
| | | 서비스 공급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정 수급 |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

3. 고용보험

가. 제도 개요

□ 고용보험 정의와 및 도입목적

- 고용보험은 1993년에 법을 제정하여 1995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실업예방,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음(김미곤 외, 2018, p.248)

□ 고용보험 제도의 유형과 운영방식

-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임(김미곤 외, 2018, pp. 252-269)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임금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 모성보호사업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재정은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로도 분류됨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됨. 사업주에게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고, 재직근로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일정 한도내에서 지원함. 실업자에 대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지원금을 지원함
 -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예방,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촉진과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수급 지원대상임

나. 부정수급 유형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의 부정수급은 아래

와 같이 유형화 되어 관리되고 있음.

- 부정수급유형 중 허위신고, 위변조, 은닉 등은 행위자의 의도성이 내포된 의미이지만, 미신고와 부적격 용어자체로는 행위자의 의도성을 파악할 수 없음.
 - 의도적인 미신고와 수급자와 제공자의 오류일 가능성도 함께 있기 때문임.
 -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서는 행정담당자의 의도성과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부정수급 유형 기준을 따라 ‘허위’, ‘위변조’, ‘은닉’으로 표현되는 문항이 있으면 기망으로 분류하고 미신고의 경우, 오류로 분류하며, 부적격 수급은 고의성 판단 불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모성보호 부정수급 유형 |
|---|--------------------|
| 01. 허위근로(명의대여)/ | 1. 피보험단위기간허위신고 |
| 02. [상용]취업사실 은닉·미신고 | 2. 통상임금허위신고 |
| 03. [일용]취업사실 미신고/수급 이전 1개월간 10일 근로 | 3. 이직및취업사실의미신고 |
| 04. [자영업] 사업영위 거짓·미신고 | 4. 사업주와공모하여허위신고 |
| 05. 소득 거짓·미신고(강의, 임시적 등 일회성 소득) | 5. 휴가기간동안근로제공 |
| 06. 산재 휴업급여 수급 미신고 | 6. 휴가기간,일수허위신고 |
| 07. [상용,일용] 취득/상실일자 거짓신고 | 7. 사업영위미신고 |
| 08. 이직사유 거짓신고 | 8. 기타 |
| 09. 임금액 등 거짓신고 | |
| 10. 직능훈련수당 중복 및 거짓·미신고 | |
| 11. 이직확인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부정 | |
| 12. 대리(출석·인터넷)실업인정 및 허위 구직활동 | |
| 고용안정 부정수급 유형 | 직업능력 부정수급 유형 |
| 1. 위장고용및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의허위신고를통한장려금의 지급 | 21. 허위로 과정인정(위탁계약) |
| 2.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장려금 지급 | 22. 허위 자료 제출 |
| 3. 매출액/재고량/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제출 | 23. 수감자격 부적격 |
| 4.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 24. 훈련장려금 수급자격 부적격 |
| 5.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 작성 및 신고 | 25. 훈련 미실시(전체) |
| 6.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 | 26. 훈련인원 조작 |
| 7.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 | 27. 훈련기간·시간 미준수 |
| 8.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 28. 출결관리 위반·조작 |
|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99. 기타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9a). 협조자료

다.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1) 전달체계

□ 개요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과 40개의 지청과 1개의 출장소로 전국 47개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고용노동부, 2019, p. 678), 각각의 지방관서에 1~5개의 고용센터 설치 운영하여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고용보험 적용과 징수업무는 1999년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김주섭, 2005, p. 253)하고 있으며, 구직자 및 구인자를 위한 일자리정보 및 인재정보 데이터 운영을 위한 일자리포털 워크넷 운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2) 사후관리 체계 및 현황

(1)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대응 현황

- 부정수급조사 및 관리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19, p. 678),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보험수사관이 배치되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응
- 2018년 4월에 부정수급 조사과에 고용보험 수사관을 배치, 고용노동지청 소속으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2018.4.4)
 - 2018년 4월, 지방노동고용관서에 2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
 - 2017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

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 및 전달체계 개선(고용노동부, 2016.1.29.)

- 라디오 방송, 6대 광역시 지하철, 길거리 전광판 등을 활용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전체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 설명회 시 부정수급 유형, 근로사실 신고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실업급여 지급 단계에서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 신청자의 3%에 대한 수급 적격 확인을 강화
-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부정수급 유형별 의심자를 분석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설치(’16.2), 지방관서 부정수급 전담 부서 확대(기존 6개소 → 9개소) 등 기획조사 인프라 확대
 -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조직적, 공모형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 : 부정수급 현황

〈표 3-10〉 실업보험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 구 분 | 실업급여 | | 부정수급자(C) | | 부정수급액(D) | |
|------|-----------|-----------|----------|-----|----------|-----|
| | 수급자(A) | 지급액(B) | | C/A | | D/B |
| 2011 | 1,202,066 | 3,561,353 | 27,390 | 2.3 | 22,268 | 0.6 |
| 2012 | 1,187,247 | 3,676,666 | 20,959 | 1.8 | 11,278 | 0.3 |
| 2013 | 1,209,587 | 3,881,921 | 21,759 | 1.8 | 11,786 | 0.3 |
| 2014 | 1,252,677 | 4,156,135 | 22,108 | 1.8 | 13,092 | 0.3 |
| 2015 | 1,272,470 | 4,547,337 | 21,467 | 1.7 | 14,768 | 0.3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2016.1.29.) p.5. 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부정수급 처벌강화(고용노동부, 2019. 7.19.)

-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

* 주요내용

- 「징벌강화」 <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추가징수 강화」 <현> 구직급여액 상당 액수 → <개>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징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용노동청은 1년에 상반기(5월)와 하반기(10월)에 1개월씩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8조에 명시됨

□ 방지시스템¹⁵⁾

-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 2019b)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을 목적(고용보험 수사관의 기획수사 등 지원)
-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19.1.21~12.31 시범운영
-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획수사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적발률이 높은 유형은 향후 자동경보 형태로 수사관 제공 검토

- 행정데이터 연계 : 워크넷, HRD, 일모아 등

- 빅데이터 관리부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팀이며, 데이터 추적, 로직개발, 유형개발 수행

15) 2019년 8월 8일 개최된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 팀과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작성

- 국회 또는 감사원에 부정수급 실태자료는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에서 작성
- 수사관이 해당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적발 및 환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판별하면 환수 처리시키고 시스템에서 관리)
 - 기소에서 검찰송치까지 하나의 수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검찰에 송치하면 사건이 종료되고 그 이후로는 관리하지 않음.
- 고용보험 부정수급 모니터링 팀(6인으로 구성)
 -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플랫폼 실 소속
 - 업무 내용 : 부정수급수사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부정수급 적발 및 관리

라. 조사방향 및 조사지표

□ 조사방향

- 집계조사는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 팀을 대상으로 실시
-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1) 고용노동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고용관서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여,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을 집계자료로 산출
- 고용보험의 경우 지자체는 조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조사지표

-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조사지표 방향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의 소분류 항목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정수급 중분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나타난 부정수급 유형 지표는 허위와 미신고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데이터 상에는 부패, 행정오류, 부적정 지출에 대한 지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추후 지표는 행정오류, 부적정 지출 관련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행정담당자가 개입되는 부패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관리기관이 부정수급 관련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내부의 부정수급 관리 담당자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지표리스트

| 급여 | 고의성 | 행위주체 | 중분류 | 소분류 | 부정수급 유형 | |
|----------|----------|----------|-------------|-----------|---|---|
| 고용 안정 | 고의 | 수요자 | 기망 | 수요자 기망 | 10. 직능훈련수당거짓신고 11.이직확인서, 진단서, 근로계약서등각종증명서위조·부정 12.대리(출석·인터넷)실업인정및허위구직활동 | |
| | | 제공자 | 기망 | 제공자 기망 | 1. 위장고용및피보험자자격취득, 상실의허위신고를 통한장려금의지급 2. 근무사실이없는친인척을피보험자로등록하여지원/장려금지급 3. 매출액/재고량/생산량등을기록한서류의변조및허위제출 4.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등의실시, 고용유지조치기간및대상자등의허위신고 5.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허위작성및신고 6. 임금대장및기타급여지급서류등의변조및허위신고 7. 각종증명서및확인서등의변조및허위작성 8. 훈련비등비용정산서류의위조및허위작성 9. 기타위에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 |
| | 비고의 |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수급자 오류 | 10. 직능훈련수당중복및미신고 | |
| | 모성 보호 | 고의 | 수요자 | 기망 | 수요자 기망 | 1. 피보험단위기간허위신고 2. 통상입급허위신고 6. 휴가기간, 일수허위신고 |
| | | | 수요자/ 제공자 | 기망 | 수요자/ 공급자기망 | 4. 사업주와공모하여허위신고 |
| | | 비고의 |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수급자 오류 | 3. 이직및취업사실의미신고 7. 사업영위미신고 |
| | | 판단 불가 | | 기타 | 기타 | 8. 기타 |
| | | | | 부적정 수급 | 부적정 수급 | 5. 휴가기간동안근로제공 |
| | 실업 급여 | 고의 | 수요자 | 기망 | 수요자 기망 | 01. 허위근로(명의대여) 02. [상용]취업사실은닉 04. [자영업]사업영위거짓 05. 소득거짓신고 |

| 급여 | 고의성 | 행위주체 | 증분류 | 소분류 | 부정수급 유형 | |
|----------|-------------|------|-----------------|------------|------------------------|------------------------------|
| | | | | | (강의, 임시적등일회성소득) | |
| | | | | | 07.[상용, 일용]취득/상실일자거짓신고 | |
| | | | | | 08.이직사유거짓신고 | |
| | | | | | 09.임금액등거짓신고 | |
| | | | | | 02.[상용]취업사실미신고 | |
| | 비고의 |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수급자 오류 | | 03.[일용]취업사실미신고/수급이전1개월간10일근로 |
| | | | | | | 06.산재휴업급여수급미신고 |
| | | | | | | 04.[자영업]사업영위·미신고 |
| | | | | | | 05.소득미신고(강의, 임시적등일회성소득) |
| | | | | | | 27.훈련기간·시간미준수 |
| 직업 능력 | 고의 | 수요자 | 기망 | 수요자 기망 | 21.허위로과정인정(위탁계약) | |
| | | | | | 25.훈련미실시(전체) | |
| | | 제공자 | | 제공자 기망 | 26.훈련인원조작 | |
| | | | | | 28.출결관리위반·조작 | |
| | 수요자/ 제공자 | | 수요자 / 제공자 기망 | 22.허위자료제출 | | |
| | | | | 23.수강자격부적격 | | |
| | 판단 불가 | | 부적정 수급 | 부적정 수급 | | 24.훈련장려금수급자격부적격 |
| | | | | | | 99.기타 |
| | | | 기타 | 기타 |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9a). 협조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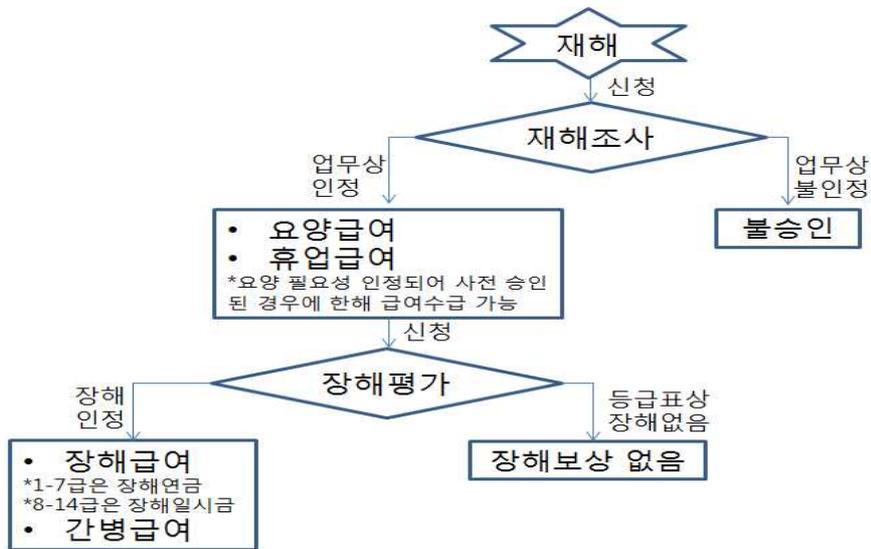
4. 산재보험

가. 제도 개요

- 산재보험은 1963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됨.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장애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대체하고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임.
-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하여 사업주 책임을 강제보험화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음.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종합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보험 급여 종류가 다양함.

- 재해발생 이후 최초요양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경우에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치료가 끝난 종결 시점에서 장해평가를 통해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유족급여, 장의비를 수급할 수 있음.

[그림 3-3] 재해발생이후 산재보험급여 수급절차



나. 부정수급 유형

- ‘부당이득’이란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액 또는 배액을 징수함.
 -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수급권자나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받은 경우, 또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조치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 위 부당이득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정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부당이득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9호, 부정수급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1호).
 - 이 외에 보험료징수법상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도 부정수급의 범위에 포함함.
 - 산재보험에서는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을 구분하며 부당이득 중 허위부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정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부당이득 유형은 크게 허위부정, 신고의무 불이행, 착오청구, 착오지급, 기타 등으로 구분 가능함.
 - 부당이득의 행위주체는 근로자, 사업주, 의료기관, 행정담당자 등이 있음.
 - 부당이득의 발생유형은 허위부정, 신고의무 불이행, 착오청구, 착오지급, 기타로 구분 가능함.
 - 보험급여 지급이 사업주,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부당이득 대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임.
-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최초요양 관련된 유형과 보험급여 관련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 최초요양 관련: 산재보험 적용대상(적용사업장, 근로자)인 것처럼,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속여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대부분 고의성이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적용사업장 관련: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용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신청하거나(사업장 바꿔치기), 미가입재해이지만 14일 이내* 재해인 것으로 성립일자를 조작하여 신청하는 경우(성립일 조작).

*사업개시 14일 이내 재해의 경우 미가입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정수금이 없음.

- 적용근로자 관련: 사업주, 친인척 등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하여 신청하거나(근로자성 조작), 민사보상책임이 있는 대상을 근로자로 속여 신청하는 경우(재해자 바꿔치기).
 - 업무상 여부 관련: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인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하는 경우(재해경위 조작).
- 보험급여 관련: 보험급여별로 급여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되지만, 단순 오류 등 고의성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보험급여별로 발생 가능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 평균임금: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 되는 평균임금을 조작함(평균임금 조작).
 - 휴업급여: 요양중 미취업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나,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요양중 취업한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수령함(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 장애급여: 장애상태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고의로 악화시켜 높은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보상을 더 많이 받거나(장애상태 상이(조작)), 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지급받음(장애연금 부정수급).
 - 간병급여: 장애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를 계속 수령함(간병급여 부정(부당)수급).
 - 유족급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사실을 감추고 연금을 계속 수령함(유족연금 수급권상실 미신고).
 - 이송료(요양급여): 거주지와 병원간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거주지를 속여서

이동거리를 길게 함으로써 교통비를 과다 수령함(이송료 부정(부당)수급).

○ 기타

-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함.

〈표 3-11〉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2014-2018)

(단위: 건)

| 구분 | 적발 유형 | 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계 | 1,070 | 242 | 222 | 207 | 203 | 196 |
| 최초 요양 관련 | 최초요양관련 소계 | 303 | 95 | 80 | 44 | 43 | 41 |
| | 재해경위 조작 | 172 | 75 | 42 | 24 | 15 | 16 |
| | 근로자성 조작 | 73 | 11 | 24 | 7 | 19 | 12 |
| | 사업장 바뀌치기 | 47 | 8 | 11 | 10 | 9 | 9 |
| | 재해자 바뀌치기 | 3 | 0 | 1 | 1 | 0 | 1 |
| | 성립일 조작 | 3 | 1 | 0 | 1 | 0 | 1 |
| | 적용관계 조작(공사금액, 근로자수 등 조작) | 3 | 0 | 1 | 1 | 0 | 1 |
| | 기타(최초요양 관련) | 2 | 0 | 1 | 0 | 0 | 1 |
| 보험 급여 관련 | 보험급여관련 소계 | 710 | 134 | 130 | 145 | 150 | 151 |
| | 평균임금 조작 | 24 | 7 | 6 | 1 | 2 | 8 |
| | 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 438 | 77 | 83 | 101 | 86 | 91 |
| | 장해(폐질)상태 상이(조작) | 159 | 20 | 27 | 32 | 49 | 31 |
| | 장해연금 부정(부당)수급 | 11 | 6 | 4 | 0 | 1 | 0 |
|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미신고 | 11 | 2 | 1 | 1 | 4 | 3 |
| | 간병급여 부정수급 | 54 | 19 | 8 | 9 | 6 | 12 |
| | 이송료 부정(부정)수급 | 3 | 1 | 1 | 0 | 0 | 1 |
| 기타(보험급여 관련) | 10 | 2 | 0 | 1 | 2 | 5 | |
| 기타 | 기타관련 소계 | 57 | 13 | 12 | 18 | 10 | 4 |
| | 진료비 부당청구(의료기관) | 11 | 1 | 2 | 6 | 2 | 0 |
| | 요양관리 실태 | 36 | 11 | 7 | 11 | 4 | 3 |
| | 기타 | 10 | 1 | 3 | 1 | 4 | 1 |

주: 위 적발건수는 부정수급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건에 한함

자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kcomwel/info/docu.jsp에서 2019.11.12. 인출)

다.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 산재보험 전달체계 개요

- 본부 및 지역본부 6곳(서울,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소속지사 54곳,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곳, 인재개발원, 콜센터, 산재병원, 근로복지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재활공학연구소가 있음.
- 본부는 총괄 관리 및 정책 기능을 수행하며, 실제 집행은 지역본부와 소속지사
에서 수행함.
 - 지역본부는 광역단위를 총괄하면서 광역단위 업무(확정정산, 진료비 심사, 부정수급예방, 송무 등)를 수행함.
 - 지역본부 및 소속지사는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징수, 산재보험 보상업무를 담당함.

□ 사후관리 체계

- 보험급여 지급 이후 각종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자체 발견, 공단·고용노동부·감사원의 감사,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부정수급)이 발생하는지 점검함.
 -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예를 들어 휴업급여 지급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음.
-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운영함. 2009년에는 보험조사팀(임시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2010년에는 부정수급조사부(정규조직, 본부부서)으로 개편함. 현재는 본부 보험급여관리부에 주로 관리기능만 남기고 지역본부 부서(부정수급예방부)로 재편됨.
 - 본부: 이전에는 부정수급조사부에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보험급여관리부에 부정수급 관련 총괄 및 기획조사 등의 기능 위주만 남김. 보험급여관리부에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함.
 - 지역본부: 실질적인 부정수급 조사업무는 지역본부의 부정수급예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부서는 부당이득징수와 부정수급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는 제보사건, 인지사건, 기획조사, 합동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를 수행

- 제도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사건(특히 최초요양 관련)의 경우 신고자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음.
 - 인터넷, 우편, 팩스, 전화, 방문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을 제보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 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000만원(최저 1만원)으로 하고,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함.

〈표 3-12〉 포상금 지급기준

|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 신고포상금액 |
|------------------------|-----------------------|
| 5천만원 이상 | 5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5%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10% |
| 1천만원 미만 | 합산금액의 15% |

자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dis/dis.jsp>에서 2019.11.12. 인출)

- 부정수급 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하여 위험징후 분석, 위험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함.
 - 유형화된 부정수급 발생시나리오를 등록한 후 유형별로 부정수급 유의자를 추출하여 조사자료로 활용하고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있음.
- 부당이득(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원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부당이득 징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절차를 밟음.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처리하여 징수함. 고의성이 없으면 100%(원액징수), 고의성이 있으면(법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 200%(배액징수) 징수함.

-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의 소멸시효는 3년임.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급여 지급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의뢰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2018.12.13.)되어 고액 상습 부정수급자(3년간 횡수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 또는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음.

〈표 3-13〉 배액징수 사례(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 구분 | 사례 |
|--------------|--|
| 업무상 재해 유형 | ① 적용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조작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③ 업무외재해의 사실관계(재해경위 등)를 조작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④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 급여청구 유형 | ①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상병을 고의로 악화시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의도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의 운영 사실을 숨긴 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자가 영업활동 사실을 숨긴 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④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증명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⑤ 사망 또는 가족관계 변경 등 신고사항을 고의 또는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⑥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⑦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과정에서 산재보험 업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위계·기만·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거짓 보고 또는 증명을 하게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자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에서 2019.11.12. 인출)

라. 조사지표 및 조사방향

□ 조사지표

○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 조사표-산재보험 분야

- 대분류는 고의성, 비고의성로 구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보통 고의성 있으면 배액징수, 없거나 확인하기 힘들면 원액징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비고의성과 고의성 판단 불가는 구분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나,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함.
- 중분류 중 행위주체는 근로자, 사업주, 의료기관, 행정담당자로 구분 가능

함.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다른 주체에 비하여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주체간 공모여부는 부당이득징수시 연대책임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담당자 확인 필요함. 다만 서비스 수요자로 분류 가능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
-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도 다른 제도의 조사표와 일관성을 위해 남겨둠.
- 산재보험 조사지표(안)

| 유형 구분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 | | 소분류 | 비고 |
| | 행위 주체 |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근로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간 공모 | *추가 |
| | | |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 공모(기망)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서비스 수요자 (사업주)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간 공모 | *추가 |
|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 공모(기망)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서비스 공급자 (의료 기관) | 없음 | 기망 | 서비스 공급자 기망 |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부패 |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행정담당자 | 없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있음 | 공모(부패) |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근로자) | 수급자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 서비스 수요자 (사업주) | 수급자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 서비스 공급자 (의료기관) | 수급자오류 | 서비스 공급자 오류 | | |
| | 행정담당자 | 행정오류 | 행정 오류 | | | |

□ 조사방향

○ 조사시 고려사항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에 대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당이득 전체를 부정수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음.
-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추출할 수도 있으나, 처리담당자의 정확한 입력을 전제로 하므로 이 방법이 유효할지 담당자의 확인 필요함.

○ 집계표 수정

| 구분 (행위주체) | 대분류 (4종) | 중분류 (9종) | | | | | | | | |
|--------------|-------------|----------|----|----------|-----------|----------|----------|----------|----------|------------|
| | | 허위 | 공모 | 임의 처리 | 가족간 거래 | 관리 미비 | 증빙 미비 | 업무 착오 | 중복 처리 | 행정조 치변경 |
| 수급자 | 기망 | ○ | ○ | ○ | ○ | | | | | |
| | 수급자오류 | | | | | ○ | ○ | ○ | ○ | |
| 행정 담당자 | 부패 | ○ | ○ | ○ | ○ | | | | | |
| | 행정오류 | | | | | ○ | ○ | ○ | ○ | ○ |

- 보통 행정담당자에서 발생하는 유형은 착오지급과 행정조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음. 위 표에서는 장해재판정, 이의제기 등 행정조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분류 구분이 없음.
- 예를 들어 이의제기의 결과로 행정조치가 변경되면 변경이전과 변경이후의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게 됨. 행정조치변경을 행정오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함

〈표 3-14〉 산재보험의 유형별 집계표 양식

| 유형 구분 |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분류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 행위 주체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간 공모 | | |
| |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 있음 | 공모(기망)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행정담당자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공급자 기망 | |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행정담당자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공모(기망)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있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행정담당자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있음 | 공모(부패)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 | 서비스 공급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공급자 오류 |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

주 1. 근로자, 사업주를 모두 서비스 수요자로 간주

2.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로 '서비스 수요자간 공모'를 추가

- 사업주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고, 일부의 경우 행위주체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구분하는 것이 애매할 수도 있어 사업주를 근로자와 함께 서비스수요자에 포함함.
*산재보험에서 서비스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의미함.
- 고의성, 비고의성은 배액징수와 원액징수를 기준으로, 공모여부는 연대책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 조사 시 담당자 확인 필요

제2절 공공부조

1. 제도 개요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시작된 (구)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제도로서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음
 -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되며, 동 합산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부합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보건복지부, 2019c)
 - 제도 변경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9년 기준 생계 및 의료급여에 적용되고 있으며,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기초법 12조의 2)
 -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수준을 지원받게 됨
 -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권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로 공표된 금액 혹은 보장수준을 의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이후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

2. 부정수급 유형

가.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는 부정·부적정 수급을 정의하고 있음.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의미(보건복지부, 2019c, p22, p274 이후)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임(협의 개념)
 - 상습적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부적정 수급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음
 - 부적정수급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 중에서 이미 신고된 자료의 변동(임금·재산 등 변화, 일용소득 발생 등)에 대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급여를 초과하여 받는 것을 의미
 - 단, 신규 취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 부정수급의 범주에는 수급자는 물론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등도 포함됨

나. 주거급여

- 주거급여법 제20조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도와주는 경우 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토교통부(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p200)
- 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대상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거급여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 내용과 규정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차이점은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 기관을 주거급여는 시군구 주거급여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국토교통부, 2019, p201)

다. 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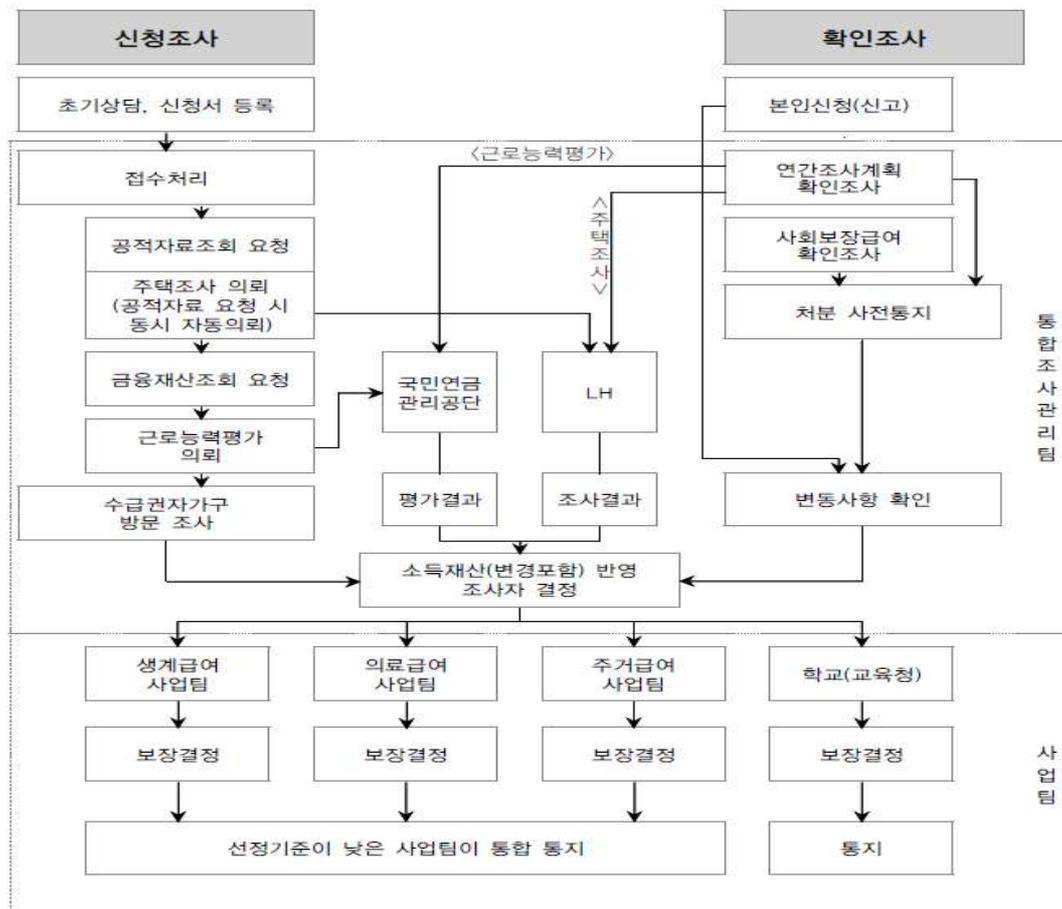
- 생계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부정·부적정 수급보다는 의료급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함
 -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르게 개인과 기관의 두가지 차원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
 - 개인의 경우 진료 이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함에도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방식,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됨
 - 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비를 중복 혹은 이중으로 처리하거나, 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 청구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됨
- 의료급여법 제15조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급여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첫째,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둘째,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서는 구상권, 환수 조치 등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3.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가. 전달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기 이전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맞춤형급여로 변경되면서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됨
- 즉, 급여가 분리됨에 따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가되는 형태를 가지게 됨(아래 그림 참조)

[그림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부(2019c),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 재인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속에서 읍면동, 시군구의 역할을 핵심으로 볼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9c, p9)
 - 읍면동은 초기 수급 신청자에 대한 상담·신청안내, 접수 등과 더불어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 대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일선의 접촉창구이면서 부정 및 부적정수급을 발굴하고 제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
 - 시군구의 업무는 두 개로 구분되어 통합조사와 급여종류별 보장팀으로 구분됨
 - 통합조사팀은 수급신청자의 자산조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담당. 사회복지전산망, 확인조사 업무 등을 통해 수급권자의 자격 변동 등을 관리
 - 급여종류별 보장팀은 자산조사 이후 각 급여별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이의신청, 부정수급 통보, 보장비용 징수 등 보장결정이후의 사후관리를 담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 및 주거 급여와 다르게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수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
 - 의료급여법 제9조와 제12조에 의해 의료급여 실시기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이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받을 자를 대상으로 당해 의료급여 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 의료급여 관련 기금관·운용, 의료급여 등에 대한 관리에 있어 시도 및 시군구청장이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필요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

나. 사후관리 체계 및 현황

1)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됨. 즉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정기적 확인조사, 수급자 신고·신청 등에 따른 급여별 자격 변화, 급여액·급여종류 변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이하, 보건복지부, 2019c, p259 이하 참조)
 - 사후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세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자 확인, 보장비용 징수 등이 수급자 사후관리 체계속에서 주요한 업무임

- 수급자격 변동 등의 확인 및 관리
 - 수급권자의 급여변화(급여종류, 급여액 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관리
 - 수급자 거주지(→기본재산액 등), 세대구성(→기준중위소득 등), 주거실태(→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기준중위소득, 급여 등에 영향)
 - 자격 변동 확인 방법
 - 수급자의 자진 신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 정기 및 확인조사 기간 수급자 가구 방문을 통한 확인
 - 수급자의 자격 상의 변화가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하며, 소득재산 등의 변화는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시스템에 반영
 - 부정수급 경험자, 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자동차 명의 도용 등 수급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위반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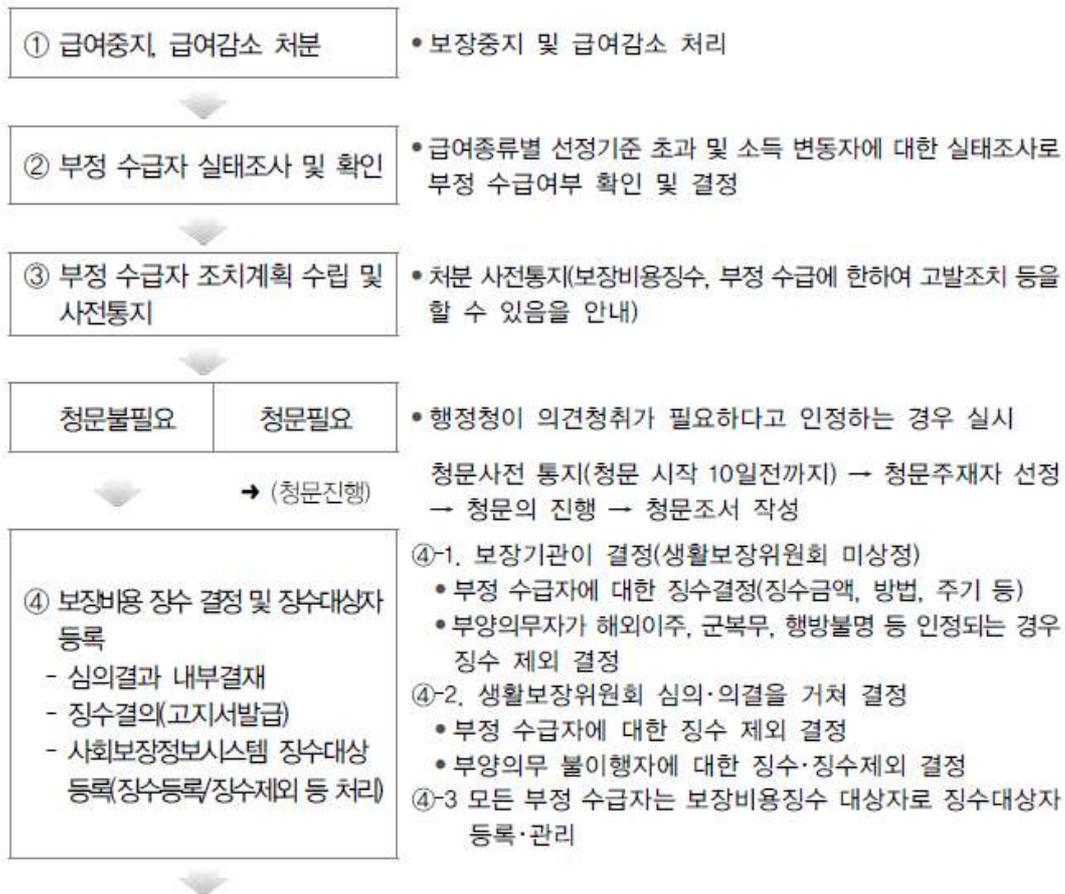
- 동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의 판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절차를 가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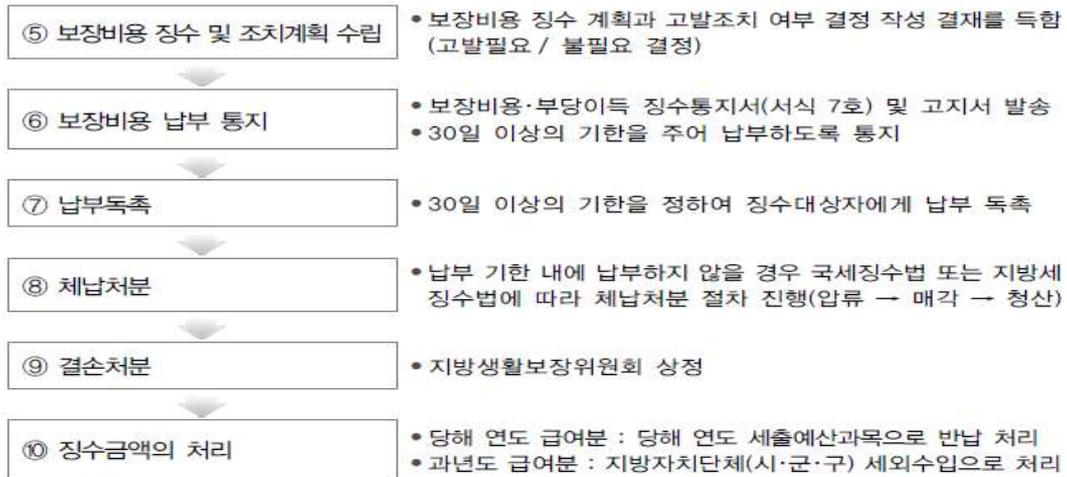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과정이 진행됨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부정수급액을 징수하게 됨.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함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누어 각각 징수하게 됨

[그림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9c),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77 재인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징수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있음
 - 보장비용징수 I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보장비용징수 II :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 (사전)급여지급 차감 :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차감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권한은 5년에 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시효에 의해 소멸됨(국가재정법 96조)
 - 속인수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반환청 권으로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남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수급자에 한정하며, 부양의무자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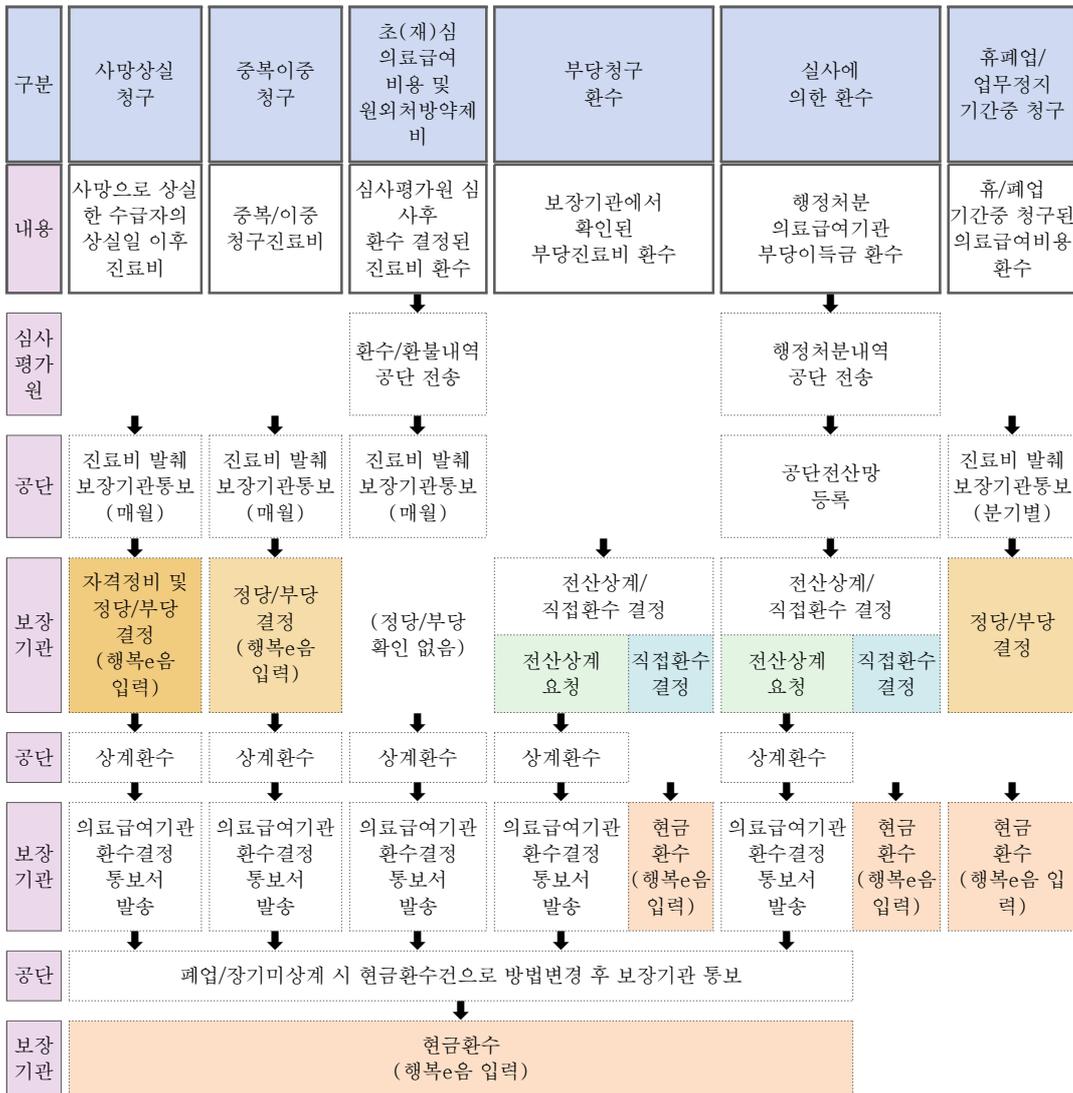
-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법49조에 의해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 미리 정한 기준에 미달해도 고의성이 있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비용징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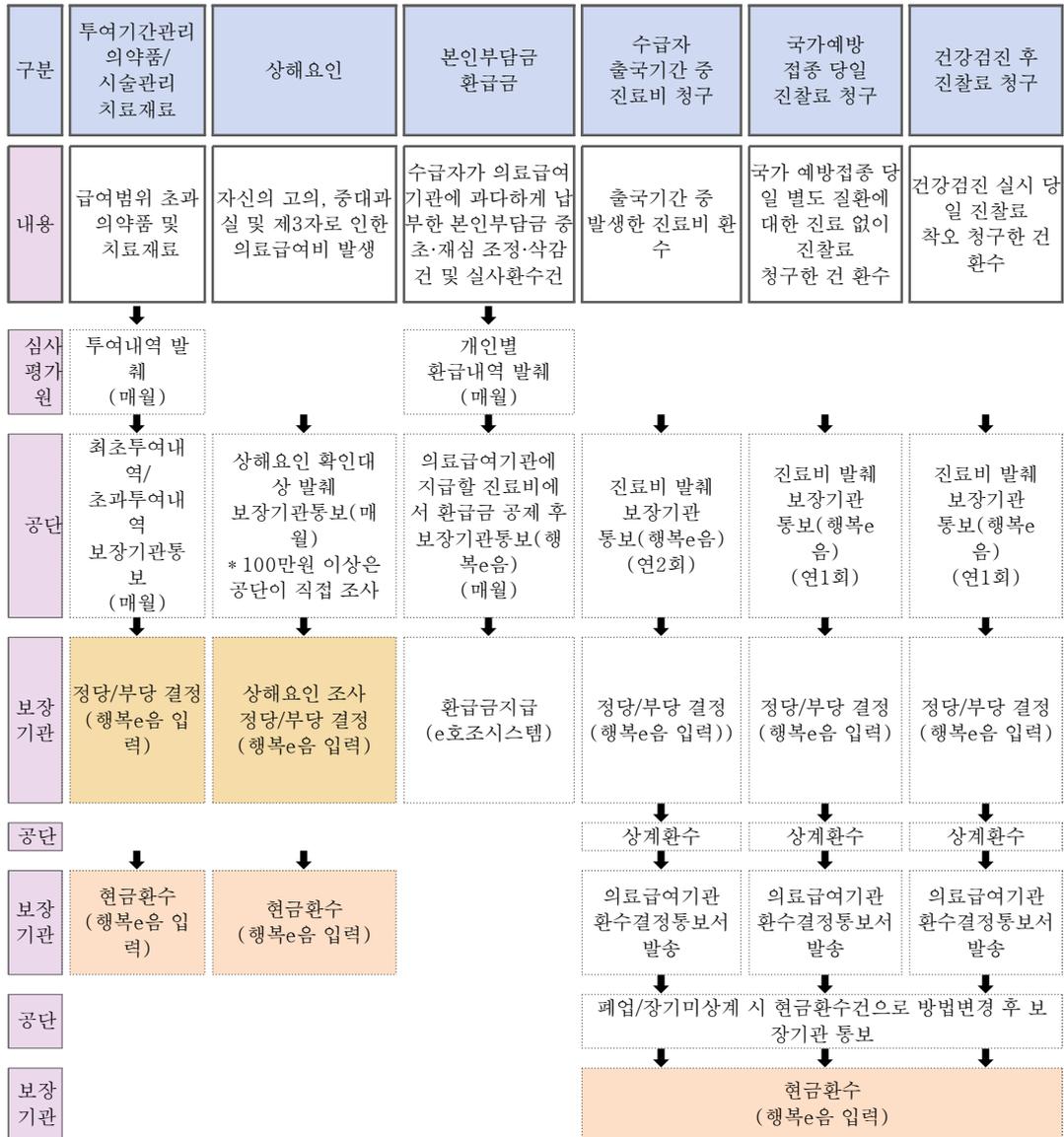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구상권 및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각 사유별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

[그림 3-6]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 일람





자료: 보건복지부(2019d), 의료급여사업안내, p336-337 재인용

3)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단계별로 추진 방안을 설정하여 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 이외에 주거급여 전담 기관을 통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수행

- 부정수급이 발굴시 보장비용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임대인은 모두 처벌 받도록 규정
 - 주거급여법 제24조를 통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 부정수급 방지 단계별 추진 방안

| | | |
|-------------|-------------|---|
| 단계별 추진방안 | 1. 수급자 선정단계 | ① 소득·재산(수급자·) 조사 철저 ② 소득·재산 공적자료 연계 강화 ③ 임대차 조사 등 주택조사 철저 ④ 임차료 검증 |
| | 2. 급여지급 단계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과의 중복 수혜 차단(향후 중복지원 검토중) ② 주거급여 목적 외 사용 차단 |
| | 3. 사후관리 단계 | ① 자격변동·상실 정보의 적기 반영(소득·재산, 거주지 변경, 임대차 관계 및 임차료 변경 사항 등) ②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시행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 ③ 월차임 연체 사항을 파악 ④ 보장비용 환수 및 처벌 |

자료: 국토교통부(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p207 재인용

4. 조사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행복e음과 재정정보원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와의 연계를 통해 고의성과 비고의성이 명시적 구분된 부정수급의 분류가 가능
- 부정수급과 부적정 수급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분하는 것도 가능
- 행위주체에 있어 행정담당자와 수급자 중 서비스 수요자만 존재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앞서 제시된 ‘유형화 1’(〈표 2-15〉 참조) 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행위주체에 있어 행정담당자와 수급자 중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가 모두 존재하는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앞서 제시된 ‘유형화 3’(〈표 2-17〉 참조) 적용

- '유형화 3'에 있어 '고의성 판단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
- 의료급여, 교육급여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서비스 공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서비스 공급자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활동(자활사업 참여 등)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받게 됨(조건부 수급)

- 자활사업의 경우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행위주체에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유형화 3'을 적용하거나 아래와 같은 '유형화 4'(<표 2-18> 참조)를 적용할 수 있음
-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분류 | |
|------|-------|----------|--------|----------------|----------------|
| | 행위 주체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공급자 기망 |
| | 행정담당자 | 없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부패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서비스 공급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공급자 오류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제3절 사회서비스

1. 제도 개요

□ 사회서비스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사회서비스 범위

- 사회서비스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이후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게 됨.
- 그러나 법적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 사회보장제도 구분에 따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모든 사업을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서비스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두 가지 기능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보장의 기능을 가지므로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demogrant) 성격의 현금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함.
 - 유사한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공공부조의 자활근로 등 사회보험, 공공부조 체계 내의 일부 사업은 서비스 보장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중앙부처 354개의 사업 중 사회서비스 사업 범위를 정한다면, 서비스 보장의 성격을 지니지만 사회보험, 공공부조 체계 내에게 운영되는 사업은 포함하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 보장 성격을 지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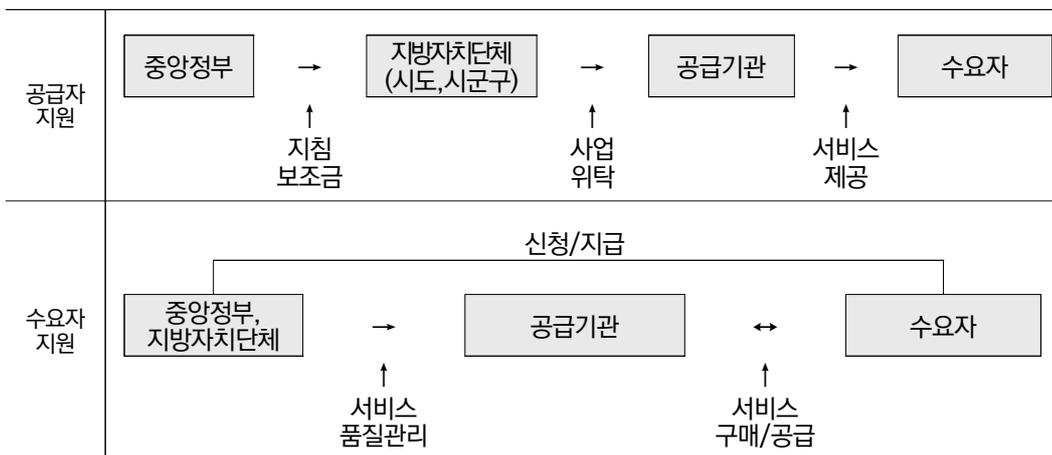
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서비스의 분류

○ 사회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2007년 전자바우처 도입을 기점으로, 재정 지원 방식에 따라 공급자 지원 방식, 수요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급자 지원방식은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표준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함.
 -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재정을 전달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표준 지침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들에 기관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탁하는 형태임.
- 수요자 지원방식은 정부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 개인에게 서비스 내용과 양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임.

[그림 3-7]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구분



○ 재정 지원 방식 및 급여 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됨.

- 수요자 지원방식은 주로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감면, 공급자 지원방식은 시설입소, 프로그램, 자원봉사의 형태로 급여가 제공됨.
- 단, 표에 제시한 바대로 지원방식에 따라 급여형태가 반드시 이원화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보조공학기기지원과 같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공급자)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음.

〈표 3-15〉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예시

| 구분 | 급여 지원형태 | 해당 사업 예시 |
|----------|---------|--|
| 수요자 지원방식 | 현금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 등 |
| | 현물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지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
| |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산림서비스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등 |
| | 대여/감면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지원, 교통시설이용지원 등 |
| 공급자 지원방식 | 시설입소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등 |
| | 프로그램 |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취업취약계층촉진사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WEE 클래스 상담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등 |
| | 자원봉사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등 |

자료: 2019년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 사회서비스는 분야, 대상, 기능 측면에서 이질성을 지닌 다종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제도로, 보장기관이 다양하여 사업별 전달체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별도로 정리하기 어려움.
- 사회서비스 사업의 전달체계는 보장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후관리 체계는 재정 지원 방식에 따라 간략히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현금, 현물, 대여/감면의 형태로 개인에게 재정이 지원되는 수요자 지원 사업은 수급권자가 명확한 사회보장급여로, 행복e음의 사후관리 체계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을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 공급자에게 시설입소,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재정이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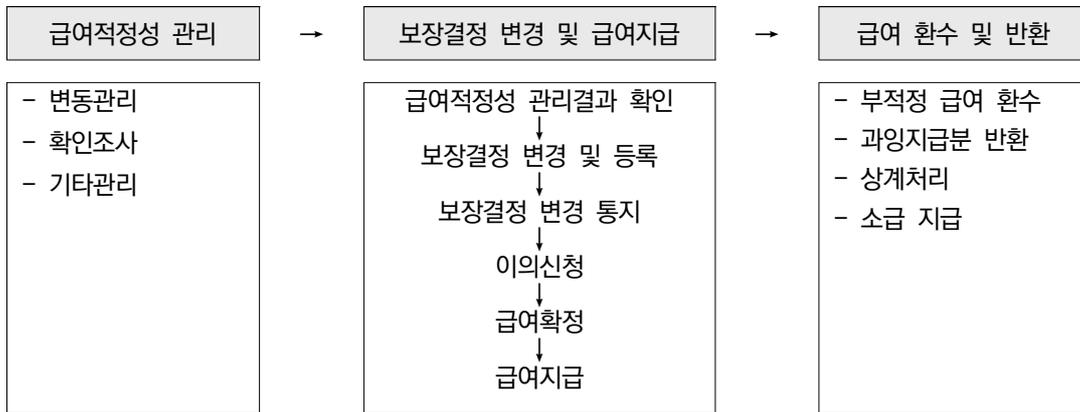
□ 수요자 지원 사업 사후관리 체계

- 행복e음으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통상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 업무 절차를 따름(보건복지부, 2019b).
 -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복지 사업군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로 현금과 현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등이 이에 해당
 -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는 수급자 가구의 변동사항을 확인·반영하고, 확인조사 등을 수행하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급여종류, 급여액이 적정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그림 3-8]과 같이 급여적정성 관리, 보장결정 변경 및 급여지급, 급여환수 및 반환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후관리 업무는 각 절차에 혼재되어 있음.
 - 사후관리는 변동관리, 확인조사, 기타관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변동관리) 거주지, 소득·재산, 가구구성, 가구원 정보 등 급여의 수급자격 및 종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
 - (확인조사) 수급자의 자격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기타관리)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의사무능력자, 사망의심자 등과

해당 급여의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역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

-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확인조사, 기타 관리 등은 조사담당 부서에서, 보장 결정 및 급여지급은 급여담당 및 급여지급 부서에서 수행함.

[그림 3-8]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업무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9b).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보건복지부, 201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에 해당함.
- 부정수급 점검 대상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임.
- 부정수급 관리 절차는 다음의 [그림 3-8]과 같은데, 청구비용 적정성 심사, 이상결제 모니터링, 전화 모니터링, 현장점검, 사회서비스 클린센터로 구분하여 관리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음.
- **(청구비용 적정성 심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지급 전에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함. 부정 의심 사례는 지급보류가 결정되며, 지급보류 대상은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이 의심되는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의 결제 건, 연

속심야결제 중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 건임. 지급보류가 결정되면 제공기관에서 시스템 로그인 시 알림메세지로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제공기관이 지급보류일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내에 적정,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

〈표 3-16〉 사업별 지급보류 대상 세부유형

| 구분 | 노인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 | 산모 신생아 | 가사간병 | 발달재활 | 언어발달 | 부모심리 | 지역사회 |
|--------|------|----------|--------|------|------|------|------|------|
| 해외출국 | ○ | ○ | ○ | ○ | ○ | ○ | ○ | ○ |
| 사망의심 | ○ | ○ | ○ | ○ | ○ | ○ | ○ | ○ |
| 연속결제* | ○ | ○ | - | ○ | - | - | - | - |
| 심야결제** | - | - | - | - | ○ | ○ | ○ | ○ |

주: * (연속결제) 시작, 종료시간으로 연속결제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회당 결제사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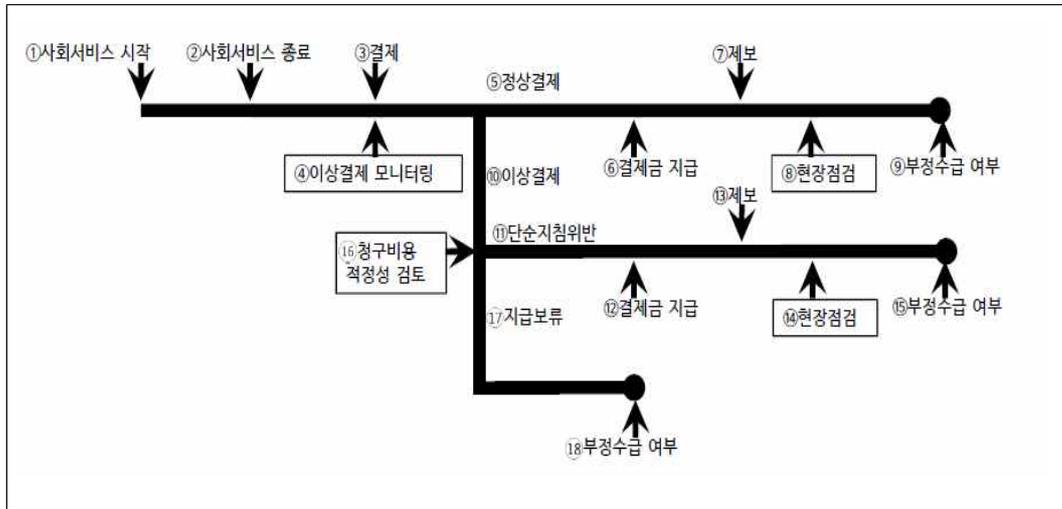
** (심야결제) 주로 제공기관에서 주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돌봄사업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

- **(이상결제 모니터링)** 전월 결제 건 중 이상결제 내역을 추출하고 선별된 정보를 시군구 현장점검 시에 활용
- **(실시간 전화 모니터링)** 이상결제 다빈도 기관,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최근 1년 간 현장점검,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화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됨. 정기점검은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민원접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 점검반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담당자를 반장으로 하고, 필요시 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를 포함함.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 시군구가 해당 제공기관에 환수 및 행정 처분 조치하며, 시군구는 처분사항을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시스템에 결과 등록
- **(사회서비스 클린센터)**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제

보,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 이행

[그림 3-9]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모니터링 절차



자료: 김영선. (2017). 사회복지서비스 이상결제 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7 발췌.

□ 공급자 지원 사업 사후관리 체계

- 공급자 지원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함.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후관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른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을 포함.
 - 동법 제42조(보조금 등)에 의거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거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관련 보조

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하며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임.

- 2018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 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관리함.

3. 부정수급 유형

□ 앞서 분류한 재정 지원 방식 및 사후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수요자 지원 사업 부정수급 유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유형은 보장비용징수 환수사유 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보장비용징수 환수사유 코드는 수급자 변동사항(거주지, 가구원,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주로 포함하므로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환수사유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1>과 같음.
- 그러나 보장비용징수 환수사유 코드를 통해 부정수급의 유형을 명확화 하는 것은 어려움.
 - 소득, 재산 변동에 의한 환수는 행정오류에 따른 부적정 수급이나 의도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환수코드 정보만으로는 불가함.
 - 고의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코드는 '사망',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 거주', '사실혼, 위장이혼 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임.

〈표 3-17〉 행복e음 환수사유 코드: 사회서비스 사업

|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 아동청소년복지 |
|---------------------|-----------------------|-------------|---------------|
| 세부사업유형 | 한부모아동양육비 | 장애인연금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
| | 한부모가족추가아동양육비 | 장애수당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한부모가족학용품비 | 장애아동수당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한부모가족자녀학비 | 장애인급여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 |
|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
| |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 아동급식지원 |
|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장애인검사비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
| | 청소년한부모가정생활보조금 | | |
| 청소년한부모학용품비 | | | |
| 환수사유코드 | 101 근로소득 | 좌동 | 좌동 |
| | 102 사업소득 | 좌동 | 좌동 |
| | 103 재산소득 | 좌동 | 좌동 |
| | 104 공적이전소득 | 좌동 | 좌동 |
| | 105 사적이전소득 | 좌동 | 좌동 |
| | 106 추정소득 | 좌동 | 좌동 |
| | 107 토지, 건물, 주택 | 좌동 | 좌동 |
| | 108 금융재산 | 좌동 | 좌동 |
| | 109 자동차 | 좌동 | 좌동 |
| | 110 임차보증금 | 좌동 | 좌동 |
| | 111 선박(항공기) | 좌동 | 좌동 |
| | 112 가축, 종묘 등의 동산 | 좌동 | 좌동 |
| | 113 회원권 | 좌동 | 좌동 |
| | 114 입주권 | 좌동 | 좌동 |
| | 115 분양권 | 좌동 | 좌동 |
| | 116 어업권 | 좌동 | 좌동 |
| | 117 입목재산 | 좌동 | 좌동 |
| | 119 소득재산변동 | 좌동 | 좌동 |
| | 201 사망 | 좌동 | 좌동 |
| | 202 교정시설 입소자 | 좌동 | 좌동 |
| | 203 군입대자 | 좌동 | 좌동 |
| | 204 장기해외체류(60, 90일 등) | 좌동 | 좌동 |
| | 205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 거주 | 좌동 | 좌동 |
| | 206 실종, 가출, 행방불명 | 좌동 | - |
| | 207 거주불명자 | 좌동 | 좌동 |
| | 208 사실혼, 위장이혼 등 | 좌동 | 좌동 |
| | 211 가구원 변동 | 좌동 | 좌동 |
| 213 시설입소자 | 좌동 | 좌동 | |
| 60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좌동 | 좌동 | |
| 999 기타 | 좌동 | 좌동 | |
| - | 214 연령초과 | 좌동 | |
| - | 215 장애정도변경 | - | |
| - | 216 난민인정취소 | - | |
| - | 217 주민등록번호정정 | - | |

|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 아동청소년복지 |
|--|-------|----------------|---------|
| | - | 701 신청자격이 없는 자 | - |
| | - | 801 보장 및 자격 변동 | -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사업

- 전자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코드는 행정처분 코드로 크게 대분류와 소분류로 구성됨.
 - 대분류는 부정결제, 자격(기준)위반, 기타 지침위반, 주의, 이상없음으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따른 소분류 코드는 <표 3-17>에 제시됨.
 - 그러나 소분류 코드만으로 부정수급 행위주체와 의도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바우처 사업별 관리지침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행위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표 3-18> 전자바우처 지자체 처분 결과 등록 시 위반구분

| 대분류 | 소분류 |
|----------|-----------------|
| 부정결제 | 허위청구 |
| | 초과청구 |
| | 타인이용권사용 |
| | 카드양도/매매 |
| | 담합 |
| 자격(기준)위반 | 등록기준위반 |
| | 친인척결제 |
| | 입원 중 결제 |
| | 자격위반 |
| | 교육미이수 |
| 기타 지침위반 | 제공기록관리위반 |
| | 본인부담금 감면 등 이익제공 |
| | 결제원칙 위반 |
| | 카드(정보)소지 |
| | 기타 |
| 주의 | 주의 |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 공급자 지원 사업 부정수급 유형

- 공급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유형 코드 확인은 불가능함.
-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유형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여, 법령, 지침 및 법인 정관 등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시설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보고하나, 부정수급 유형 구분은 불명확함.
 - <표 3-18>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정수급 유형을 시설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공급자 지원 사업은 국가, 지자체,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수요자로 이어지는 하향식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부정행위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인력,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3-19>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유형

| 시설유형 | 부정수급 유형 |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 미분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부적정 법인시설의 후원금 집행 부적정 |
| 어린이집 |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 청구 시간 연장 보육료 과잉 청구 종사자 허위 등록 후생경비 부당 집행 |
| 아동복지시설 |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집행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 장애인복지시설 |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집행 입소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부적정 |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부당집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집행 부적정 |

자료: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조사방향 및 조사지표

□ 실태조사 대상 사업 범위 검토

- 사업별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권자가 개인 또는 가구로 분명한 수요자 지원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나, 기관운영비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공급자 지원 사업은 부정수급 실태가 사업 단위로 명확히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면, 노숙자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개별 사업의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공급자, 행정담당자 등 행위주체에 의한 부정행위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수요자 지원 사업을 우선적 대상으로 고려하되, 공급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조사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조사 범위 확정 필요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조사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관리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선제적 파악 후 조사 범위 확정

□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

- 수요자 지원 사업에 실태조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와 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부정수급 실태를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수요자 지원 사업은 보육료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등으로 바우처 형태의 급여가 다수를 차지함.

- 2018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지급액)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 약 1조 122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약 2228억 원, 발달재활서비스가 약 1056억 원이 지출되고 있음.
- 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약 28만 명, 4,657개소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약 8만 4천 명, 939개소)과 비교하면 각각 3.3배, 4.9배 많은 수준임.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제공 유형(1:1 서비스, 1:다 서비스)에 기인함.

○ 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또한 증가하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공급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민간 영리기관이 대거 바우처 시장으로 진입함에 따라 이용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대납, 과다 청구, 허위 결제, 담합 등 행위주체들 사이의 다양한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표 3-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2018년 기준)

| 사업명 | 정부지원금 지급액 (백만원) | 이용자 (백명) | 제공기관 (개소) | 제공인력 (명)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28,619 | 495 | 2,129 | 334 |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640 | 14 | 685 | 15 |
| 장애인활동지원 | 1,122,187 | 840 | 939 | 831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75,749 | 979 | 837 | 170 |
| 가사간병방문지원 | 24,590 | 88 | 433 | 54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222,829 | 2,801 | 4,657 | 172 |
| 발달재활서비스 | 105,583 | 683 | 1,975 | 124 |
| 언어발달지원 | 835 | 5 | 171 | 3 |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 700 | 7 | 185 | 3 |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통계.

- 2018년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자료를 통해 선정한 의심기관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부정수급 적

발금액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인 것으로 나타남(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2018).

〈표 3-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점검 결과

| 사업명 | 점검대상 | | 적발건수 | | 적발금액 | |
|-------------|------|-------|--------|-------|-------|-------|
| | 개 | % | 건 | % | 백만원 | % |
| 노인돌봄서비스 | 26 | 5.9 | 1,687 | 8.7 | 27.1 | 6.9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22 | 5.0 | 1,774 | 9.2 | 21.5 | 5.5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57 | 13.0 | 6,919 | 35.8 | 170.4 | 43.2 |
| 가사간병방문지원 | 3 | 0.7 | 58 | 0.3 | 0.4 | 0.1 |
| 장애인활동지원 | 274 | 62.4 | 7,476 | 38.7 | 172.0 | 43.6 |
| 발달재활서비스 | 52 | 11.8 | 1,364 | 7.1 | 1.5 | 0.4 |
| 언어발달지원 | 3 | 0.7 | - | - | - | - |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 2 | 0.5 | 28 | 0.1 | 1.1 | 0.3 |
| 합계 | 439 | 100.0 | 19,306 | 100.0 | 394.1 | 100.0 |

자료: 국무조정실. (2018. 8. 22.). 바우처 운용 실태점검.

□ 조사대상

- 실태조사 대상은 사업별 행정담당자로, 보장기관 및 사후관리기관 특성에 따라 ① 중앙정부, ② 지자체, ③ 위탁기관(공공/민간기관)으로 구분됨.
 - ① 중앙정부: 정부부처(청) 또는 정부(직영)기관
 - ②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③ 위탁기관: 정부 분류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기간 위탁이나 지정 등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나 영리·비영리기관

□ 관리실태 조사지표

- 사업 일반 특성
 - 재정 지원 방식: 수요자 지원, 공급자 지원
 - 급여형태: 현금, 현물, 대여/감면, 바우처,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 부정수급 관리 여부
-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발생 현황

- 세부유형별 부정수급 발생 건수
- 행정처분 발생 건수: 환수, 과태료부과, 등록/지정 취소, 경고, 영업정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 부정수급 관리조직: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 부정수급 전산시스템의 활용: 시스템 활용 여부, 해당 시스템명
- 부정수급 점검 실태: 점검 횟수, 주기

○ 부정수급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부정수급 정보 활용
- 예방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부정수급 집계표

○ 사회서비스 사업별 부정수급 집계표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관리단이 분류하고 있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집계표 양식을 따르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부정수급 코드와 연계되도록 구성함.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는 <표 3-16>과 같이 행위주체(수급자, 행정담당자)에 따라 대분류 4종(기망, 수급자 오류, 부패, 행정오류), 중분류 9종(허위, 공모, 임의처리, 가족간거래, 관리미비, 증빙미비, 업무착오, 중복처리)로 구성됨.
- 다만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두 시스템에 입력되는 부정수급 코드만으로는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실제적으로는 동일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3-22〉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국고보조금관리단)

| 구분 (행위주체) | 대분류 (4종) | 중분류 (9종) | | | | | | | |
|--------------|-------------|----------|----|----------|-----------|----------|----------|----------|----------|
| | | 허위 | 공모 | 임의 처리 | 가족간 거래 | 관리 미비 | 증빙 미비 | 업무 착오 | 중복 처리 |
| 수급자 | 기망 | ○ | ○ | ○ | ○ | | | | |
| | 수급자오류 | | | | | ○ | ○ | ○ | ○ |
| 행정 담당자 | 부패 | ○ | ○ | ○ | ○ | | | | |
| | 행정오류 | | | | | ○ | ○ | ○ |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의 부정수급 집계표

〈표 3-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부정수급 집계표

| 환수코드 | 행위주체 | 대분류 | 중분류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수급자 | 기망 | 허위 | |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수급자 | 기망, 행정오류 | 허위, 관리미비 | | |
| 인적사항 변동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수급자, 행정담당자 | 기망, 행정오류 | 허위, 관리미비 | |
| | 사망 | 수급자, 행정담당자 | 기망, 행정오류 | 허위, 관리미비 | |
| | 사실혼, 위장이혼 등 | 수급자 | 기망 | 허위 | |
| | 장기해외체류(60, 90일등) | 수급자, 행정담당자 | 기망, 행정오류 | 허위, 관리미비 | |
| | 실종, 가출, 행방불명 | 행정담당자 | 행정오류 | 관리미비 | |
| | 교정시설 입소자, 군입대자, 시설입소자 | 행정담당자 | 행정오류 | 관리미비 | |
| | 연령초과, 난민인정 취소 | 행정담당자 | 행정오류 | 관리미비 | |
| | 보장 및 자격변동 | 행정담당자 | 행정오류 | 착오, 관리미비 | |
| 소득재산 변동 (환수사유코드 101-119) | 수급자, 행정담당자 | 기망, 수급자오류, 행정오류 | 허위, 관리미비, 착오 | | |
| 기타변동 | 장애정도 변경 | 수급자, 행정담당자 | 기망, 수급자오류, 행정오류 | 허위, 관리미비, 착오 | |
| | 주민등록번호정정 | 행정담당자 | 행정오류 | 관리미비 | |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사업의 부정수급 집계표

- 부정행위의 주체는 수급자(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로 볼 수 있음.

〈표 3-2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사업 부정수급 집계표

| 유형 | 항목 | 행위주체 | 대분류 | 중분류 | 건수 | 금액 (백만원) |
|-----------|-----------------|-----------|-----|----------|----|-------------|
| 부정결제 | 허위청구 | 기관-인력 | 기망 | 허위 | | |
| | 초과청구 | 기관-인력 | 기망 | 허위 | | |
| | 타인이용권사용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 | 카드양도/매매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 | 담합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 자격(기준) 위반 | 등록기준 위반 | 기관 | 부패 | 관리미비 | | |
| | 친인척결제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가족간 거래 | | |
| | 입원 중 결제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 | 자격위반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 | 교육미이수 | 기관-인력 | 부패 | 관리미비 | | |
| 기타 지침 위반 | 제공기록 관리 위반 | 기관-인력 | 부패 | 허위, 관리미비 | | |
| | 본인부담금 감면 등 이익제공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 | 결제원칙 위반 | 기관-인력 | 기망 | 허위, 임의처리 | | |
| | 카드(정보) 소지 | 기관-인력-이용자 | 기망 | 공모 | | |

제4절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1. 개요

-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규모 파악을 위한 집계조사와 사회보장급여별 사후 관리 실태를 파악과 사회보장급여 관리기관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표 조사의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실태조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제도별 구분하여 파악한 내용들인데, 해당 제도 중에는 부정수급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존재함
 -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강한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선정한 후 이들 급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함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급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임
- 본연구의 제1장 제3절에서는 ‘e나라도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등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주요 대책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등)의 부정수급 관리는 본 절에서 별도로 파악하였음.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가. 개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은 2010년 사회보장사업 업무처리 효율화와 복지급여 이력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음(함영진 외, 201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복e음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이며, 범정부는 범부처 복지사업의 전자적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 행복e음의 주요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이며,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지급, 사후관리에 활용되고 있고, 범정부 시스템은 각 범부처 복지급여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및 연계하여 처리 또는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임.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그리고 이력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득, 인적정보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정보수집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복지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복지급여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발굴, 복지급여 및 자원연계 등 수요자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복지행정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복지재정의 투명한 집행 그리고 복지급여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핵심 역할 기능임.
 -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한 복지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복지대상자의 적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여러 핵심 기능 중에서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급여 업무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지재정의 부적정 집행을 사후적으로 처리 및 관리기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부적정 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능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오윤섭 외, 2016).
- 사전예방 기능은 부적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하는 기능으로, 복지급여 신청과정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의심사항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적용

되는 '급여 미생성 처리' 기능, 유사중복 급여 원천 차단을 위한 '복지급여 지침' 기능 등이 있음.

- 사후관리 기능으로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된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항목을 파악하는 확인조사 기능과 사망자에게 급여집행을 차단할 수 있는 사망의심자 HUB 기능이 있음.
 - 확인조사는 인적, 소득, 재산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사업별 복지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급자가 복지급여의 수급을 지속하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행정행위임.
 - 이는 확인조사 계획수립 → 조사가구 정비 →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자료 연계 및 확인 → 보장 결정 변경(급여변경, 중지, 환수, 반환, 상계 처리, 소급 지급 과정을 거침
 - 이를 통해 2010년 이후 2017년 6월 까지 보장중지 조치 182만 명, 누적 재정절감 추정액은 약4조 원에 이룸.
- 물론 사전예방 기능과 사후관리 기능이 시스템적으로 확연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복지급여를 받기 전에 사전적으로 부적정 급여를 차단하는 기능과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나. 부적정 수급방지 방식: 확인조사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급여수급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기능임(장영미 외, 2013).
- 확인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연계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 23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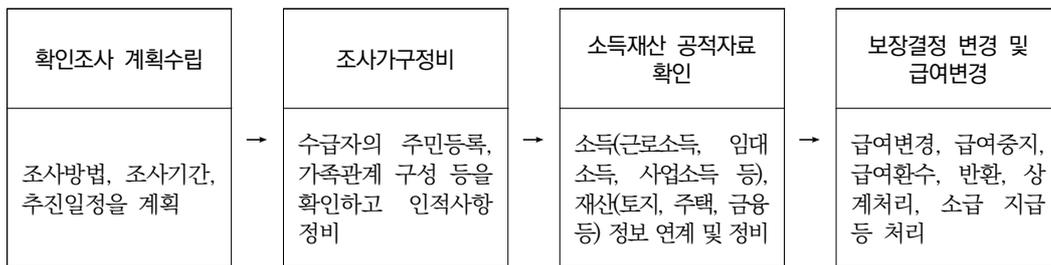
정보,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신청,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

- 이와 같은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연계 및 활용 개요



□ 확인조사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사업은 소득대상자(약 1,000만 명)를 대상으로 연 2회(4,10월) 정기 확인 조사와 연 6회(1, 2, 3, 7, 8, 9월) 월별 확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연 2회 실시되는 정기조사에서는 76종의 공적 자료 및 금융재산자료가 갱신되어 활용되며, 연 6회 실시되는 월별 조사에서는 8종의 자료가 갱신되어 이용
- 확인조사에 의하여 보장 결정 변경 및 급여 변경이 있을 시에는 수급자에게 권리구제 권한과 절차를 부여하고 있음(장영미 외, 2012`3).

다. 부적정 수급방지 정보관리 체계

- 행복e음을 통한 확인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항목은 소득, 재산, 인적 그리고 자격관련 정보로 구분됨.
 - 소득 관련 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산소득,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음.
 - 재산 관련 정보는 가축, 종묘 등의 동산,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분양권, 선박(항공기), 어업권,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입주권, 자동차, 토지, 건물, 주택, 회원권으로 구분됨.
 - 인적 관련 정보는 가구원변동, 교정시설 입소자,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군입대자, 난민인정취소, 사망, 사실혼, 위장이혼, 시설입소자, 실종가출, 연령초과, 외국인배우자 국내체류 2년 경과, 장기해외체류(60일, 90일 등), 장애정도 변경, 주거지 변동,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이 있음.
 - 자격 및 기타 정보는 거주불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수급 경력, 기초생활수급책정, 보장 및 자격변동 여부, 소득인정액기준 초과, 소득재산 변동, 신청자격이 없는 자, 직권등록 등으로 구분됨.
- 부정수급 유형화는 고의성 여부,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
 - 대분류 : 부정수급의 고의성에 따라 ‘고의성’, ‘비고의성’으로 구분

○ 증분류 : 고의성 여부와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로 구분

| 대분류 | 증분류 |
|------------------------|--|
| 고의성 여부 : ① 고의성, ② 비고의성 | 고의성, 수급자 : ① 기망 고의성, 행정담당자 : ② 부패 고의성, 수급자와 행정담당자 : ② 부패(공모) 비고의성, 수급자 : ③ 수급자 오류 비고의성, 행정담당자 : ④ 행정오류 |

자료 : 2017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p.170), World Bank (2010.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공적자료 원칙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자의 고의성과 부패 또는 공모 형태의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기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인적정보 6개 항목과 자격 및 기타항목 2개 항목, 총 8개 항목에서 나타날 수 있음.

○ 한편, 비고의성을 가진 ‘행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행복e음은 공적자료로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적자료의 속성 상 시차의 오류 등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 때문에 확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면밀히 언급하면 ‘행정오류’라기 보다는 정보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행정 현상으로 이해 가능함.
- 이러한 행정오류는 소득관련 7개 정보, 재산관련 13개 정보, 인적관련 10개 정보, 자격 및 기타관련 6개 정보에서 나타날 수 있음.

〈표 3-25〉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 기망 | | | 행정오류 | | | | | 총합계 |
|------|-------|---------|----|------|-------|---------|----|----|-----|
| | 인적 정보 | 자격 및 기타 | 소계 | 소득 | 인적 정보 | 자격 및 기타 | 재산 | 소계 | |
| 고의성 | 6 | 2 | 8 | | | | | | 8 |
| 비고의성 | | | | 7 | 10 | 6 | 13 | 36 | 36 |
| 총합계 | 6 | 2 | 8 | 7 | 10 | 6 | 13 | 36 | 44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확인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부정수급 유형화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의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변동,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사망자 수급, 사실이혼, 사실혼 등으로 구분됨.

〈표 3-26〉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고의성인 경우

| 확인조사 정보 항목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가구원변동 | 고의 | 기망 | 인적 |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고의 | 기망 | 자격 및 기타 |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고의 | 기망 | 인적 |
| 사망 | 고의 | 기망 | 인적 |
| 사실이혼, 사실혼 | 고의 | 기망 | 인적 |
| 사실혼, 위장이혼 등 | 고의 | 기망 | 인적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고의 | 기망 | 자격 및 기타 |
| 장기해외체류(60, 90일등) | 고의 | 기망 | 인적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고의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오류의 성격이 강하며, 소득과 재산, 인적 정보, 자격정보 관련 정보에서 나타남.

○ 이는 확인조사의 원칙이 공적자료,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공적자료에 근거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보의 오류 또는 시차에 따른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보 관련 부적정 원인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표 3-27〉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비고의성인 경우

| 확인조사 정보 항목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거주불명자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자격 및 기타 |
| 공적이전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교정시설 입소자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군입대자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근로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금융재산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기초생활수급책정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자격 및 기타 |
| 난민인정취소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보장 및 자격변동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자격 및 기타 |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부양의무자 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부양의무자 재산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분양권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사업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사적이전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선박(항공기)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초과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자격 및 기타 |
| 소득재산 변동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자격 및 기타 |
| 시설입소자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실종, 가출, 행방불명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어업권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연령초과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외국인배우자 국내체류 2년경과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입차보증금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입목재산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입주권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자동차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장애정도변경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재산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주거지변동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주민등록번호정정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인적정보 |
| 직권등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자격 및 기타 |
| 추정소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소득 |
| 토지, 건물, 주택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 회원권 | 비고의성 | 행정오류 | 재산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가. 개요

-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컫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임¹⁶⁾

□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7대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7개영역(상당,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 참여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칭함(박세경 외, 2016).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를 전자화 하여 제공하는 방식(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으로, 서비스의 신청, 이용, 비용지불 및 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의미함(조현승 외, 201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과 현황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창출의 한계,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
- 일반적으로 전자바우처 하에서는 종이 바우처일 때 보다 부정사례가 발생할

1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1)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비 가시적인 많은 수기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종이 바우처와 달리, 전자바우처는 그 집행과정이 전자상으로 기록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시성은 부정 사례를 추적하는데 있어 매우 큰 장점이 되기 때문임(이재원, 2012).

- 즉, 전자바우처의 가시성으로 인하여 전자바우처를 유용하기가 종이 바우처보다 어려워지고, 아울러 부정한 사용이 있다고 해도 종이 바우처보다 더 수월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전자바우처 하에서 부정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확보, 정보의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가 추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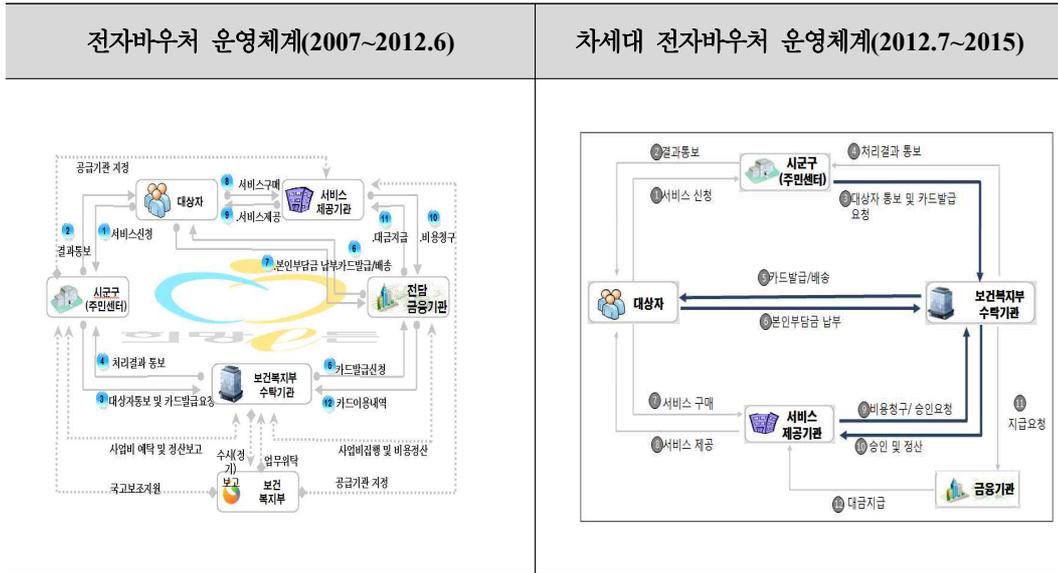
- 전자바우처는 지원방식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됨



| 구분 | 공급기관 지원방식 | 수요자 지원방식 |
|--------|-----------------------|------------------------|
|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 지원 | 일부 본인부담 |
| 서비스 시간 |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
| 공급기관 | 단일 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 특징 | 확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나. 사회서비스 부적정 이용관리

- 사회서비스의 모니터링의 목적은 ①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품질관리, ② 부정사용 방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품질관리 측면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각종 사업 근거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품질 관리 과정(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절차,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점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8b)

〈표 3-287〉 사회복지부문 법령상의 품질관리 유관내용

| 부문 | 주요 범위 | 방법 | 주체 |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품질기준 설정, 질 평가 | •품질관리 업무 내용, 방법, 절차는 시행규칙에 제시 •3년1회 평가 •평가시 고려사항: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도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전문기관단체 위탁 -사회보장정보원 주관 평가자문단, 현장평가단 구성 |
| 사회복지사업법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정기 시설평가, 결과 공표·시설감독지원에 반영, 거주자 타 시설 이동 | •3년 1회 이상 평가 •평가기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위탁)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급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 실시 •평가내용: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장기요양 기관 급여제공 과정,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등 | •공단 |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활동지원급여내용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 •평가내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만족도,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단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평가 3년마다 실시(의료기관 인증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같음 가능), 평가결과 공개 |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 실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 •평가결과 고지, 이의신청등 규정 | •관계기관, 단체에 위탁 -정신보건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지원단·지방지원단, 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시설 갖춘 비영리법인 |
| 영유아보육 | •어린이집 신청에 따른 평가인증 실시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평가인증 필요사항 결정 •평가지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영유아간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평가인증업무를 공공·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 •2011년 한국보육진흥원 |

- 부정 사용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의 부정사용(이용권법 제 19조 제7항 ‘거짓이 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및 고의로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을 적발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련의 점검
 -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모니터링 관련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7항(제공자의 준수사항), 제35조(벌칙)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0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부적정 관리 유형은 부정결제, 자격위반 그리고 기타 지침위반으로 구분됨.
 - 부정결제는 허위청구, 초과청구, 타인이용권사용, 카드양도, 담합으로 구분됨.
 - 자격위반은 등록기준위반, 친인척결제, 입원 중 결제, 자격위반, 교육 미이수 등으로 구분됨.
 - 지침위반은 제공기록 관리 위반, 본인부담금 감면, 결제원칙 위반, 카드 소지로 구분됨.
 - 부정수급 유형화 기준인 고의성과 비고의성 그리고 기망, 부패, 오류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인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그리고 이용자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 부적정 이용의 3대 유형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됨.
 - 부정결제 관련 허위청구, 초과청구, 카드양도, 담합은 고의성이 있으며, 부패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이용권사용은 고의성이 있으며 기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자격(기준) 위반 관련 등록기준위반, 자격위반, 교육미이수는 고의성이 있으며 부패로 구분될 수 있고, 친인척이용 및 입원 중 결제는 고의성이 있으면서 기망으로 구분됨.

- 기타 지침위반 항목인 제공기록 관리 위반, 본인부담금 감면, 결제원칙, 카드 소지 등은 고의성이 있으면서 부패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적정 이용유형

| 유형 | 항목 | 대분류 | 중분류 | 관련 주체 |
|-----------|-----------------|-----|-----|-----------|
| 부정결제 | 허위청구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초과청구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타인이용권사용 | 고의 | 기망 | 기관-인력-이용자 |
| | 카드양도/매매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이용자 |
| | 담합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이용자 |
| 자격(기준) 위반 | 등록기준 위반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친인척결제 | 고의 | 기망 | 기관-인력-이용자 |
| | 입원 중 결제 | 고의 | 기망 | 기관-인력-이용자 |
| | 자격위반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교육미이수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기타 지침위반 | 제공기록 관리 위반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본인부담금 감면 등 이익제공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결제원칙 위반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 |
| | 카드(정보) 소지 | 고의 | 부패 | 기관-인력-이용자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허위청구 :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 A 이용자는 월 4회 서비스 중 2회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2회는 급한 일이 생겨 추후 보강하기로 하고 4회분에 대해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음
 - B 이용자의 바우처는 모두 결제 되었으나 서비스 제공기록지 미작성 등 제공 인력 급여내역이 없었음
 - 초과청구 : 제공인력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 A 제공기관은 주3회, 90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주2회 120분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변경하여 서비스 제공 및 결제를 실시함
 - B 이용자는 1회당 서비스 결제 금액이 40,000원 임에도 제공인력이 50,000으로 바우처를 결제함
- 담합 : 제공인력(기관)과 이용자가 담합하여 서비스 이용권 결제
- A 제공기관은 B 이용자의 부모와 담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 후 일부 금액을 B 이용자 부모에게 지급
- 카드소지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함
-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카드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제공인력(기관)에서 D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심야시간대에 결제하는 경우
- 카드 양도·매매 :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양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 A 이용자는 체험학습서비스를 신청, 체험학습 당일 몸이 아파서 형이 대신 서비스를 이용
 - B 이용자는 안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 딸이 엄마대신 서비스 이용
- 친인척 결제 :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인이 제공인력인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제공기관 모르게 제공인력이 가족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A와 B는 동일한 서비스 이용자이고 두 엄마는 모두 제공인력으로 활동, 서로 자녀의 바우처 카드를 바꿔서 바우처 결제 시행
- 제공인력 자격위반 : 제공기관에서 허위의 제공인력을 등록하거나, 미자격자를

등록한 후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보유하고 허위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 A 이용자는 서비스를 여자에게 제공받고 있는데, 결제된 제공인력은 남자였음

○ B 제공인력은 자격기준에 미달됨에도 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 기타 : 제공기관은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용자 부담비용 감면 행위 금지

○ A 제공기관은 B 제공기관의 이용자를 자신의 기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함

○ B 이용자들이 자기기관(B 제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홍보 실시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가. 개요¹⁷⁾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은 보육료지원형식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부모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2009년에 구축됨

○ 보육료 전자바우처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시설에서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는 형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운영 중임

□ 부모지원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 행정기관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 부모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검색 및 시설 정보 제공

17)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참조

- 보육 및 육아정보 안내
 - 아이행복카드 사용내역 조회
 - 보모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보육시설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소통을 위해 활용
- 어린이집 정보공시, 누리과정 연수신청 등의 교육관리
 - 어린이집 운영(수납액 및 기타 경비 관리, 반편성 및 운영, 아동 출결관리 등) 전반에 대한 관리
 -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 관리, 정부보조금의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바우처 미적용) 등의 신청
 -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안전공제회 가입관리, 평가인증 관리, 시간제 보육 및 입소대기 관리
- 바우처지원시스템
- 바우처 대상 관리
 - 바우처 사용 통계관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 행정기관지원시스템
- 아동·어린이집 정보 승인 관리
 - 어린이집 서비스질 관리 기능 지원 (평가인증)
 - 지역보육비 수납 한도액 관리

나. 부정수급 관리 및 한계¹⁸⁾

□ 기존의 보육료 지원체계에서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리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

18) 이재원, 양기용, 서재호, 김준현 (2011), 전자바우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보육료 아이사랑카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제 2권 (2011.6), pp.39-76, 보건복지부 (2018a).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고안건) 참조로 작성됨

루어졌으나 이용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의 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의 부정행위 가능성 발생

-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 간 공모에 의한 보육바우처 부정사용 가능성이 대두됨
 - 보육료 지원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료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업무 담당,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모두 보육시설과 시설장에 대한 벌칙과 제재로 이용자에 대한 벌칙과 제재 미비 (이재원 외, 2011)
- 어린이집의 회계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매월, 회계연도 결산) 보고(보건복지부, 2018a)
-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처리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어 보고
 - 서울시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서울시 자체 회계시스템으로 회계처리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보고
-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는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 하여 점검 대상 선정(보건복지부, 2018a)
-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2018년 현재 43개 유형 모니터링 중
 -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한 경우
 -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경우,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경우
 -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경우
 -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경우 등

〈표 3-30〉 사전 모니터링 유형(43종)

| 연번 | 모니터링 유형 | 비고 |
|----|------------------------------------|-------|
| 1 | 한명의 대표자가 2개이상 어린이집 소유현황 | '12년도 |
| 2 |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 |
| 3 | 종일보육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현황 | |
| 4 | 시간연장(휴일)보육을 과다 이용한 아동현황 | |
| 5 | 12개월이하 아동이 형제(자매)재원현황 | |
| 6 |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현황 | |
| 7 | 심야시간대(0시~6시) 방문결재 발생 어린이집 | |
| 8 | 생후 90일 이전 아동 어린이집 재원현황 | |
| 9 | 대표자 빈번 변경 현황 | |
| 10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 준수현황 | '13년도 |
| 11 | 월별 휴일수를 모두 이용하는 아동현황 | |
| 12 |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 |
| 13 | 어린이집 소유 다변 대표자 현황 | |
| 14 | 남자 보육교사 현황 | |
| 15 | 고령의 보육교직원 현황 | |
| 16 | 지도점검 미 실시 어린이집현황 | |
| 17 |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 거주 아동현황 | |
| 18 | 집단급식소 대상 어린이집 현황 | |
| 19 | 미신고 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현황 | |
| 20 | 보육료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이상 지출 어린이집현황 | |
| 21 |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 | |
| 22 |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 |
| 23 | 해외체류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직원 현황 | |
| 24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 |
| 25 | 사망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 | |
| 26 |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 |
| 27 |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 '14년도 |
| 28 |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 |
| 29 | 급여 대비 퇴직금 적립 현황 | |
| 30 |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 |
| 31 |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기본보육료) | |
| 32 | 보육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현황 | |
| 33 | 어린이집 내 가족관계 현황 | |
| 34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 | '15년도 |
| 35 | 사망의심 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현황 | |
| 36 |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 |
| 37 | 아동 건강검진 현황 | |
| 38 |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 |
| 39 | 긴급보육바우처 과다이용 아동 현황 | '16년도 |
| 40 | 1(one) 카드 6건 이상 다수아동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 '17년도 |
| 41 | 다량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한 어린이집 | |
| 42 | 다량으로 결제취소 발생 및 재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 |
| 43 | 21시~00시(취약시간) 단말기를 통한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 |

자료: 보건복지부(2018a).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고안건). p10.

- 복지부에서 의심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자동추출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점검 (정기점검, 특별(기획)점검, 수시(긴급)점검)
- 심각한 부정 의심기관(신문고에 위반사실 제기 등), 지자체와 연관된 어린이집 등은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 구성하여 점검

□ 주요 점검 사항 (재무회계영역)

- 예·결산 서류 확인, 어린이집운영 관련 계좌 확인
- 입출금 관련 증빙내역 적정 여부 확인(간이 영수증 사용 자제, 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지도)
- 급·간식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관리 확인
-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 확인, 보육료 적정수납 여부 확인
-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등 초과 수납여부 확인, 아이사랑카드 결제현황 확인
- 별도 개인계좌 사용여부 확인

□ 지도 점검 후 처분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조치
 - 비용 및 보조금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결정 취소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 명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행정처분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폐쇄

- 영유아나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 명단공표 (보건복지부, 2018a)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3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및 유용기관은 지자체, 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명단 및 사유 등 공표

□ 구조적 한계

○ 다만, 다음과 같은 부당지출 및 유용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지출하는 경우
- 대표자 1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가족을 어린이집 간 교차 등록하여 급여 지급하는 경우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 개설한 경우의 동일 영수증 중복 처리
- 급식재료 구입비 및 보육교사 급여에 대한 '페이백(pay back)' 등

다. 위반유형

□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 구분 | 전체 어린이집 수 | 점검 어린이집 수 | 위반 어린이집 수 | 부정수급 유형 구분 | | | | |
|--------|-----------|-----------|-----------|------------|----------|--------------|---------|-----|
| | | | | 아동허위등록 | 교직원 허위등록 |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 무자격자 보육 | 기타 |
| '14 | 43,742 | 38,413 | 650 | 160 | 143 | 34 | 16 | 315 |
| '15 | 42,517 | 34,221 | 217 | 44 | 124 | 65 | 11 | 215 |
| '16 | 41,084 | 36,782 | 183 | 41 | 103 | 89 | 13 | 234 |
| '17 | 40,238 | 24,062 | 165 | 19 | 76 | 0 | 6 | 243 |
| '18.6월 | 39,350 | 14,447 | 48 | 8 | 20 | 15 | 2 | 35 |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
 2) 기타 : 시간제보육 위반, 출석일수 허위작성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2018.10.17. 일부 발췌

□ 위반유형을 고의적/비고의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동허위 등록, 교직원 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무자격자 보육, 시간제 보육 위반, 출석일수 허위작성

등의 사례는 대부분 고의적인 것으로 이해됨

- 행위주체에 따라 기망/부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부정수급의 행위주체는 서비스 공급자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주체가 공모 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일방적인 기망행위로 이해됨. 다만, 아동허위 등록이나 교직원 허위 등록의 경우 허위등록 대상 아동의 부모나 허위등록 교사와의 공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음

라. 조사내용 및 방향

- 이용자 공모를 통한 부정행위는 아이사랑카드라는 전자바우처의 결제 행위가 필수적이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회계보고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함
 - 보육료 결제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부정사용 행태 분석이 가능해져야 함
 - 이를 위해 이용자 정보 활용의 주체와 내용 등에 대한 관련 근거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함

- 조사 내용 및 방향은 모니터링 관련 규정과 시스템 현황, 어린이집 회계보고의 부정성에 대한 검증 기능 여부 등 모니터링 수행체계 전반과 한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함
 - 모니터링 조직 구조 및 현황
 - 모니터링 실제 수행 조직의 인력 및 구조, 모니터링 시기 및 횟수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민원 접수 조직의 운영 여부 및 현황
 - 모니터링 관련 규정과 시스템 현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법률 및 관련 규정 여부
 - 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어린이집 회계보고 검증 기능
 - 모니터링 보고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체계

- 사전모니터링 자료의 활용 절차 및 점검대상 선정 과정 등 (지자체 점검단과의 관계 등)

○ 모니터링 결과

- 사전모니터링 유형 (43종)에 대한 사례 수
-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어린이집 과징금 및 행정처분 현황
- 부정수급현황 코드 및 행정처분 코드 등

○ 전산정보 분석으로 발견된 이상사례에 대한 현장 및 사실 확인·조사 체계

- 현장조사 인력 및 수행 체계

○ 현재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 및 쟁점

- 새롭게 요구되는 모니터링 규정과 시스템

4.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실태 파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세부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은 복지대상자, 서비스이력 및 자산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부적정 수급방지를 통한 복지예산 절감 및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은 수급자 자격 및 자산정보 변경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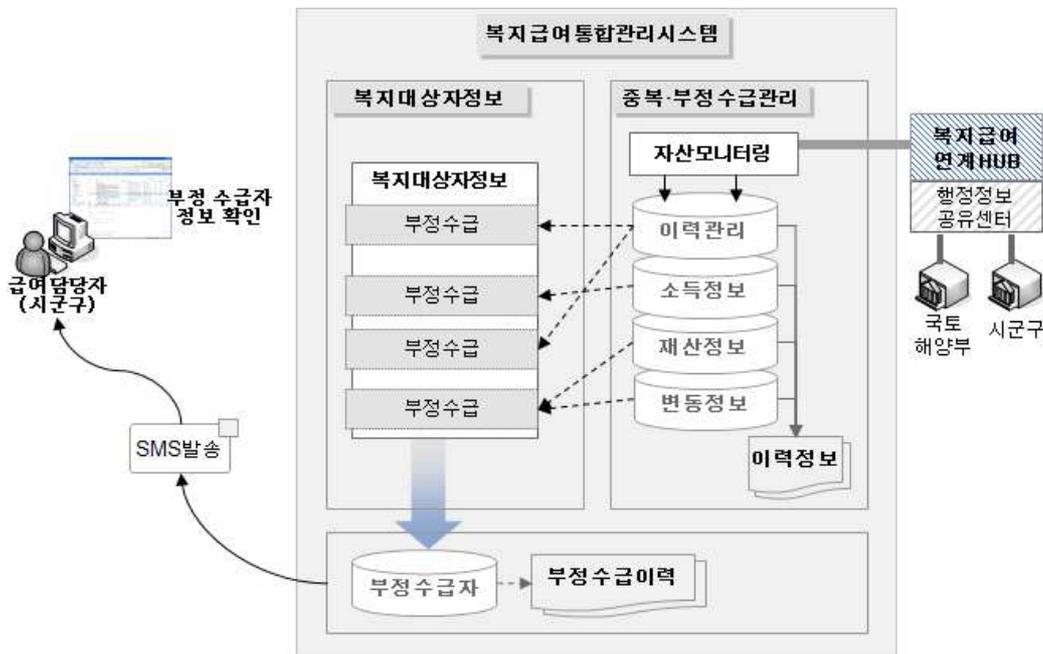
- 소득·재산정보의 중앙통합관리를 통한 변동내역 상시 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 통합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체계
- 복지정보 통합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발생원인 제거
- 복지대상자의 부적정 수급이력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의 자산정보 변동에 따른 실태조사로 부적정 수급을 확인하여 부적정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전출입시 반환징수 및 체납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관리,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자산변동 대상자 선정,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반환징수 및 체납정보 등을 관리하여 자격변동정보를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 즉, 자산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격 및 자산 변동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별하여 변동 관리하고 있음.

○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부적정 수급 및 이용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음.

○ 행복e음에서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 정보는 환수대상자 정보, 환수처리정보,

법적조치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있음.

- 전자바우처에서는 비정상 결제요건 등을 중심으로 23종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표 3-31〉 행복e음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부적정 대상자 관련 통계

| | | |
|-------|----------|---|
| 행복e음 | 중점관리 대상자 | 지자체 담당자가 관리하는 정보이며, 주요 대상은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
| | 환수관리 | 환수대상자정보, 부정수급기간, 환수처리정보, 법적조치내역 |
| 전자바우처 | 사후관리 | 바우처 서비스의 비정상 결제요건에 따라 비정상 결제를 모니터링 및 심사, 또는 부정사용한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이터 영역(비정상 결제 요건, 일 비정상 결제 원장, 부정사용 대상, 부정사용 처분 내역 등) |

- 행복e음에서 사후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환수관리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 및 관리되고 있는 복지급여의 환수대상자 통계와 환수금액, 부적정 수급기간이며, 이는 연, 월 단위로 추출이 가능함.
 - 아울러 지역단위인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가능함.
- 행복e음에서는 부적정 수급 의심자로 중점관리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수급하는 대상자가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 중지되며, 출입국 기록은 있으나 1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행복e음에 등록됨.
 - 부적정 수급 의심자 등록정보는 지자체에서 직접관리하는 정보이며, 주요 대상은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임.
 - 중점관리 대상자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확인 처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시 복지부에서 별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부적정 이용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자바우처시스템에는 이상결제 건 수 등 23개 항목이 추출가능하며, 이는 바우처 서비스 단위, 지역단위 그리고 년, 월, 일단위로 추출이 가능함.

〈표 3-32〉 부적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관련 통계 항목과 내역

| 이상결제 통계항목 | 상세내역 |
|------------------|------------------------------|
| 이상결제 건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이상결제 제공기관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심사결과, 선정구분 |
| 이상결제 제공인력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이상결제 이용자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심사결과 건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심사결과 인원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현장점검 조치 제공기관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현장점검 조치 제공인력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현장점검 조치 이용자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
| SMS 발송건수 | 이상결제구분, 이상결제상세구분, 대상 구분 |
| 신고접수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신고유형 |
| 환수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환수금액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조사종결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포상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포상금액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사후관리대상 제공기관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사후관리대상 제공인력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사후관리대상 이용자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사후관리위반 부정결제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사후관리위반 자격위반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 사후관리위반 기타 지침위반건수 | 조회구분(연도/사업)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 4 장

해외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제3절 호주

제4절 미국

제1절 개요

- 해외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선정된 사례국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파악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시사점 제시.
 - 하지만, 선정한 특정 국가의 사례가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모범 사례 또는 실패 사례라 할 수는 없음(임완섭 외, 2016, p.4).
 - 따라서 사례국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관리의 성과 및 우수성, 그리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련 사례 연구로 영국, 호주, 미국을 선택
 - 이들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로,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 비해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인 임. 한편 개별 국가 측면에서 해당 국가들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영국과 호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부조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임완섭 외, 2017).
 - 영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중앙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며, 공공부조 개혁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복지 급여를 통합 급여 형태인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합쳐 지급하고 있으며,
 - 호주는 중앙집권적이지만 영국에 비해 훨씬 더 범주적인 공공부조 제도를 제공하며, 센트럴링크라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전달 체계로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와 연계시키고 있음
 - 미국 역시 잔여적 복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서 수급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정도로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주부부처는 물론 감사원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

- 사례 연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또는 현황)에 대한 집계 및 추정 방법, 공표 방법, 부정수급 실태조사 추진 사례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하여 한국의 부정수급 대응에 대한 정책함의 도출 및 부정수급 실태조사 수행에 반영할 예정임

제2절 영국

1. 개요

- 영국정부는 오래전부터 각종 부정에 의해 공공재정이 손실되는 것을 우려하고 국민들이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노력을 펴왔음.
 - 사회보장 분야에서 1992년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을 처음 도입하여 사회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국민들이 보다 깊이 인식하도록 하였음.
 - 또한 1997년과 2001년에 차례로 ‘사회보장 관리(기망 방지)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Act)’과 ‘사회보장 기망 방지법(Social Security Fraud Act)’을 차례로 제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부정방지법(Fraud Act)’을 제정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공공 부문 및 민간부문 전체로 확산시켰음(Whyte & Wiegratz, 2016).
-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영국 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와 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운영관리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와 서비스를 관장하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에서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사기(Fraud), 신청오류(Claimant Error) 사무오류(Official Error) 3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표 4-1〉 참조).

〈표 4-1〉 부정수급의 종류

| 유형 | 내용 |
|---------------------------|---|
| 사기 (Fraud) | 신청자가 사회보장 급여의 기본 지급 조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 신청 오류 (Claimant Error) | 신청자가 사회보장 급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거나, 신청자의 변화된 지위를 급여 조건에 따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사무 오류 (Official Error) | 고용연금부가 잘못된 관리 감독이나 절차 등으로 신청자의 급여가 거절 또는 지연된 경우나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2015); 임완섭 외(2017, p.164)에서 재인용.

- 위에서 정의하였듯이 영국은 부정수급의 개념을 신청자가 지급조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외 정부기관 내에서 실수나 절차처리 등의 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급여가 신청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나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 예상치를 매년 각 항목에 따라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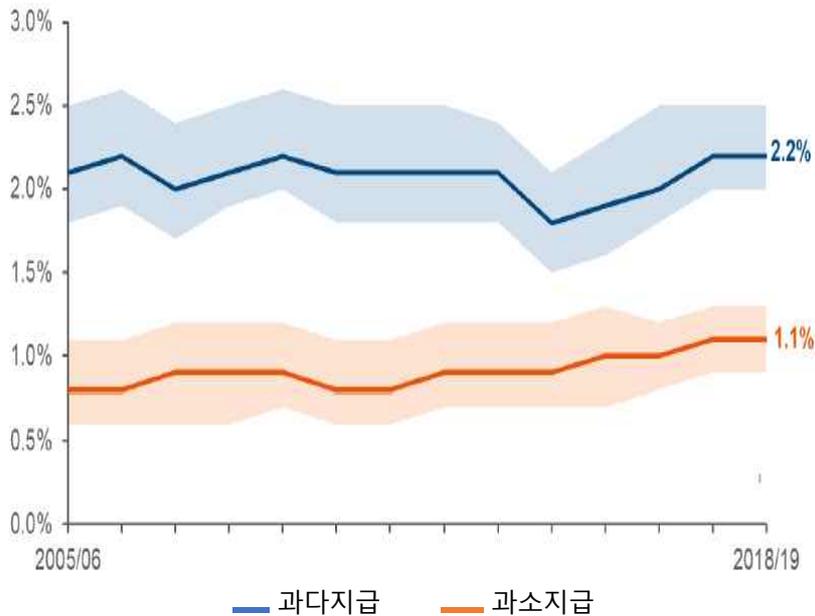
3. 부정수급 현황

- 고용연금부(DWP)와 통계청은 회계연도 2005/06년부터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사회복지급여의 손실액을 해마다 추정하고 이를 정부 웹사이트(GV.UK)에 공표.
- 가장 최근 자료는 2018/19년 자료로 부정수급에 따른 정부의 과다 지급 및 과소지급의 규모를 2005/06년부터 2018/19년까지 비교하여 부적절 지출에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2018/19년 기준 고용연금부는 약 2000만명에게 사회보장 급여로 약 2222억 파운드를 지출했다는 예상치를 발표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9).

- 이 중 약 2.2%정도인 41억 파운드가 부정수급으로 초과 지급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18년도 초과 지급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05/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도 기록되었음.
- 또한 신청오류나 사무오류 등으로 급여가 지불되지 않은 규모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약 1.1%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했음([그림 4-1] 참조).

[그림 4-1] 영국 복지 분야의 부적절 지출과 오류비율(2005-2019, 95% 신뢰구간)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9, p.1).

- 주요 세부 항목별 부정수급의 규모는 주택급여로 13억 4천만 파운드, 연금 크레딧으로 2억 6천만 파운드, 장애인 수당으로 6억 파운드, 구직자 급여로 9천만 파운드, 그리고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6억 8천만 파운드, 개인자립수당으로 3억 7천만 파운드가 초과 지불되었음.
 - 항목별로 보면 주택급여로 과다지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적절하게 급여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로는 주택 급여 3억 4천만 파운드, 연금

크레딧 1억 4천만 파운드, 장애인수당급여 4억 7천만 파운드, 구직자 급여 9천만 파운드, 유니버설 크레딧 1억 파운드, 개인자립수당으로 4억 파운드가 조사되어 다른 급여에 비하여 장애인 수당으로 급여가 충분치 못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 사회보장급여 부적절 지출 내역: 2018/19

(기준: 백만 파운드)

| 급여 | 과다지출 | 과소지출 |
|--|-------|------|
|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 1,340 | 340 |
| 구직자수당 (Jobseeker's Allowance) | 90 | 20 |
| 연금 크레딧 (Pension Credit) | 260 | 140 |
| 장애인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600 | 470 |
|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 680 | 100 |
| 개인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 370 | 400 |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9, p.11).

4. 부정수급 추정방법

□ 앞장에서 발표된 영국 사회보장 급여의 부적절 지출 내역은 영국의 고용연금부가 복지급여 관리 시스템에서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약 0.1%를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성과측정팀에서 샘플로 추출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뷰를 하여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지출 금액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 지출을 측정하는 빈도도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뉨.

- 예를 들어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장애인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개인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t Payment)은 지속적으로 매년 부적절 지출에 대한 측정을 실시함.

• 이들 급여의 총 지출액은 전체 복지급여 지출의 약 32% 정도를 차지함. 국민연금(State Pension) 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기(Fraud)나 신청오류 (Claimant

Error) 에 따른 부적절 지출을 제외한 행정적 오류 (Official error) 만 지속적으로 측정함.

- 급여의 적절성 심사 절차는 고용연금부나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모아진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여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과 다른 점이 있는 지를 상호 비교하고 신청자들을 인터뷰 할 시에는 미리 주어진 질문지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인터뷰는 급여 신청자들의 현재 상황과 급여를 처음 신청했을때의 상황이 다른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성과 측정팀에서 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고의성과 행위자에 따라 사기성 부정수급(Fraud), 신청오류 (Claimant error), 행정적 오류 (Official Error)로 분류함.
 - 사회복지 급여 신청자가 급여지급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급여를 신청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사기성 부정수급 케이스), 미리 훈련된 사기성 부정수급 담당관이 케이스를 위임받아 조사에 착수함.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적정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규모와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3> 참조).

<표 4-3> 부적절 지출 규모를 위한 표본 규모와 비율

| 구분 | 표본 수 | 전체신청자 중 표본비율 |
|--|------|--------------|
|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 7589 | 0.2% |
| 구직자수당 (Jobseeker's Allowance) | 1000 | 0.2% |
| 연금 크레딧 (Pension Credit) | 1990 | 0.1% |
| 장애인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2750 | 0.1% |
|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 1360 | 0.3% |
| 국민연금(State Pension) - 행정적 오류만 | 2400 | 0.0% |
| 개인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 110 | 0.1% |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8, p.7).

- 하지만 소득보조(Income support), 장애인 생활보조 (disability Living Expense), 근로부적격급여 (Incapacity Benefit), 돌봄수당(Carer's

Allowance)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부적절 지출을 검토함.

- 그 외 다른 복지 급여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보너스, 병가급여, 출산급여 등은 별도의 검토를 실시하지 않음.

5. 부정수급의 주요원인과 관리 모니터링 체계¹⁹⁾

가.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

- 2010년 고용연금부와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회보장 급여의 세액공제 프로그램의 부적수급의 주요 원인 보고서에서는 부적절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의 5가지를 선정하였음.
- 복잡성(complexity), 자산심사 (means-tested)시스템, 차별조항의 약점들, 사회적-개인적 규준 (Social and personal norms), 사회복지 시스템과 직원 서포트 문제임.

1) 복잡성

- 사회복지 급여의 부정지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을 들수 있음.
- 여러 사회보장 급여들의 다른 신청절차와 수급요건들로 인하여 여러 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이를 신청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신청오류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기존의 여섯가지 사회보장급여(고용지원수당, 소득보장,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주거급여, 장애근로지원수당)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실행, 확대 중임.

19) 이하 부정수급의 주요원인에 대한 내용은 고용연금부가 발표한 부정수급 방지보고서 (2010)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정, 업데이트 하였음.

- 통합급여가 아직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도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존의 수당이나 급여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태임
- 하지만 새롭게 급여나 수당,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통합급여제도를 통하여 급여 신청을 한번만 하면 관련된 급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 급여 시스템의 복잡성을 보다 덜고자 하였음.

2) 자산심사 시스템

- 영국의 여러 사회보장 급여들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차등지급 또는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예: 통합급여, 연금크레딧, 자산조사형 구직자수당 등)
- 하지만 복지 급여 수급 결정과 관련하여 급여 신청자들이 제공하는 자산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급여 지급이 종종 늦어지거나 행정적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급여 신청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재력정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이에 따라 영국 고용연금부와 국세청은 개개인의 복지 데이터베이스와 자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는 신청자의 자산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급여의 지급이 실시간 급여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3) 처벌조항의 약점들

- 영국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발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널리 퍼져있음.
- 2000년대에 실시한 부정수급 행정처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부정수급의 대한 처벌정도가 적절하지 않으며 관대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2010년 사회보장 급여와 세액지원제도를 담당하는 고용연금부, 국세청, 그리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의성이 발견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무관용정책을 펼치고 있음.
 - 고의성으로 인한 부적절 지출(Fraud)가 발견될 경우 과다지급된 급여를 모두 환급해야 하며 부정수급 금액정도에 따라서 법정 처벌이나 법정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음.
 - 또한 최대 3년간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이 정지되거나 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새로운 처벌조항까지 늘어나 부정수급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

4)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규준

-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회와 개인의 규준(norm)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며,
 - 부정수급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인식하여 고의성으로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도 자신들을 진정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 정부는 이러한 인식들이 부정수급의 부적절지출을 더욱 늘린다는 입장으로 부정수급의 처벌조항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부정수급을 목격 시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취하고 있음.

5) 사회복지 시스템과 직원 서포트 문제

- 부정수급의 과다 지급 외 부정수급의 행정적오류와 직결되는 과소지급으로는 정보의 적절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미구축과 직원 훈련부족등이 지적되었음.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용연금부의 사회보

장 급여 시스템과 국세청의 임금관리시스템의 자동화된 연동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특히 통합급여의 효과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이런 실시간 연동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여러 IT 시스템의 문제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통합급여의 전국적 실시가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음.

○ 또한 영국 정부는 최근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관리비를 축소하고 시스템의 현대화를 꾀하고자 사회보장 급여 신청과정을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전자업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업무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급여신청 미비로 인하여 과소지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부정수급의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이러한 정기적 훈련들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적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부정수급 관리 체계

□ 이렇게 발표된 부정수급의 주요원인을 사전관리로 초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부정수급 종합관리대책을 2010년에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여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 이 전략적 개입 방안에는 사전예방정책을 1순위에 배치하여 ‘예방 - 적발 - 정정 - 처벌 - 단념’이라는 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음. 부정수급 관리 전략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아래와 같음.²⁰⁾

20) 영국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은 2010년 발표된 정책 리포트가 가장 최신 정책안임.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부정수급방지대책리포트(2010) 및 임완섭 외(2017)를 발췌 및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표 4-4〉 부정수급 관리전략

| 예방 | 적발 | 정정 | 처벌 | 단념 |
|---------------------|---------------|--------------------------------|----------|--------------------------|
|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 | 강화된 적발 시스템 도입 | 부정확하게 관리된 사례가 신속히 제대로 처리되도록 관리 | 처벌 수위 강화 | 강화된 처벌 수위와 적발 시스템 발표, 홍보 |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0, p.25); 임완섭 외(2017, p.164) 재인용.

1) 예방 (Prevention)

- 영국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전략에서 예방 부문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음. 이는 급여를 한번 지급하게 되면 이를 적발하거나 정정하는데 시간적 소모와 비용지출도 크고 인적 소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기 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오류지급을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임.
- 따라서 고용연금부는 급여 신청자들중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 리스트를 작성하여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의 전력과 사례를 관리 목록에 따로 보관, 관리하여 그들이 사회보장 급여를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철저히 심사하여 부정수급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또한 국세청은 잠재적인 부정수급을 사전에 발견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시스템인 FEAST(Fraud and Error System Tool)이라는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툴을 개발하여 약 50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손실을 미리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음(HM Government, 2012).
 - 또한 국세청은 2014년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때마다 세금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정보시스템 (Real Time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용연금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급여의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서 간략히 소개하였듯이 통합급여 수준은 급여를 신청하는 세대의 실시간 임금 수준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IT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

- 따라서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구축을 통한 시스템을 통하여 급여의 효율적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업무의 정확성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부정수급 (행정적 오류로 인하여) 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음.

2) 적발 (Detection)

□ 2012년 사회복지개혁법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장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고용연금부의 사기조사팀(Fraud Investigation service) 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된 통합급여(기존의 2개의 세액지원제도가 포함됨) 또한 고용연금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국민들이 직접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에 거주하면서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를 여전히 신청하여 받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핫라인 또한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의 방문을 받거나 조사관과의 면담을 위해 출석을 요구 받을 수 있음.

3) 정정 (Correction)

□ 잘못 지급되고 있는 급여 및 세액지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조사전담반을 투입하고 점검하고 부정수급의 유형에 따라 급여를 즉시 중단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세청과 금융기관 및 민간 채무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정정 시스템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처벌 (Punishment)

- 2010-13년에 걸쳐 고용연금부와 국세청은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시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공표하였음.
- 고의적으로 과다 지급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관련 사회보장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금액으로 최소 35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과다지급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모두 반환해야 하는 의무 또한 추가되었음.
 - 따라서 2013년에는 부적절 과다 급여지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 3억 6300만 파운드를 환수하였음.
 - 이 금액은 09/10년 대비 약 1억 파운드가 증가한 액수임.
- 하지만 처벌정도를 보면 최근 4만 5000건 중 절반은 주의처분을, 25%는 부정수급액의 30-50%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나머지만 기소되었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5).
 -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다소 관용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

5) 단념 (Deter)

- 부정수급에 막는 통합전략의 마지막 요소로 국민 및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사회 단위로 부정수급에 대한 지식이나 부정수급을 받게 될 경우 초래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지역사회 내 여러가지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서 부정수급은 조기에 적발될 수 있음을 알려 부정수급의 막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의 '수치심' 요인을 이용하여 부정수급은 지역주민의 세금을 부담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 부정수급 방지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6. 소결

- 영국의 경우 2006년 시행된 사기방지법(fraud Act)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과 조직, 수사 및 징계가 법으로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었음.
- 또한 영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의 지출 규모 파악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은 매년 부정수급에 관한 추계치를 발표하여 정부정책이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부정수급의 과다 지출뿐만 아닌 과소지출 또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치를 장/단기적으로 비교하여 정책적 환기를 하고 있음.
- 이렇게 법과 자료에 근거한 정책들을 통한 부정수급의 관리 는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을 막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임.
- 또한 2013년 통합급여의 도입과 함께 고용연금부와 통계청은 급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부서를 설치하고 개개인의 복지 데이터베이스와 자산/임금내역정보를 실시간으로 연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급여 신청자와 수급자의 임금이 바뀔 때마다 이를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 시스템의 도입은 또한 부가적으로 고의적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도 쓰이고 있기에 정부부처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호협력 등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음.

제3절 호주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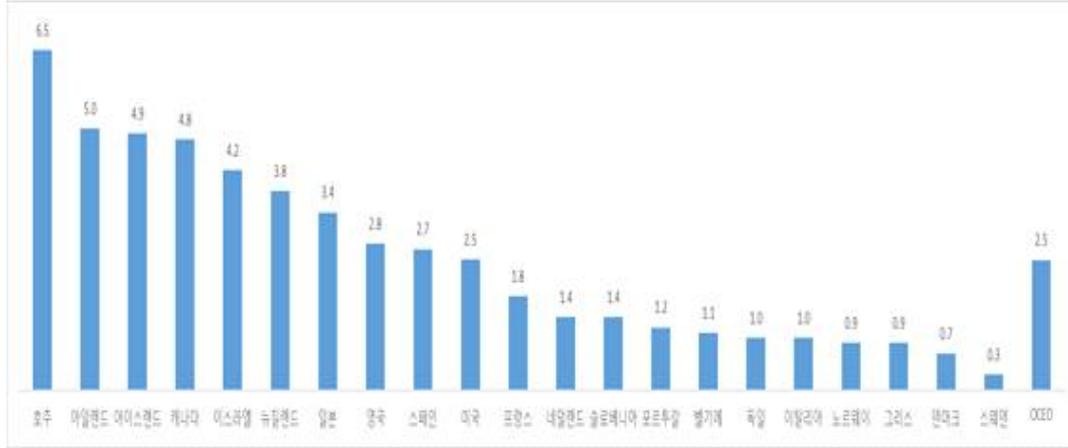
가. 호주 복지 부정수급의 정책적 맥락

1) 공공부조에 기초한 사회보장 급여

-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는 공공부조식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거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가 공공부조 방식으로 제공됨. 예를 들어, 노령, 실업, 그리고 장애 등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주요 사회적 위험들을 호주는 공공부조로 대처하고 있음.
- 공공부조는 그 운영방식의 특성상 일반조세(general revenue)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자격조건이 급여 대상자의 노동시장 기여(contributions)로부터 발생하지 않음.
- 대신에 자산조사(means-tests)를 바탕으로 한 정액급여(flat-rate income support)가 일반적인 급여 형태임(여유진, 정용문, 2011; 여유진 외, 2012).
- 사회보장 급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현금급여만을 볼 때, 호주의 자산조사 의 존성을 뚜렷하게 드러남.
- 고용주가 전액 재원을 부담하는 기업연금인 사실상 유일한 비공공부조성 현금 급여이며, 모든 현금급여 자격 판정에는 원칙적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가 수반 됨.
 - 소득 및 자산조사 적용은 엄격하여 예외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급여에 따라 장애 여부가 고려되는 경우에 자산조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그림 4-2] GDP 대비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지출 비중

(단위: %)



자료: Whiteford(2017)

- 호주 사회보장의 자산조사 의존성은 국제 통계에서 잘 표현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지출에서 자산조사에 기초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서 다른 나라들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Whiteford, 2017).
 - 자산조사에 기인한 강한 대상 표적성을 이유로, 호주는 자유주의 사회보장 체계로 분류되어 왔음.

□ 호주 사회보장 집행은 센터링크(Cetrnrelink)의 책임하에 있음.

- 센터링크는 1997년 독립기구로 설립되었다가, 2011년에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d).
 -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관리 및 전달 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모든 서비스를 일괄제공하기 위한 소위 원스톱숍(one-stop-sho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모든 공공부조성 사회보장 급여는 센터링크를 통해 전달되며,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한 사회보장 급여 자격 심사와 모니터링은 센터링크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임.

2)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

- 호주 사회보장 급여는 말 그대로 그물망 모양의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고 있음.
- 18개의 사회보장 급여와 함께 55개의 보충급여가 각기 다른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고 있음. 일단 사회보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호주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표적적인 사회보장체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대상 포괄성(universal coverage)을 지닌 체계로 요약됨.

〈표 4-5〉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

| 범주 | 구분 | 급여 |
|--------------|----------|--|
| 가족 및 아동 | 가족 지원 |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유급 출산휴가 (Paid Parental Leave) 고아 수당 (Double Orphan Pension) 가족 위기(가정폭력) 급여 (Crisis Payment) 특별(소득보충) 수당 (Special Benefit) |
| | 보육 | 보육 급여 (Child Care Subsidy) 출산수당 (Newborn Supplement and Newborn Upfront Payment) |
| 노인, 질병 및 장애인 | 노인 | 노령연금 (Age Pension) 배우자 연금 (Wife Pension) 노인 의료 할인 카드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
| | 질병 및 장애인 | 장애 연금 (Disability Pension) 병가 수당 (Sickness Allowance) 돌보미 보조금 (Carer Payment) 돌보미 수당 (Carer Allowance) |
| 교육 및 노동 | 학생 및 청소년 | 학업 수당 (Austudy) 원주민 학업 수당 (ABSTUDY)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벽지 학생 교육 수당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
| | 노동시장 | 실업 수당 (New Start Allowance) 실업자 배우자 수당 (Partner Allowance) 과부 수당 (Widow Allowance) 육아 급여 (Parenting Payment) 교통 수당 (Mobility Allowance) 특별 수당 (Special Benefit) 연금수령자 교육 보충 수당(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 기타 급여 | | 사별수당 (Bereavement Allowance) 주거비 지원 (Rent Assistance) 벽지수당 (Remote Area Allowance) 공과금 수당 (Energy Supplement) |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9c)

-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포괄적 보호라는 장점에 반해 세부화된 급여체계에 대한 개혁의 요구도 제기되고 있음. 즉, 지나치게 급여의 종류가 많고, 유사 급여들 간의 복잡한 연계 등의 문제로 급여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McClure, 2015).
- 세부화된 급여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선, 복지수요 측면에서 급여 갈아타기(moving between the payments)나 부정수급 기회 포착 등 수급자의 복지의존성과 도덕적 해이 유인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다음으로 복지공급 측면에서 복잡한 급여체계는 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복지 부정수급 현상은 수급자 개인의 의도적인 제도 왜곡보다는 제도상의 허점이나 데이터 관리상의 실수 등 부적절한 행정운영에 기인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Prenzler, 2016a)

나. 호주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역사적 맥락

1) 역사적 전개

- 역사적인 관점에서 호주의 복지 부정수급 담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와 노동 규제 완화, 이로 인한 복지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강화와 관련이 있음.
- 복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대한 재검토와 ‘정직한 수급(payment integrity)’이 공공정책의 관심으로 부상했고, 이에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이 작용했음.
 - 첫째는 복지 급여 자격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인한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임.
 - 둘째는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전세계적 불황과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 자원은 축소임.
 - 셋째는 정부의 고지출, 고세율 그리고 높은 국가채무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와 이용자 부담 철학(user pays philosophy)의 부상임(Prenzler, 2016a).

- 이러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 급여가 진정한(genuine) 수급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 확립이 주요한 목표가 됨.
 -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대화는 수급 신청 시점에서 진정한 수급자를 선별해 내고, 현행 수급자가 적법한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의미함.
- 호주에서는 프레이저 보수당 정부(Fraser Government, 1975-1983) 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엄격한 구직활동 점검과 데이터 매칭 기법 등 복지 규정 준수 조치들이 강화되기 시작함.
 - 이후 하워드에 의해 재집권한 보수당 정부(Howard Government, 1996-2007)는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주요 정강으로 설정하고, 상호의무제(mutual obligation)에 기반한 복지통제 정책을 시행함.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고 강화함(Prenzler, 2011b).
- 부정수급 규제에 관한 한, 호주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음. 친복지적인 정당으로 간주되는 노동당 집권기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강경한 조치들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
 - 애봇 정부(Abbott Government, 2013-2015)와 턴불 정부(Turnbull Government, 2015-2017)는 재정적자 해소를 지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통한 복지 재무관리를 재정 흑자 전환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함(Martin, 2016).
 - 이어 집권한 모리슨 정부(Morrison Government, 2017-현재)는 복지 부정수급의 범죄적 속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부정수급 단속 전담반의 일부로서 디지털 과학수사실(Digital Forensics Laboratory)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Easton, 2019).

2) 두 가지 관점

- 1980년 이후로 호주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축소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복지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의 도입과 확산을 수반하고 있음.
-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던 센터링크가 설립된 이후, 복지 전달체계에는 가상의 경찰(virtual police force)이 주둔하는 현상이 초래됨.
 - 즉, 복지 급여 데이터 분석가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급여(payment discrepancies)를 탐지하고, 부정수급 조사관(fraud investigators)들이 현금 비즈니스를 통한 비공식적 수입 여부를 파악하고, 민간 보안업체와 계약하여 피의자들을 비밀 영상 감시(covert optical surveillance)하는 기능들이 도입됨(Prenzler, 2012). 결과적으로 복지행정과 복지치안(welfare policing)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임.
- 복지 부정수급을 정당화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 즉, 부정수급이 대중들의 복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근심에는 근거가 있음. 이런 면에서, 공정한 복지행정 확립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음(Prenzler, 2012).
- 그러나, 부정수급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함.
 - 첫번째 관점에 의하면, 부정수급은 반복지 단체 혹은 신우익(New Right) 이념에 의해 도덕의 문제로 구성됨.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로 좁게 해석되며,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개인이 자신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됨.
 - 이 관점은 복지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복지 급여보다는 자조와 근로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강조함. 복지급여는 복지 의존성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논리적인 전략으로서 부정수급에 대한 강경한 접근이 선택됨.

-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규제는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 호주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 조치들(compliance measures)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오고 있음.
 - 대중매체들을 통해 복지시스템에서의 낭비(waste)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준수 조치들의 정당성이 유포되고 있음(Wilcock, 2014). 호주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담론 전략은 대중의 동의를 획득한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임.
 - 다소 오래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주인들은 특정 금액의 복지 부정수급이 그 보다 큰 금액의 조세회피보다 더 나쁜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Wilson, Walker, & Mukherjee, 1986).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다른 관점은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더 주목하고 있음.
 - 이 관점은 복지 부정수급이 욕심보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현상을 강조함. 욕구는 충분하지 않은 최저임금과 복지급여에 의해 발생하며,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부정수급 가설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부정수급 발생 확률이 더 높은 현상에 의해 증명됨(Prenzler, 2012; Prenzler, 2016a). 한부모 가구, 특히 모자 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재정적인 압박을 더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범할 유인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됨(Wilcock, 2014; Wilcock, 2016).
 - 욕구 기반 부정수급 접근법은 부정수급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함.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가진 개인의 범죄행위로 부정수급을 규정하는 접근법은 국가의 역할을 규율과 통제에 맞추고 있음.
 - 정부의 성과는 취약계층의 보호 정도보다는 납세자들의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됨. 욕구가 있는 다수들에 대한 보호보다는 부정행위를 한 소수의 비행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지출 축소의 정당성을 유포하고, 복지국가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부정수급 담론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복지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짐(Wilcock, 2014).

2. 부정수급 현황

가. 부정수급 정의

- 복지 부정수급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복지 부정수급을 ‘부정확하게 수령 혹은 제공된 급여’라고 광의로 정의할 때 복지 부정수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수급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이는 복지사기(welfare cheat)로 명명될 수 있음.
- 부정수급은 비고의적인 이유로도 발생함. 수급자가 부정한 의도없이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부적절한 시점의 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로 부정확한 급여가 제공된 경우는 수급자 실수(customer error)로 분류될 수 있음.
- 세번째는 공식적인 실수(official error)로서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급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부정확한 급여가 제공된 경우임(Bourn, 2008).
- 부정수급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세 가지 다른 유형에 대한 구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경계는 모호함. 공식적인 실수는 상대적으로 가려내기 쉬울 수 있으나, 사기와 실수를 가려내는 데에 있어 의도성(fraudulent intent)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설사 부정수급을 의도적인 행위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성도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존재함.
 - 즉, 부정수급은 욕심(greed)과 욕구(need)의 심리환경적 선상에서 나타난 행위로 볼 수 있음(Tunley, 2011). 욕심에 의한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목적의식적, 계획적, 그리고 체계화된 실행으로 볼 수 있으며, 욕구에 의한 부정수급은 심각한 경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임.
 - 예를 들어, 일과 복지 사이를 빈번하게 오가는 상황이나 작은 수입활동을 하면서 이를 철저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신

고하는 등 소위 편법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이러한 미준수(non-compliance) 행위는 사기와 실수 간에 큰 회색지대(grey area)를 창출하고 있으며, 실제 유죄판결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됨.

- 호주의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쉽게 확인되지 않음.
 - 호주 범죄 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이 발행하는 범죄통계 연보에 의하면, 복지 부정수급이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 정부 기관에 허위의(false) 혹은 오도하는(misleading)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누락하는(omitting) 행위를 의미함(Lindley, Jorna, & Smith, 2012).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인 의미는 사회보장행정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212조부터 2016조에 걸쳐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행정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 다섯 가지가 사회보장행정법 위법행위(offences)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① 급여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곤궁(hardship)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 ② 급여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여 사회보장 담당 기구를 속이는 것, ③ 허위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 진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reckless) 문서를 제출하는 것, ④ 자격요건이 안되는 급여를 획득하는 것, ⑤ 신분사칭(impersonation)이나 사기적인 계락을 활용하여 급여를 획득하는 것(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3).

나. 부정수급 유형

- 센터링크는 부정수급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사회보장 급여 부정 수급으로서 허위 신분 혹은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등 허위 혹은 오도된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자산이 소득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실제 부부가 동거하면서 별거 혹은 이혼으로 신고하는 경우), 돌봄 대상자의 사망 혹은 기타 사유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돌봄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호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두 번째 유형은 아동지원제도(Child Support Scheme)와 관련됨.

- 아동지원제도는 이혼이나 별거 시에 아동의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과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임금을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이를 아동에게 이전하는 급여임. 아동과 동거하지 않은 부모는 고용주와 결탁(collusion)하여 본인의 임금을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고용주가 해당 피고용인 부모에게 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부모는 실제 소득보다 작은 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아동지원금을 줄이는 경우임.

○ 세 번째는 보건 관련 부정수급임.

- 여기에는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메디케어(Medicare)에 청구하는 경우, 타인의 메디케어 카드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의료할인카드(Healthcare Card)를 이용하는 경우, 의약품 할인 급여(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받기 위해 처방전은 위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다. 부정수급 추세

□ 호주의 사회보장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급여자 수의 증가는 대체로 인구고령화와 연관이 있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돌봄 급여 수급자의 증가가 전체 복지 수급자 수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2015-16년 현재 대략 5백만명 이상이 사회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음. 이에는 아동수당 성격의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수급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아 검찰청(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으로 기소 의뢰된 건수는 2015-16년 한

해에 약 1,300건에 이룸. 이 중 실제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경우는 814건으로
서 약 60%의 기소성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4-6〉 사회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

(단위: 명, 건, %)

| 기간 | 수급자 | 기소 의뢰 | 기소율 | 부정수급 판결 | 부정수급율 |
|-----------|-----------|-------|------|---------|-------|
| 2007-2008 | 4,163,902 | 5,312 | 0.12 | 3,146 | 0.07 |
| 2008-2009 | 4,416,709 | 5,082 | 0.11 | 3,857 | 0.08 |
| 2009-2010 | 4,527,312 | 4,608 | 0.10 | 4,019 | 0.08 |
| 2010-2011 | 4,595,861 | 1,273 | 0.02 | 2,847 | 0.05 |
| 2011-2012 | 4,677,395 | 1,235 | 0.02 | 1,186 | 0.02 |
| 2012-2013 | 4,830,225 | 1,165 | 0.02 | 927 | 0.02 |
| 2013-2014 | 5,015,966 | 1,071 | 0.02 | 863 | 0.01 |
| 2015-2016 | 5,114,307 | 1,366 | 0.02 | 814 | 0.01 |

자료: Prenzler(2016b)

○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수와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

- 기소 건수는 약 80%까지 감소했으며, 부정수급 판결 건수도 대략 75%까지
감소하여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이후 부정수급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이 현저히 감소한 데에는 몇 가지 법적 그리고 정
책적 변화가 관여되어 있음.

○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2011년과 2013년에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
침. 이 판결은 소위 '누락 판결(omission cases)'로 명명되는데, 당시 상당수
의 부정수급 기소는 수급자의 의도적인 부정정보다는 개인의 상황 변화를 센터
링크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급여를 유지한 위법(offence) 사례가 많았음.

- 실제 센터링크의 부정수급 조사(investigation) 사례 중 92%는 임시수입
(casual earnings) 미신고, 임시고용 미신고, 그리고 배우자 소득 미신고
등 단순 신고 누락이 차지하고 있었음(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0). 형사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위법이었으
나, 개인 상황 변화 신고의무가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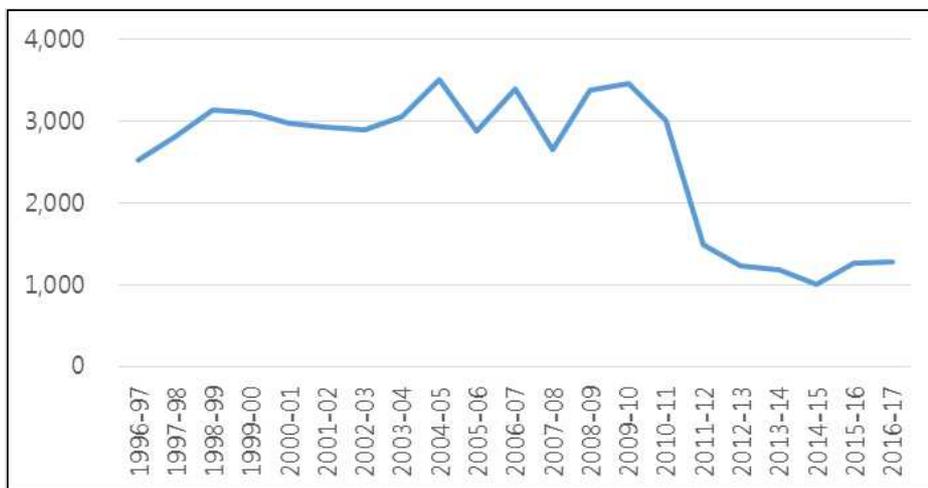
성립되지 않았음.

-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법에서 개인상황변화 신고의무가 신설되었고, 동시에 부정수급 기소를 위해서는 센터링크가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 등 충분한 증거를 구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고누락 관련 기소건수가 감소함(Wilcock, 2018).

○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수반되었는데, 2011년까지 센터링크는 사회보장 초과지급분 회복에 관한 실적치를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센터링크 조사원들은 일정 건수 이상을 기소하도록 요구되었음.

- 예를 들어, 2000-01년 센터링크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에는 4,000 건수를 기소의뢰하여 708.8백만 호주달러(약 7천 억원)를 회수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원들은 1년에 최소 96개 사례를 조사하고, 최소 6개 사례를 기소의뢰하도록 요구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례는 기소 의뢰가 이루어졌고, 이런 불합리한 관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
- 이후 부정수급 기소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법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사례에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짐(Wilcock, 2018).

[그림 4-3] 사회보장 부정수급 기소 추세



자료: Wilcock(2018)

- 불합리한 양적 목표치의 제거와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제기됨. 이에 의하면, 일단 기소 과정에 들어가면 개인은 심리적, 재정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후 고용기회의 제약 등 생활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기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함.
 -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센터링크 내에서 예방(prevention)과 조기 감지(early detection) 기능을 강화하여, 법정에 이송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제안됨(Legal Aid NSW, 2010).
- 부정수급 기소가 줄어든 것은 우선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전반적으로 호주는 부정수급에 대해 예전에 비해 덜 처벌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예방과 조기개입 전략의 채택은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기소율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호주는 사회보장 위법행위에 대해 벌점 체계(demerit system)를 도입하여 급여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Henriques-Gomes, 2019), 복지 수급자를 잠재적인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적인 접근법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표방하고 있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부정수급 문제 근절을 위한 행정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도 존재함(Prenzler, 2016b).

3. 부정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가. 법적 관리

-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법은 사회보장행정법임.
- 사회보장행정법은 부정수급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217조부터 219

조에 걸쳐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법원은 급여액 환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전술한 신고누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회보장행정법은 2011년부터 개인 상황 보고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함.

- 사회보장행정법 66조에 의하면, 수급자는 급여 자격과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변화 발생 후 14일 이내에 이를 인적서비스부(센터링크)에 보고해야 함(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3).

- 보고 내용은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됨: 연락처, 은행계좌, 가족관계(부부, 별거, 이혼 등), 돌봄 관계, 근로지위, 학업, 성정체성, 거주형태(자가, 임대 등), 해외 출국, 일시불 수입,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

□ 사회보장법 위반은 형사법(The Criminal Code Act 1995)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음.

○ 사회보장 부정수급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는 동법 134조와 135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이에는 기만(deception)에 의해 소유물을 획득한 경우, 기만에 의해 재정적인 이익을 획득한 경우, 그리고 부정한(dishonest) 행위 및 이로 인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이 포함됨.

○ 벌칙으로서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됨.

- 즉, 기만에 의해 재정적 이익을 취한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정한 방법이 증명되는 부당한 재정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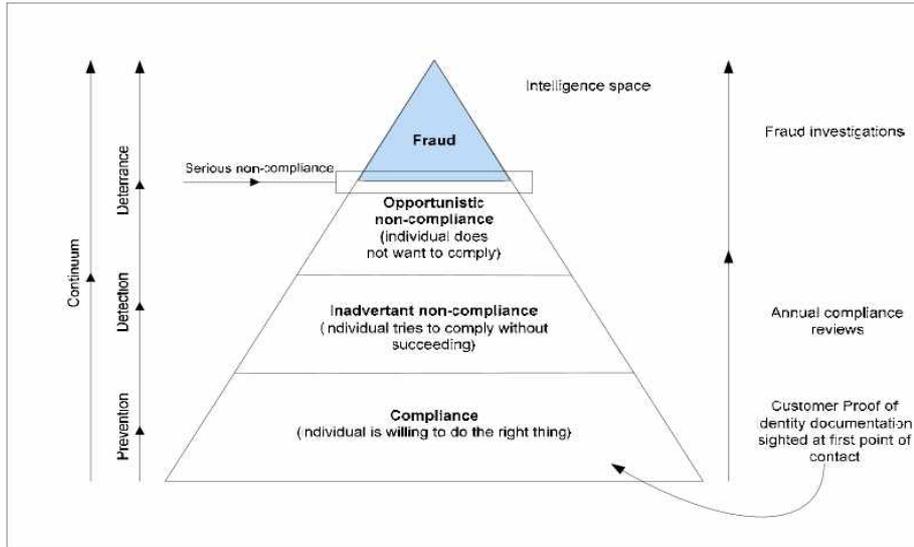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관리는 비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한정되지만은 않음.

- 호주 연방정부는 재정관리 및 책임성 법(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에 의해 부정통제계획(Fraud control plan)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 성과 및 책임성 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은 모든 정부 부처가 공공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상위 법들에 의거, 호주 인적자원부는 자체적인 부정통제계획(Fraud Control Plan)을 운영하고 있음. 이 계획에 따라, 인적자원부의 모든 직원과 계약자들은 의무적으로 부정행위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고객, 서비스 공급자, 직원과 계약자 등에 의한 모든 의심스러운 행위를 보고해야 함.
 - 특히, 부정수급 통제, 감지, 조사 활동을 하는 이는 특화된 훈련 이수해야 함.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호주 공무원 행위규범(Australian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행정적 관리

- 호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는 센터링크 설립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 행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음.
- 센터링크는 ‘연방정부 부정행위 관리 지침(Commonwealth Fraud Control Guidelines 2002)’에 의거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계획(Centrelink Fraud Control Plan 2008-10)’을 발표함.
 - 이 계획은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접근법, 그리고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 단계적 접근법에 기초함
 - 즉, 부정확한 급여나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prevention), 부정확한 급여나 사기행위에 대한 탐지(detection), 그리고 예방과 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적절한 억제(deterrence)가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시스템과 절차 설계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음(Cetnrelink, 2008).

[그림 4-4] 부정수급 분류 모델



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2010)

- 센터링크의 단계 접근법은 우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규정을 준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함.
 - 피라미드 규제 준수 모형에 따라 피라미드 상부로 이동할수록 부정수급의 의도성이 분명해짐. 중간단계의 의도하지 않은 과잉수급에 대해서는 탐지와 준수 강화 개입이 행해지며, 최상부의 소수 사기행위에 대해서 규제준수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억제를 위한 강압적 개입이 시행됨.

1)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개선

- 호주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급여체계 개선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복지급여인프라 개선사업(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WPIT)은 호주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근대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센터링크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streamline)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사회보장업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총 5개 단계로 추진되어 2022년에 완료될 계획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두번째 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9년 현재 세번째 사업 단계에 있음.
 - 1980년대 도입된 노후화된 센터링크 급여관리체계(소프트웨어 등)를 교체하는 작업이 주요 내용임.
 -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그 자체로서 부정수급 관리 사업이라 볼 수는 없으며, 클라이언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표명화된 목표임.
 - 그러나,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부정수급 탐지와 규제 준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디지털 능력 강화도 사업의 주요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음(Arthur, 2015;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8).
 - 실제로 센터링크는 기존에 비자동화된 방식으로 일년에 20,000건의 부정수급을 탐지한 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주일에 동일한 건수의 부정수급을 탐지하고 있음(Hickey, 2019;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2) 센터링크 모니터링 시스템

- '규정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센터링크가 부정수급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임.
 - 센터링크에서 부정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준수청렴부(Compliance and Business Integrity Division)'임.
 - 준수청렴부는 정확한 급여 제공을 위한 활동과 전략을 수행함. 수급자들이 센터링크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비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들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함.
 - 센터링크의 청렴전담반(Taskforce Integrity)은 심각한 위법과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청렴전담반은 부정수급을 통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왜곡

하는 이들을 표적화하고 있음. 특히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여 심층조사하고 있음.

- 청렴전담반은 부정수급 관리(debt management) 및 부정수급된 급여 회수(debt recovery)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검찰에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함.
- 청렴전담반은 부정수급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만약, 부정수급자가 급여 자격을 상실한 이후 급여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분 회수를 외부 추심기관(external collection agents)에 의뢰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명령(departure prohibition order)을 내릴 수도 있음.
- 또한, 아동지원 규정을 어길 경우 임금 혹은 세금환급분을 차압(garnish)할 수 있음(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8).

3) 부정수급 제보

□ 센터링크 내부의 행정적인 역량을 이용하는 것에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센터링크 제보 시스템(Centrelink Tip-Off System)은 설립 직후 1998년에 곧장 도입됨. 전화, 우편 및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제보는 급여 재검토(payment reviews)와 부정 급여 회수(debt recovery)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센터링크는 한 해에 약 9만여건의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음(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a).

- 센터링크는 제보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specialist tip-off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과학수사실(Digital Forensics Laboratory)과 청렴전담반(Taskforce Integrity) 등의 공식 행정체계를 보완하는 민간 부정수급 관리체제로 볼 수 있음.
- 모든 제보는 제보전담팀에 의해 사정(assess)되며, 전체 제보 중 16.2%가

실제 급여 변경이나 급여 환수 등의 유효한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됨(Prenzler, 2011a).

4) 조기 접촉과 상환 유도

- 센터링크에 의해 부정수급이 감지되면, 클라이언트에게 환불 고지서가 전달됨. 고지서에는 부정수급 사유, 부정수금액, 수금액 환불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음(부록 참조).
- 환불 금액에는 부정 수금액의 10%가 환불 수수료(recovery fee)로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환불 수수료는 근로연령층의 부정수급자에 한해 부과되고 있음.
 - 기존에는 부정수급 고지서에 자동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제도 개선의 요구에 따라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 및 환수조치에 성실히 임한 자는 면제되어 적용되고 있음. 2017-18년 현재, 전체 환수조치 고지의 37%에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Commonwealth Ombudsman, 2019).
- 환불고지서를 받은 자는 센터링크의 부정수급 환수팀(Centrelink debt line)에 연락하여 환수조치에 대해 상의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조치에 동의하면, 센터링크 온라인 계좌(Centrelink online account)나 센터링크 앱(Express Plus Centrelink mobile app)을 이용하여 상환할 수 있음. 현재 센터링크 고객이 아닌 경우 계좌이체, 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e).
 - 만약 센터링크의 환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센터링크의 재검관(Authorized Review Officer)을 통해 재검을 신청할 수 있음. 센터링크 재검관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음(2015년부터 사회보장 항소심을 담당하던 사회보장법원(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은 행정법원에 합병되어 운영되고 있음(Social Security Rights Network, 2017)).

4. 부정수급규모 추정방법

- 호주의 부정수급 조사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은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음(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b; 임완섭 외, 2017).
-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 자격 및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 및 개인 상황(경제활동이나 가족구성 등)에 대한 신고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며, 신고소득의 정확성은 사후 다양한 소득 데이터와의 교차점검을 통해 판단됨.
- 호주는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 법(Data-matching Program(Assistance and Tax) Act 1990)에 근거하여 1991년에 데이터 매칭 기구(Data Matching Agency)를 설립함.
 - 여기에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센터링크의 전신)와 개인소득자료를 관리하는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이 참여했음.
 - 이후 사회보장 보훈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참여했으며, 현재는 관련 정부기관들의 데이터 제공 협조 체제 하에 센터링크가 데이터 매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표 4-7〉 데이터 매칭 외부데이터 원천(external sources)

| 외부데이터 원천 |
|---|
| 호주금융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
|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 기업연금공단(Commonwealth Superannuation Corporation) |
|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 고용부(Department of Jobs and Small Business) |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 국방부(Defence Housing Australia) |
| 공사립학교(Public and private education providers) |
| 교정서비스(State and territory departments of corrective services) |
| 출생사망결혼등록서비스(State and territory registrars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
| 토지등록서비스(State and territory land titles offices) |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8)

- 데이터 매칭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함.
 - 첫째는 중복급여(double-dipping)로서 다른 급여 수급에 의해 배제되어야 할 급여가 수급되고 있는지 판단함.
 - 둘째는 소득정보의 정확성으로서 국세청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한 급여액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 (과잉급여(overpayment)만이 아니라 과소급여(underpayment)도 포함됨).
 - 셋째는 수급자 신원 확인(Personal Identity Discrepancies)으로서 국세청의 납세번호(Tax File Number) 상의 개인신상과 센터링크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함(Prenzler, 2011a).

- 초기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은 센터링크 급여 신청 데이터와 국세청의 소득 신고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비교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부터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후 호주의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온라인 준수 개입(Online Compliance Intervention, OCI)’ 프로그램으로 변경됨(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 온라인 준수 개입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자동화된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동화된 부정수급 환수(automated debt recovery) 프로그램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개입을 통한 재확인 과정의 부족 그리고 센터링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적 상호작용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로봇 추심(robo-debt recovery) 프로그램으로 비하되기도 함(Farrell & McDonald, 2019; Goldie, 2019).

- 우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데이터 매칭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센터링크는 국세청에 수급자의 개인식별정보(identity information)를 제공하며, 국세청은 이에 기초하여 센터링크에 소득정보를 제공함.
 - 센터링크는 보유한 소득신고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비교하여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확인함. 만약, 두 소득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센터

링크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수급자의 원천징수 명세서(pay-as-you-go statements)를 요구하며, 여기에 기록된 소득자료와 다시 대조함.

○ 최근까지 소득 대조 및 고용주 접촉 과정에 센터링크 직원이 직접(manually) 관여해왔으나, 2016년 온라인 준수 개입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그 절차가 인적 개입이 최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현행 자동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음.

- 첫째, 소득정보 확인 책임소재가 센터링크로부터 수급자로 이동함. 즉, 소득불일치가 확인되면 수급자에게 편지가 전달되며, 수급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징수명세서에 기록된 소득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 둘째, 수급자의 소득 재확인 과정은 온라인으로 처리됨. 호주정부는 최근 정부서비스에 개인 온라인 계좌를 설립하여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myGov.gov.au), 수급자는 센터링크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셋째, 온라인 방식의 도입은 센터링크의 업무량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소득불일치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 호주 정부는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 기관간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ICT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음.

○ 센터링크는 소득 정보 확인 과정에 ‘호주 금융정보분석원(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와 자동화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 호주 금융정보분석원은 돈세탁, 범죄조직 거래, 조세회피 및 복지 부정수급 등을 부정 경제 거래 행위를 관리하는 기구임. 센터링크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 인식(Real Time Risk Profil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실시간 위험 인식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 장소에 집결한 시설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부정수급 위험 요인을 포착할 수

있으며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b), 부정확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5. 부정수급 공표방법

- 호주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예산을 운영 중임. ‘부정수급 방지 예산 (Strengthening the Integrity of Welfare Payment Budget)’은 2022년까지 부정수급 방지에 소요될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전술한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바로 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조치 노력에 집행되는 예산과 그 성과는 매년 센터링크를 관장하고 있는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2017-18 회계연도의 예산절감액은 1천 4백만 호주달러(약 1백 4십억원)에 이룸. 전반적으로 부정수급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예산 절감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임.
 - 여기서 예산 지출이란 온라인 인프라 구축과 자동화 방식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예산 절감이란 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해석됨.
 - 2016년 온라인 준수 개입 정책의 실행을 기점으로 예산 지출과 절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특기할 만한 지표는 예산 지출 대비 예산 절감 비율로서, 온라인 준수 개입을 기점으로 부정수급 대책들의 비용효율성이 급격히 상승함.

〈표 4-8〉 데이터 매칭의 비용 및 예산 절감 성과

(단위: 호주달러)

| 구분 | 2013-14 | 2014-15 | 2015-16 | 2016-17 | 2017-18 |
|---------------|-------------|-------------|------------|------------|------------|
| 예산절감 | 152,238,100 | 160,013,100 | 73,582,800 | 29,261,500 | 14,050,800 |
| 비용 | 19,530,400 | 25,451,400 | 8,327,500 | 1,676,500 | 1,178,500 |
| 순이익 | 132,707,700 | 134,561,800 | 65,254,800 | 27,585,000 | 12,872,300 |
| 비용 대비 예산절감 비율 | 1:7.8 | 1:6.3 | 1:8.8 | 1:17.5 | 1:11.9 |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7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8)

- 호주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 성과 역시 인적자원부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표되고 있음.
 - 2017-18 회계연도 자료에 의하면, 총 2백 5십만 건이 부정수급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십 2억 호주달러(약 3조 2천억원)에 달함.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실제 회수한 금액은 약 절반인 1십 7억 호주달러(약 1조 7천억원)임.
- 대체적으로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금액은 최근 증가했으나, 2016년 자동화된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 도입의 영향에 따른 획기적인 변화는 눈에 띠지 않음.
 - 단, 외부 추심기관을 활용한 환수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임. 이는 예방과 조기 접촉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접근법의 작용, 그리고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정수급 건수의 감소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4-9〉 부정수급 대응 성과

(단위: 호주달러)

| 구분 | 2015-16 | 2016-17 | 2017-18 |
|----------------|-----------|-----------|-----------|
| 부정수급 건수 | 2,439,431 | 2,384,911 | 2,493,474 |
| 부정수급 금액 | 2.8십억 | 2.8십억 | 3.2십억 |
| 총 회수금액 | 1.54십억 | 1.64십억 | 1.70십억 |
| 외부 추심기관에 의한 회수 | 144.7백만 | 126.1백만 | 125.7백만 |
| 외부 추심기관 회수 비중 | 9.4% | 7.7% | 7.4% |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8)

제4절 미국²¹⁾

1. 개요

□ 미국은 영국과 함께 선별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국가로, 부적정 지출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조직과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음 .

○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은 유럽의 보수주의 국가 및 사민주의 국가의 비해 크지 않음.

- 사회보험제도의 부족한 역할을 민간보험 제도 또는 공공부조 제도가 보완해 주고 있음.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전제로 수행되는 것과 동시에 빈곤가정일시부조(TANF)와 같이 한시적 성격의 지원제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급여 수급조건이 부과되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정적 지출의 발생이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사회보장급여는 주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등 지방정부로 보조금 형태로 이전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는 주로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에서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는 부적정 지출 관리의 틀에서 이루어짐

○ 미국에서의 부적정 지출은 “그릇된 원인(wrong reason)”에 의해, “그릇된 사람(wrong person)”에게 “그릇된 금액(wrong amount)”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이오, 2011, p.2).

○ 즉, 부적정 지출의 원인과 주체 그리고 부정수급액 수준이 주요 관리대상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부정수급 대응과 한국에 대한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21) PaymentAccuracy 웹사이트(<https://paymentaccuracy.gov>) 및 오윤섭 외(2016, pp.53-61) 등을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함.

2. 부적정 지출 관리운영 주체와 부정수급 관련 거버넌스

가. 주요 관리운영 주체의 기능과 역할

□ 예산관리청(OMB)와 연방감사원(GAO)

○ 예산관리청(Office of the Management of the Budget, OMB)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책, 예산, 규제, 입법 등의 기획 및 실행을 관장(원종학 외, 2019)
 -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 체계를 기획·관리하고 있으며, OMB circular(행동 지침)를 통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규정
- 연방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권고에 따라 부적정 지출 보고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각 정부 부처들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을 조사 및 보고(오윤섭 외, 2016)
 - 예산관리청(OMB)은 OMB 지침에 의거, 기관들이 보조금 관리 전반과 부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사
- 예산관리청(OMB)은 '01년 OMB 회람 A-11를 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부 부처에 대한 부적정 지출 관리가 도입됨(이오, 2011).
 - 개정된 회람 A-11은 실수에 의한 지출(erroneous payments)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수율(error rate)과 추정금액 결정 공식 및 보고 형식을 수립
 - OMB 회람 A-11은 부적정 지출 추정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2.5%를 초과하거나 사업 예산이 \$1,000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 부적정 지출액을 추정하도록 의무화
- 2003년 5월에는 「부적정 지출정보에 대한 법률 (Improper Payment Information Act of 2002: IPIA, '02)」 집행지침에 보고서의 일반 공개 조항을 삽입하였음(오윤섭 외, 2016).
 - 이에 따라 최고재무책임자법(CFO Act) 대상인 14개 부처는 2003년, 그

밖의 부처는 2004년부터 성과보고서(PAR)에 부적정 지출 관련 정보를 첨부하기 시작하였음.

○ 연방 감사원(또는 책임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원종학 외, 2019)

-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GAO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국회 산하기관임)
- 연 평균 800~900개 정도의 감사를 진행하며,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 감사 등을 수행(각 정부 기관의 OMB circular 이행 여부와 정도도 포함)
- 부적정 지출 탐색에 대한 방법* 제시를 통해 정부 부처의 부적정 지출 관리 및 대응 방향을 제시

*부적정 지출 탐색을 위한 GAO의 권고사항²²⁾

- 1) 데이터 매칭: 지출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관간 자료 공유
- 2) 데이터 마이닝: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관계 분석을 위한 자료분석
- 3)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 구성요소간 관련성 및 패턴 분석 시스템
- 4) 환수 감사(recovery auditing): 중복 혹은 실수한 의한 지급금 환수를 확인하는 사후감사
- 5) 계약감사(contract audits): 지출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사후감사
- 6) 사전 조사(prepayment investigation): 지출 이전 부처의 의심스럽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 조사

□ 입법부 : 주요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 「부적정 지출정보에 대한 법률(IPIA, '02)」을 통해 OMB 회람 A-11 보다 더 강력한 요구사항이 정부기관에 부과됨(이오, 2011)

- 정부부처는 부적절한 지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 및 활동을 검토하도록 규정됨(오윤섭 외, 2009)
-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담당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연간 부적정 지출 금액

22) 오윤섭 외(2009, p.17) 발췌

을 추정해야함

- 부적정 지출 추정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 됨.

○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of 2010, IPERA 2010)

- 2010년 도입되어, 부적정 지출의 예방·확인·회수를 위해 기관별로 부적정 지출금액을 추정케 하고 환수감사(recovery audit)를 통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재정관리 개선프로그램을 마련하게 함(이오, 2011).
- 부적정 지출 의심 사업에 대해 최소 3년마다 점검하고, 부정이나 과실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환수감사(recovery audit) 실시 대상을 연간 예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되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오윤섭 외, 2016).

○ 'IPERA 2010'은 2012년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개선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 of 2012)으로 개정됨(원종학 외, 2019)

- 해당 법 개정을 통해 OMB은 부적절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매년 설정하고 반기 또는 분기별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매해 특별한 관리·감독 및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게됨.
- Do Not Pay(DNP) system :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이뤄지기 전에 수급자(또는 수령자)의 자격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매칭으로 연계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DNP 시스템 구축

나. 부정수급 관련 거버넌스²³⁾

23) 오윤섭 외(2016, pp.53-61)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함.

- 미국에서 부정수급 등 부적정 지출에 대한 관리는 연방감사원(GAO), 예산관리청(OMB)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이뤄짐
- 미국의 최고감사기구인 연방감사원(GAO)은 부적정 지출 관리제도의 도입과 제도 개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GAO는 1990년부터 격년으로 전 부처에 걸쳐 사기, 낭비, 남용에 취약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위험 목록(high-risk list)’을 발표하고 있음.
 - 또한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해당 부서의 고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부적정 지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며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음.
 - 최근에는 부적정 지출의 발생은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부적정 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이오, 2011, pp.7-9).
- 예산관리청(OMB)는 정부의 부적정 지출 관리업무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
 - 최고감사기구인 GAO의 지속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 강화 권고에 응하여 회람 A-11(예산안 가이드), 정부 행정 운영 개선 계획(PMA), IPIA 집행 가이드(M-1-13)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정부부처의 부적정 지출에 대한 관리를 총괄함
 - 지금까지 예산관리청이 추진하여 운영 중인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부처로 하여금 예산안에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 시키게 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수에 의한 지출(erroneous payments)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수율(error rate)과 추정 금액 결정 공식 및 보고 형식을 수립
 - 부적정 지출 정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요구
 - 정부기관이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측정하고 실제 금액을 추정하도록 의무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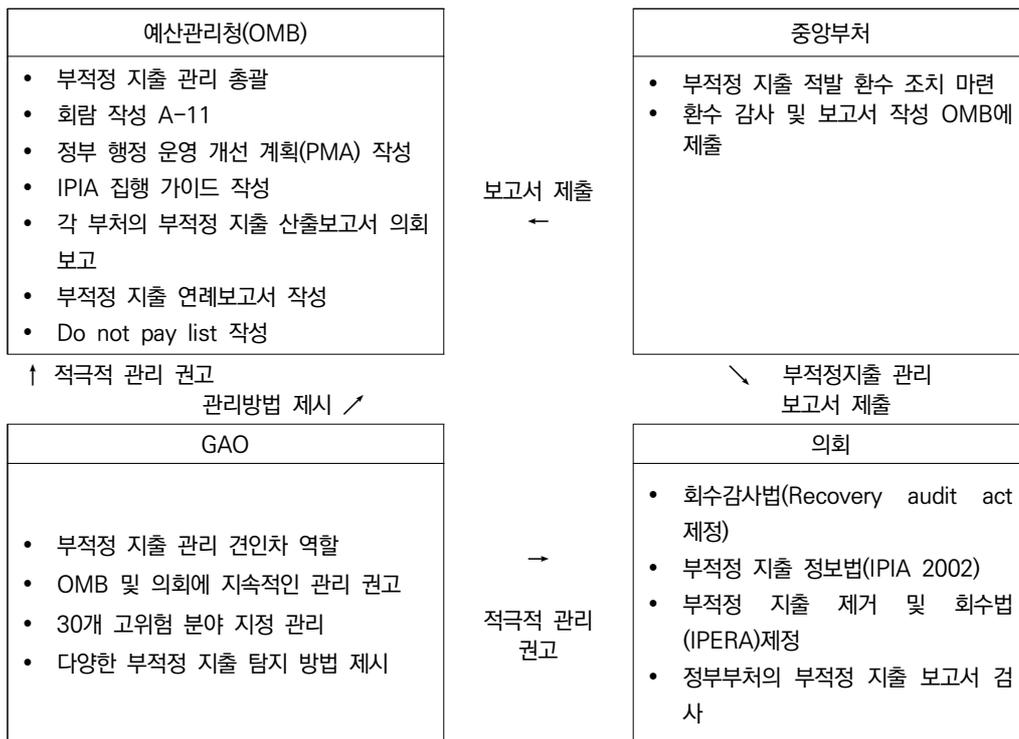
-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부적정 지출에 대한 측정 방법을 정하며,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한 계획 집행하며, 추정액과 부적정 지출액 감소 노력에 따른 감소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이외에도 부처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부처의 부적정 지출관리를 지원

□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모를 추정할 의무가 있음

-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지출 규모가 전체 사업 예산의 2.5%를 초과하거나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부적정 지출 추정액, 예상하는 회수 가능 금액, 회수 방법을 기술하여 성과보고서에 첨부함.
- 미국에서 부적정 지출 관리의 주체 및 역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그림 4-5] 부정수급 관리 방안



자료 : 오윤섭 외(2016, p.57) 발췌

다. 부정적 지출 관리 전략

- 미국의 부적정 지출 대응에 있어 예방을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음
 - 효과적인 부적정 지출 대응을 위해 유형별 부적정 지출 규모를 가능한 정확히 추계하고 주요 유형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오윤섭 외, 2016).
 - 따라서 각 연방정부는 부처 또는 제도 특성에 맞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OMB의 승인을 받아 부적정 지출 금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OMB와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OMB 회람 A-11에 의해 부적정 지출 규모가 전체 사업 예산의 2.5%를 초과하거나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부적정 지출 추정액, 예상하는 회수 가능 금액, 회수 방법 등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고해야 함(이오, 2011)
 - 부적정 지출정보에 대한 법률(IPIA, '02)에 의해 부적정 지출 추정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 등이 의무화 됨(오윤섭 외, 2009).
-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 등 부정적 지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예방 차원의 대책과 사후적 대책의 병행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지향
 - 미국 정부는 비리 또는 과실 등에 대해 적발보다는 방지(예방)에 초점을 두었으나 효율적으로 부정적 지출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오윤섭 외, 2009)
 - 예방 차원 방지대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지출감소, 간접적으로 부정시도 방지 등의 목표 달성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여기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점검을 통한 비리 적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마이닝 등 통계적 기법 활용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비리통제가 가능

3. 부정적 지출 현황과 대응 성과²⁴⁾

- 2018년 미국의 부적절한 정부지출금액은 약 1천 51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 보다 약 100억달러 증가한 금액임(GAO, 2019, p.250).
- 부적절한 정부지출금액은 과소수급(지급)과 과대수급(지급)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78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부적절 지급액을 추정
 - 부적절 지급액은 과대지급액이 1,390억달러, 과소지급액이 120억달러로 추정됨.
 - ‘고 위험 목록’에 해당하는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에 대한 부적절 지출액은 1,370억 달러임(PaymentAccuracy, accessed 2019.10.11.).
- 연도별로 부적절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은 2016년 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등락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4-10〉 2018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
| 모든 프로그램 | 150,660 | 118,982 |
| - 과대 지급 | 138,595 | - |
| - 과소 지급 | 12,066 | - |
| 최우선순위 프로그램 | 136,644 | 106,490 |

자료: PaymentAccuracy(paymentaccuracy.gov accessed 2019.10.11.)

〈표 4-11〉 연도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2012-2019)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추정) |
|--------------|---------|---------|---------|---------|---------|---------|---------|----------|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 | 107,681 | 105,921 | 124,607 | 136,951 | 144,413 | 140,871 | 150,660 | 118,982 |

자료: PaymentAccuracy(paymentaccuracy.gov accessed 2019.10.11.)

24) 원종학 외(2019)와 오윤섭 외(201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예산관리청(OMB)이 선정한 우선관리 프로그램 중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 지급액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4-12〉 연도별 미국의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2012-2019)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추정) |
|--|--------|--------|--------|--------|--------|--------|--------|--------------|
|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UI)) | 10,296 | 6,225 | 5,604 | 3,530 | 3,854 | 4,066 | 3,743 | 4,226 |
| 학생용자 (Direct Loan) | - | 1,056 | 1,532 | 1,284 | 3,868 | 3,863 | 3,753 | 3,896 |
| 연방정부 장학금 (Pell Grant) | 829 | 731 | 682 | 562 | 2,213 | 2,210 | 2,302 | 2,376 |
| 아동 건강보험 (CHIP) | 704 | 646 | 612 | 632 | 738 | 1,236 | - | - |
| 메디케이드 (Medicaid) | 19,235 | 14,376 | 17,492 | 29,125 | 36,253 | 36,731 | 36,250 | - |
| 메디케어 FFS (Medicare FFS) | 29,571 | 36,033 | 45,754 | 43,326 | 41,085 | 36,208 | 31,618 | 34,850 |
| 메디케어 파트C (Medicare Part C) | 13,100 | 11,767 | 12,229 | 14,117 | 16,183 | 14,352 | 15,554 | 20,090 |
| 메디케어 파트D (Medicare Part D) | 1,593 | 2,091 | 1,931 | 2,234 | 2,394 | 1,296 | - | - |
| 임대주택 지원 (RHAP) | 1,229 | 1,324 | 1,029 | 1,282 | 1,702 | - | - | - |
| 중소기업청 보증 허가 (7(a) Guaranty Approvals) | 233 | 511 | 605 | 848 | 167 | 234 | - | - |
| 연금제도 (OASDI) | 3,223 | 2,448 | 2,952 | 5,038 | 3,672 | 2,578 | 6,158 | 3,906 |
| 생활보조금 (SSI) | 4,738 | 4,335 | 5,107 | 4,765 | 4,201 | 5,020 | 4,757 | 4,133 |
| 근로장려세제 (EITC) | 12,600 | 14,500 | 17,700 | 15,600 | 16,763 | 16,232 | 18,443 | 18,814 |
| 학교 점심 급식 (FNS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Total Program) | 1,557 | 1,774 | 1,748 | 1,773 | 1,820 | 1,875 | - | - |
| 학교 아침 급식 (FNS School Breakfast Program (SBP) Total Program) | 752 | 831 | 923 | 875 | 890 | 958 | - | - |
| 보훈 보상 (VA Compensation) | - | 321 | 713 | 1,361 | 377 | 456 | - | - |
| 장기 서비스 및 지원 (VA Purchased Long Term Services and Support) | - | - | 123 | 875 | 1,179 | 1,890 | 2,059 | 2,119 |
| 지역사회 케어 (VA Community Care) | - | - | 311 | 2,143 | 3,587 | 5,258 | 7,998 | 8,074 |

자료: PaymentAccuracy(paymentaccuracy.gov accessed 2019.10.11.)

- 사회보장분야에서 2018년 현재 가장 많은 부적절한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그램은 ‘Medicaid Fee-for-service’로 총지출액²⁵⁾ 3,704억 달러 중 약 10%에 해당하는 약 362.5억 달러가 부적절한 지출로 추정됨.
 - 총지출액 3,893억 달러 규모인 ‘Medicare’ 프로그램은 총지출의 약 8.1%인 316.2억 달러가 부적절한 지출로 추정됨.
 - 지출액 대비 가장 높은 부적정 지출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은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로 총지출액 736억 달러 중 약 25%인 184.4억 달러가 부적절한 지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편, 부적절한 지급액 추이를 통해 사회보장분야의 부적정 대응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관리에 포함된 각 사업별로 그 추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사업별로 부적정 지출 대응에 대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6년 이후로 주로 Medicare 부문에 대한 부적정 지출 대응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사회보장분야의 경우 전체 지출과 부정적 지출 규모가 연동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5) 주요 오류 프로그램의 총지출 규모 :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총지출액 (\$) |
|---|-----------|
| Medicare Fee-for-service | 389,300 |
| Medicaid | 370,391 |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 73,589 |
| Medicare Advantage(Part C) | 191,923 |
|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RSD) | 910,009 |
| Supplement Security Income | 56,495 |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63,592 |
|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 | 94,057 |
| Pell Grants | 28,249 |
| Federal Crop Insurance | 13,734 |

자료: PaymentAccuracy ‘High-Error Programs’ (paymentaccuracy.gov accessed 2019.10.11.)

□ 확인된 부정수급액(PaymentAccuracy, accessed 2019.10.11.)

○ 적발하여 확인된 부정수급액은 52억달러임.

- 그 중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의한 적발 금액이 28.6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가 11.4억달러로 높음.

〈표 4-13〉 2018년 정부부처·기관별 확인된 부정수급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부정수급액 |
|------------------|-------|
| 보건복지부(HHS) | 2,860 |
| 국방부(DoD) | 1,138 |
| 농무부(USDA) | 219 |
| 철도 퇴직위원회(RRB) | 174 |
| 에너지부(DOE) | 139 |
| 노동부(DOL) | 133 |
| 주택도시개발부(HUD) | 121 |
| 사회보장국(SSA) | 111 |
| 조달청(GSA) | 97 |
| 보훈부(VA) | 64 |
| 국토안전부(DHS) | 36 |
| 재무부(Treasury) | 23 |
| 인사관리처(OPM) | 22 |
| 교육부(ED) | 16 |
| 국제개발청(USAID) | 9 |
| State | 7 |
| 연구재단(NSF) | 5 |
| 교통부(DOT) | 3 |
| 미국 세계연론기구(USAGM) | 2 |
| 내무부(DOI) | 1 |
| 산업부(DOC) | 1 |
| 법무부(DOJ) | 1 |
| 중소기업청(SBA) | 1 |
| 전체 | 5,186 |

자료: PaymentAccuracy(paymentaccuracy.gov accessed 2019.10.11.)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원인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원인은 1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서류 불충분에 의한 지

출액이 401억 달러,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한 행정 또는 관리 오류가 215억 달러, 기타 기관에 의한 행정/관리 오류 191억 달러, 정보 접근 불가로 인한 자격 입증 불가 184억 달러, 필요한 데이터 부재로 인한 자격 입증 불가 180억 달러 순으로 높았음.

- 즉, 미국에서 부적정 지출의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데이터의 문제와 행정오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수급자 측면에서는 서류 불충분의 경우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표 4-14〉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원인

(단위: 백만 달러)

| 유형 | 부적절 지출 금액 |
|--|-----------|
| 프로그램 설계 또는 구조적 문제 | 5,644 |
| 데이터 접근 불가로 인한 자격 입증 불가 | 18,446 |
| 필요한 데이터 부재로 인한 자격 입증 불가 | 18,040 |
| 사망 정보 확인 실패 | 966 |
| 재무 정보 확인 실패 | 634 |
| 제외 당사자 정보 확인 실패 | - |
| 재소자 정보 확인 실패 | 12 |
| 기타 자격 정보 확인 실패 | 4,332 |
| 연방 정부에 의한 행정 또는 과정 오류 | 12,770 |
| 주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행정 또는 과정 오류 | 21,542 |
| 기타에 의한 행정 또는 과정 오류 (참여기관, 의료제공자, 보조금 관리 조직) | 19,111 |
| 의학적 필요성 | 6,741 |
| 서류 불충분 | 40,102 |
| 기타 원인 | 2,319 |
| 전체 | 150,661 |

자료: PaymentAccuracy(paymentaccuracy.gov accessed 2019.10.11.)

4. 부정수급 추정방법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 관리 체계는 예산관리청의 지침(OMB Guidance Circular A-123, Appendix C)을 따름.

- 각 기관은 3년 주기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 지급 위험이 높은 사업

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연간 부적정 지급액을 추정함(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p.10).

- 부적정 지급 위험이 높은(significant improper payment) 사업은 총 연간 부적정 지급액이 (1) 전체 프로그램 지출의 1.5%를 초과하면서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또는 (2) 1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됨.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에는 사업의 신규 여부, 사업의 복잡성, 연간 지급 규모, 보조금 지급 주체, 사업 주요 내용(예산, 담당 부서, 절차 등)의 변경 사항, 담당자의 교육 수준, 기관 감사 내용이 포함됨(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pp.11-12).

○ 위험성 평가 결과 부적정 지급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회계 연도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추정치를 산출해야함(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pp.14-19).

- 첫 번째 단계: 통계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 설계
 - 연간 총 금액은 과대 지급액과 과소 지급액을 더한 총 합임.
 - 기관은 부적정 금액 추정을 위한 표본 추출과 추정 방법을 통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해야 하며, 문서화 하여 당해 6월 30일까지 OMB에 제출해야함.
- 두 번째 단계: 통계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 내용
 - 통계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에는 확률표본 추출, 부적정 지출 값에 대한 가정, 적절한 표본 규모, 정확성(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엄격함/통계적으로 유의함/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본 설계 문서, 추정 공식 문서, 방식의 업데이트와 변화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우선 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 선정

○ 예산관리청(OMB)는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이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우선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정함.

- 우선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은 추가 보고 의무를 지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p.25).

- 프로그램 맞춤 개선 방안
- 부적정 지출 방지 및 개선방안의 정기적 보고
- 부적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책 실행 보고

□ 미국의 부적정 지출은 부적정 지출 사유와 유형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

○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기관들이 부적정 지출의 발생 원인과 각 범주의 총액 대비 비율을 파악하게 하며, 이렇게 세분화된 범주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시정 조치와 집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OMB, 2018, p.28).

〈표 4-15〉 부적정 지출 유형 표

(단위: 백만 달러)

| 부적정 지출 원인 | | 부적정 지출 유형 | |
|---|--|-----------|--------------|
| | | 과대 지급 | 과소 지급 |
| 프로그램 설계 또는 구조적 문제 (Program Design or Structural Issue) | | | |
| 사실 증명 불가 (Inability to Authenticate Eligibility) | 데이터 접근 불가 (Inability to Access Data) | | |
| | 필요한 데이터 부재 (Data Needed Does Not Exist) | | |
| 식별 불가 (Failure to Verify) | 사망 자료 (Death Data) | | |
| | 재무 자료 (Financial Data) | | |
| | 제외 당사자 자료 (Excluded Party Data) | | |
| | 재소자 자료 (Prisoner Data) | | |
| | 기타 자격 정보 Other Eligibility Data (explain)) | | |
| 행정 또는 절차 오류 (Administrative or Process Errors Made by) | 연방 정부 (Federal Agency) | | |
| | 주 또는 지방정부 (State or Local Agency) | | |
| | 기타 (Administrative or Process Errors Made by: Other Party (e.g., participating lender, health care provider, or any other organization administering Federal dollars)) | | |
| 의학적 필요성 (Medical Necessity) | | | |
| 서류 불충분 (Insufficient Documentation to Determine) | | | X |
| 기타 원인 (Other Reason) | | | |

주: 모든 셀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지는 않음.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201, p.28). Table 1: Matrix of Improper Payment Categories (\$ in millions)

5. 부정수급 공표방법

- 각 기관의 연간 회계 보고서(agency financial reports)에 보고된 부적정 금액 추정치가 예산관리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웹사이트(paymentaccuracy.gov)에 집계되어 있음(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8, p.26).
- 웹사이트(paymentaccuracy.gov)를 통해 연간 부적정 지출 데이터 셋과 연방 재무 보고서(Federal Financial Reports), 보조금 위험 관리 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손실액, 부적정 지출 원인, 완화 전략, 기대 효과 등이 기재된 자료가 분기별로 업데이트 됨.
- 부적정 지출에 대한 보고 요건은 예산관리청의 지침(OMB Guidance Circular A-123, Appendix C)에 나타나 있음.
- 보고 요구 사항으로 다음 일정을 인지해야함(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p.23).
 -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 제출(1월 30일 또는 6월 30일), 보고 요청 철회(3월 31일), IPERA법 준수 기관 일반 감사 보고서 제출(5월 15일), IPERA법 미 준수 기관 감사 보고서 제출(6월 14일 또는 8월 13일), 과다지급 회수 감사 보고서 제출(11월 1일), OMB 데이터 요청(주로 10월 중순), 우선 관리 프로그램 보고 요건(분기 또는 반기)

제 5 장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제1절 주요 결과를 통한 개념적 접근

제2절 조사방안

5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

제1절 주요 결과를 통한 개념적 접근

1.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및 분류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조의 2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발생 현황 피해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됨
-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법률적 정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조사 범위)
 - 법률적 정의(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 이는 중앙부처의 354개 사업('19년 4월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록된 사업)은 물론 별도의 공단조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회보험과 같은 기금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 모두 해당됨
 - 하지만 약 5만 7천개로 추산²⁶⁾되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모두 포괄하

26) 정홍원 외(2017: 49-50)는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를 파악하였음

여 그 유형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및 예산 제약으로 불가능함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도별·급여지원형태별 특성 등에 근거한 유형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조사 방법도 실태조사가 아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그것을 취합하여 활용하는 빅 데이터 분석이 요구됨

□ 사회보장급여의 분류(유형화)

○ 사회보장급여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제도적 분류기준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임(표 2-2참조)

- 학술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지급대상에 균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사회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범위가 준 보편적이며 차등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사회수당으로 구분하기 모호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여들을 공공부조성 급여로 분류

- 법률상 정의와는 달리 실제 해당 제도들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 구분한다 하더라도 해당 제도 안에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보다 제도적 분류보다 실효성 있는 분류 기준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지원형태’라는 항목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시되어 있는 지원형태는 7개로 구성되어 있음(대여/감면, 바우처,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금, 현물)

- 위에 제시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분류기준²⁷⁾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음

27)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안전(관계부처 합동, 2018.2)으로 제출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
|-----------------|----------------------------|
| 1) 대여/감면-① | ① 이용자_현금(대여비용,비용감면,기회제공포함) |
| 2) 바우처-③ | ② 이용자_현물(물품) |
| 3) 시설입소-④, ⑥, ⑦ | ③ 이용자_바우처 |
| 4) 자원봉사 | ④ 공급자_시설운영지원 |
| 5) 프로그램-⑤ | ⑤ 공급자_사업(프로그램)단위지원 |
| 6) 현금-① | ⑥ 공급자_인건비지원 |
| 7) 현물-② | ⑦ 공급자_시설설비등지원 |
| *이용자, 공급자 구분 필요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지원형태를 이용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으로 구분
(이용자 지원 : 대여·감면, 바우처, 현금, 현물; 공급자 지원 :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 현금 : ①이용자_현금(대여비용, 비용감면, 기회제공)
- 대여/감면 : ① 이용자_현금
- 현물 : ②이용자_현물(물품)
- 바우처 : ③이용자_바우처
- 시설입소 : ④공급자_시설운영지원, ⑥공급자_인건비지원, ⑦공급자_시설설비등지원
- 프로그램 : ⑤공급자_사업(프로그램)단위지원
- 자원봉사 : ⑥공급자_인건비지원

- 지원형태 현황

- 이용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전체 사회보장급여의 73.4%인 260개 사업이며,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94개로 전체 사회보장급여의 26.6%를 차지
- 이용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4.1%)로 그다음은 공급자 지원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남(26.6%)

• 사회보장사업의 지원형태 현황

| 구분 | | 빈도 | 퍼센트(%) |
|--------|-------|-----|--------|
| 이용자 | 현금 | 156 | 44.1 |
| | 현물 | 51 | 14.4 |
| | 대여·감면 | 27 | 7.6 |
| | 바우처 | 26 | 7.3 |
| 이용자 소계 | | 260 | 73.4 |
| 공급자 | 시설입소 | 12 | 3.4 |
| | 프로그램 | 80 | 22.6 |
| | 자원봉사 | 2 | 0.6 |
| 공급자 소계 | | 94 | 26.6 |
| 합계 | | 354 | 100.0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19년 4월 기준) 활용

○ 이러한 분류기준을 결합하여 필요시 제도별·지원대상별·급여지원 형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표 제시 가능

- 제도별·지원대상별·급여지원 형태별 분류

| 제도별 | 지원대상 | 급여지원 형태 |
|----------|------|--------------|
| 사회보험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 바우처 |
| | 제공자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자원봉사 |
| 공공부조성 급여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제공자 | 바우처 |
| |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자원봉사 |
| 사회서비스 | 이용자 | 현금 |
| | | 현물 |
| | | 대여·감면 |
| | 제공자 | 바우처 |
| | | 시설입소 |
| | | 프로그램 자원봉사 |

2.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 개념과 범위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으로서의 부정수급의 개념

- 사회보장급여법상의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동 법에 근거한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파악하고 공표해야할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임
 - 협의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를 의미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조사해야할 부정수급을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보고 있음
- 오류나 실수 등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광의의 부정수급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 사후관리 파악과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보장기관에 따라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혼재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조직과 관리조직의 부정수급 사후관리는 협의 및 광의의 부정수급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수행 시 협의의 부정수급만을 따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정수급’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광의의 부정수급은 ‘오류 수급’**으로 **협의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명칭 할 것을 제안함
 - 이는 뒤에 제시되어 있는 유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수급자 기망과 공급자 부패를 부정수급으로, 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오류나 과실은 오류수급으로 분류하는 것임
 - 사회보장급여법상의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이후 공표할 주요 결과는 협의의 부정수급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실태조사로 파악되는 오류수급과 같은 광의의 부정수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

3.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유형화)

- 실태조사에서 제시할 부정수급 규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탑재되어 있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분류기준과 급여지원 형태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에 적용되는 유형화 기준은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규모 및 실태파악을 위해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유형화)를 적용
- 부정수급 유형화는 고의성 여부,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
 - 대분류 : 부정수급의 고의성에 따라 ‘고의성’, ‘비고의성’으로 구분
 - 중분류 : 고의성 여부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로 구분
- 하지만 사업별로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의성 판단’ 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형화 1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방식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유형화 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 유형화 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 대분류 | 부정행위 주체 | | 중분류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서비스 제공자 | 기망 |
| | 행정담당자 | | 부패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서비스 제공자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 | | 서비스 제공자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 유형화 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 유형 구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 | 중분류 | 소분류 |
| | 부정행위 주체 | | 주체간 공모여부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
| | | 서비스 제공자 | 없음 | 기망(공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기망 | 서비스 제공자 기망 |
| | 행정담당자 | 없음 | 기망(공모) |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 |
| | | | 기망 | 제공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있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부패(공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제공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서비스 제공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제공자 오류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 | | 서비스 제공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정 수급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실태조사 적용

- 유형화1 또는 유형화2는 중앙부처 소관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회보장급여 별 기본 집계표로 적용
- 유형화3 또는 유형화4는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집계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집계표로 적용 가능
- 이러한 집계표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코드를 매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시스템 활용은 2020년 실태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룰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향후 해당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개선 등에 활용

제2절 조사방안

1. 조사 방향

- 실태조사의 목적은 부정수급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
-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현황과 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통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을 조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즉, 방대한 사회보장분야의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피해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부정수급 현황과 피해사례에 대한 통계 작성이 필요

- 피해사례는 대상의 특수성을 제시하는 사례중심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피해 사례를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된 분석틀에 투입하여 사업별로 비교 가능한 공통적 속성을 제시하는 양적 방법으로 접근
- 실태조사의 특성상 대상들의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속성 또는 평균적 특성을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밝히는 변수중심방법(Variable-oriented method)의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피해사례는 부정수급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에 반영되는 형태로 활용되어야 하며, 분류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중요성이 크다면 이는 문헌 연구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

2. 조사 내용 및 대상사업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크게 ‘부정수급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 실태’로 구분
 - ‘부정수급 규모’는 사업별 부정수급의 유형별 현황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관리 실태’는 개별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의미함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 실태’는 개별사업 단위의 부정수급 규모와 관리 실태를 의미함.
 - 이는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별 집계표’와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실태 실태 조사표’를 통해 파악되며,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음

□ 대상사업

- 2020년 수행될 첫 번째 실태조사의 경우 시간 및 예산의 제약과 함께, 자치단체의 특수적 상황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보다는 정책 대상이 보편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 2020년 수행될 첫 번째 실태조사의 경우 정책 대상이 보편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4대 보험 등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조사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 즉,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의 조사 대상사업은 354개(‘19년 기준) 사회보장사업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4개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19년 기준)에 등재 되어 있는 354개의 사회보장사업의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조사
 - 보험 방식으로 가입자의 기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4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조사
-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는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사업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의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현금급여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 측면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실태 측면에서 가장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조사의 성과의 정책함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예산 규모 100억 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음

3. 조사대상 기관(작성기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사회보장급여의 사업은 총 354개이며, 354개 사업의 소관부처의 수는 21개이며, 담당과는 총 127개 과임

〈표 5-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사회보장급여 현황

| 구분 | 소관부처 | 소관 부서 수 | 사업 수 | 사업안내 및 매뉴얼 | | 부정수급 관리 사항 | |
|----|-----------|------------|----------------|---------------|---------------|---------------|---------------|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1 | 경찰청 | 1 | 1 | 1 | 0 | 0 | 1 |
| 2 | 고용노동부 | 10 | 27 | 12 | 15 | 10 | 17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 10 | 8 | 2 | 5 | 5 |
| 4 | 교육부 | 11 | 24 | 15 | 9 | 8 | 16 |
| 5 | 국가보훈처 | 8 | 38 | 12 | 26 | 3 | 35 |
| 6 | 국토교통부 | 6 | 14 | 6 | 8 | 5 | 9 |
| 7 | 금융위원회 | 2 | 4 | 1 | 3 | 0 | 4 |
| 8 | 기획재정부 | 1 | 2 | 0 | 2 | 0 | 2 |
| 9 | 농림축산식품부 | 5 | 8 | 8 | 0 | 6 | 2 |
| 10 | 대검찰청 | 1 | 1 | 1 | 0 | 1 | 0 |
| 11 | 문화체육관광부 | 5 | 6 | 2 | 4 | 2 | 4 |
| 12 | 방송통신위원회 | 1 | 1 | 1 | 0 | 0 | 1 |
| 13 | 보건복지부 | 37 | 139 (100.0) | 120 (86.3) | 19 (13.7) | 59 (42.4) | 80 (57.6) |
| 14 | 산림청 | 4 | 4 | 4 | 0 | 0 | 4 |
| 15 | 산업통상자원부 | 5 | 6 | 4 | 2 | 2 | 4 |
| 16 | 여성가족부 | 14 | 42 | 29 | 13 | 17 | 25 |
| 17 | 중소벤처기업부 | 3 | 8 | 4 | 4 | 1 | 7 |
| 18 | 통일부 | 3 | 11 | 2 | 9 | 2 | 9 |
| 19 | 해양수산부 | 2 | 3 | 1 | 2 | 1 | 2 |
| 20 | 행정안전부 | 3 | 3 | 2 | 1 | 1 | 2 |
| 21 | 환경부 | 2 | 2 | 0 | 2 | 0 | 2 |
| | 전체 | 127 | 354 (100.0) | 233 (65.8) | 121 (34.2) | 123 (34.7) | 231 (65.3)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19년 4월 기준) 활용

- 보장기관 당 사업수가 2개 이상이 보장기관(또는 주된 전달체계)

| 보장기관 | 사업수 | 보장기관 | 사업수 |
|----------------|-----|----------------|---------------|
| 시군구 | 100 | 국민연금공단 | 3 |
| 보훈지청 | 32 | 보훈처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3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3 | 통일부_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3 |
| 광역시도 | 12 | 한국정보화진흥원 | 3 |
| 근로복지공단 | 12 | 한국주택금융공사 | 3 |
| 복지부_보건소 | 8 | LH | 2 |
| 교육부_한국장학재단 | 6 | 산자부_한국에너지공단 | 2 |
| 시도교육청 | 6 | 여가부_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6 | 한국장학재단 | 2 |
| 고용센터(플러스센터포함) | 5 | 해수부_수협 | 2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3 | 합계 | 228 (64.4)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19년 4월 기준) 활용

□ 부정수급 규모'의 경우 중앙부처의 소관부처가, '부정수급 관리 실태'의 경우 각 사업의 보장기관(시군구청, 보훈지청, 보건소 등) 이 조사대상 기관임

- '부정수급 규모'의 조사대상 기관은 354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담당하는 21개 중앙부처의 127개 사업 소관과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부정수급 담당 부서에 대해 조사를 수행
- '부정수급 관리 실태'의 조사대상 기관은 250개 지자체(17개 광역시도, 233개 시군구청), 28개 보훈(지)청, 보건소(약 250개소) 등의 보장기관과 사회보험사업의 운영 또는 사후관리 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고용노동청)임
 - 조사대상 기관은 조사범위와 조사내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음('19.4월 기준)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범위 | | 조사대상 기관(작성기관) | 조사방법 |
|----------------------------|---------------|---|-------------------|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 (예산 등 기본정보 포함) | 354개 사회보장사업 | 21개 중앙부처의 127개 사업과 | 집계조사 (e-나라도움 활용) |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집계조사 (자체 시스템 활용) |
|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실태 | 보장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 250개(17개 광역시도, 233개 시군구) 지자체 | 실태조사표 조사 (조사원 취합) |
| | 지자체가 아닌 보장기관 | 보훈(지)청(6개 지방보훈청, 22개 보훈 지청), 보건소(전국 254개소), 17개 교육청 등 | |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 | |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규모) 집계자료 작성 기관

- 354개 사회보장급여 : 중앙부처 소관과
- 사회보험사업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연금급여실 급여조사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 의료기관지원실 · 요양심사실

- 고용보험 :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실질적 담당)

□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 조사 작성 기관

- 100억원 이상의 현금급여 : 시군구청, 보훈(지)청, 보건소, 교육청 등
- 사회보험사업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실 급여조사팀 - 지역본부(7개소, 연금지급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 의료기관지원실 · 요양심사실 - 지역본부(6개소, 보험급여2부 · 장기요양2부 등)
 - 고용보험 :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 지방고용청(6개청 부정수급 조사과)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 -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실질적 담당)

4.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조사 단계별 내용과 조사 종류 등에 달라짐. 또한 2020년 수행될 실태 조사에 대한 거버넌스 형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
 - 본 실태조사의 수행이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되면 조사 대상 범위와 조사표 발송 및 취합부문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다른 형태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음
-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축 형태에 따라 조사 방향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조사 단계별 내용과 조사 종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

□ 2단계 조사 실시(1단계 : 중앙부처, 2단계 : 보장기관)

- 1단계 조사는 중앙부처,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로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와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예산, 보장기관, 지원형태 등 확인)를 파악
 -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별 예산, 지원형태, 부정수급 규모 등을 바탕으로 2단계조사('부정수급 관리 실태')를 조사할 사업들을 선정(판별조사)
 - 1단계 조사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고 2단계 조사는 필요한 부문만 조사
-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에서 판별된 사업들의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해당 사업의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1단계 조사에서 부정수급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
 -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250개 지자체, 28개 보훈(지)청, 보건소(약 250개소) 등의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 종류 : 집계조사와 실태조사표 조사

- 집계조사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는 중앙부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집계조사를 활용하여 파악
 -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을 활용하고, 비국고보조금 사업은 해당 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또는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 1〉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행위 주체 | 중분류 | 환수결정 대상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환수건수 | 환수금액 | 제재부기금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 |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 |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 | | |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 | | | |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 2〉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행위 주체 | | 중분류 | 환수결정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실 환수건수 | 실 환수금액 | 제재부가금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부패 | |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 | | | |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 3〉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중분류 | | | 소분류 | 환수결정 | 실제 환수실적 | |
|----------------|-------|----------|--------|-----------------|----------------|---------|--|
| | 행위 주체 | 주체간 공모여부 | 중분류 | | | |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수요자 기망 | |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 서비스 공급자 | 없음 | 기망 | 서비스 공급자 기망 | | |
| | | | 있음 | 기망 |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모 | | |
| | 행정담당자 | 없음 | 부패 | 행정 부패 | | | |
| | | | 있음 | 부패 |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있음 | 부패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 | | 부패 | 공급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수요자 오류 | | | |
| | | 서비스 공급자 | 수급자 오류 | 서비스 공급자 오류 |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행정 오류 | | | |
| 고의 여부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 | | |
| | | 서비스 공급자 | 부적정 수급 | 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정 수급 |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출 | 부적정 지출 | | | |

- 모든 대상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실제 환수 현황을 작성
 - 환수 실적은 환수결정 대상 중 환수금액을 납부한 건수와 그 금액임

- <집계표 2>는 <집계표 1>에서 급여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로 다시 구분한 것이며, <집계표 3>은 행위주체간 ‘공모’를 고려한 것임
- 집계표 작성시 국고보조금사업은 ‘고의성 판단 불가’ 항목이 없음을 고려

○ 실태조사표 조사²⁸⁾

- ‘부정수급 관리 실태’에서 보장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 및 안내는 발주 부처가 담당하고 조사표 발송과 취합, 조사표 에디팅은 조사원을 통해 수행
- 조사내용이 비교적 어렵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상대의 조사이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숙련된 조사원 확보가 중요
- 파일럿 조사
 - 유형별 부정수급 집계표와 관리실태 조사표를 수정·보완 한 후 실제 조사 대상 중 일부를 선정하여 파일럿 조사를 실시(소관부서 3개과와 시군 구청 3개소의 16명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 파일럿 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수용성과 작성시간 그리고 조사표 및 조사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인 예비 조사표 작성에 활용
 - 조사결과
 - ◇ 조사대상 및 응답률 : 총대상자 16명 13명 응답(응답률 81.1%)
 - ◇ 조사기간 : 11/21-11/27
 - ◇ 조사 소요시간 : 10분~4시간, 최다빈도 1시간(6명)
 - 파일럿 조사 결과는 실태조사표 수정에 반영

- 21개 중앙부처의 총괄적인 관리실태와 21개 중앙부처 외의 별도의 부정수급 신고체계의 경우 문헌연구 및 자료(인터뷰 등) 수집을 통해 파악

5. 조사결과 제시 방법

□ 공표 방안

28) 실태조사 조사표 중 실태조사의 바탕이 되는 사업별 관리실태조사표(중앙부처 담당부서용,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용)를 부록 4에 수록함(해당 조사표는 파일럿 조사에 활용된 후 수정된 조사표임)

-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보고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
- 통계청 KOSIS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주요 지표(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등) 제시
 - 승인통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해당 실태조사가 행정조사이면서 단순한 집계결과의 수준을 넘는 경우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조사를 통해 생성한 마이크로 데이터(식별 변수가 삭제된 분석용 데이터)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www.open.go.kr)이나 해당 실태조사의 수탁용역기관에서 해당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 및 배포할 수 있음

참고문헌 <<

- 강희정, 김운묵, 홍재석, 이성우(2010),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2016. 1. 29.). 더 간간하게 더 강력하게! 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2월 1일 ~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고강도 합동단속.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2018. 4. 4).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시작.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19.7.19) 한국경제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 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 기사 관련 설명.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판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2013.12.26).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 관계부처 합동. (2014.12.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2604에서 2019.2.7.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14.12.9.).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
- 관계부처 합동. (2015.4.1.).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 관계부처 합동. (2018.1.11.).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관계부처 합동. (2018.2. 9).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5885호, 2018.12.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138호, 2015.1.19.,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4호, 2018.12.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29호, 2014.5.30.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6367호, 2019.4.23. 일부개정.

- 국고보조금관리단. (2019a). 「부정수급 사례 DB」 구축을 위한 부정수급 유형 분류(안) 마련.
- 국고보조금관리단. (2019b).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구축 관련 시스템 연계 논의.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2018. 8. 21.)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 점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73040> 에서 2019. 10. 8. 인출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2019.3.11.).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8847&currPageNo=38&confId=4&conConfId=4&conTabId=27&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에서 2019.10.8. 인출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2019.2.26.).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8712&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에서 2019.10.8. 인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 신고안내’. www.acrc.go.kr에서 2019.10.8. 인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 (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 권구형. (2014). 미국의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 방지 사례. 해외 고용리포트 2014분기. 한국고용정보원.
- 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박상철, 김미곤, 여유진, 선우덕, 신현웅, 김문길, 정희선, 길현중, 허용창, 신우경, 민지혜. (2013).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규정 제1099호, 2018.12.10.개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조사 업무처리 규정. 규정 제1094호, 2018.10.12.개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kcomwel/info/docu.jsp에서 2019.11.12. 인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dis/dis.jsp>에서 2019.11.12. 인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에서 2019.11.12. 인출.
- 기획재정부 정보관리분석팀. (2019.10.31.). 「e나라도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450에서 2020.1.14. 인출.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14.1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2604에서 2019.10.7. 인출
- 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오혜인. (2015).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강혜규, 고제이, 김태완, 남찬섭, 노대명, 문성현, 박정훈, 신현웅, 우해봉, 이민경, 이삼식, 이윤경, 정경희, 정연택, 정은희, 정형선, 진미운, 최효진. (201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1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눔.
- 김영선. (2017). 사회서비스 이상결제 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6100079#>에서 2019. 10. 8. 인출
- 김주섭, 제5장 고용보험기구 및 전달체계, 우리나라 고용보험 발전경과: 1부 고용보험10년사 1995-2005. (pp. 1-451). 노동부.
- 노대명, 이현주, 임완섭, 전지현, 김근혜, 박광준, 고이시 노리미치, Dan Finn, Nail Lunt, Jon Hudson. (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검찰청 반부패부. (2014.12.4.). ‘검·경 국고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 결과’. 대검찰청 보도자료. <http://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586432>에서 2019.10.8. 인출.

- 박민영. (2013). 미국의 의료비 부정청구 방지법제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4(1), pp. 181-219.
-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김은정, 이봉주, 이인재. (2016).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13.12.26.). '복지누수 원천차단 위해 범부처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294940에서 2019.10.7. 인출
-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a).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고안건)
- 보건복지부. (2018b).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 보건복지부. (2019b).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c).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cpms.childcare.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에서 2019. 10. 10. 인출
- 사회보장정보원. (2019). [2019-07] 확인조사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
http://www.ssis.or.kr/lay1/bbs/S1T804C814/A/281/view.do?article_seq=119520에서 2019.10.7. 인출.
- 신영석, 강희정, 이기주, 박금령. (2015).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용문. (2011). 호주 사회보장 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황규진, 이삼식, 최효진, 이용하, 김태홍, 정용문, 김미숙, 최정수, 신의철, 박성희, 정경희, 김효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윤섭, 안창보, 이 오, 김진수, 김찬수, 원성연, 이혜승. (2009). 사회복지관련 비리에 대한 주

- 요 선진국의 접근방법 비교. Executive Report[2009-05], 감사연구원 연구부
- 오윤섭, 함영진, 강지원, 이세미, 이규환, 하현상, 박종선, 장호석, 박상철. (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각지대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학, 허경선, 강동익. (2019). 보조금(정부지출사업) 부정수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 오. (2011). 미국·영국의 부적정지출 관리체계 비교. 감사원 감사연구원.
- 이재원, 양기용, 서재호, 김준현 (2011), 전자바우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보육료 아이사랑카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제 2권 (2011.6), pp. 39-76
- 이재원. (20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전개과정과 활성화 과제.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현주, 강혜규, 서문희, 정경희, 유동철, 정재훈, 이승경, 노연정, 현명이.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임완섭, 전지현, 김근혜, 심창학,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 (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미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김현경, 김인춘, Theo Papadopoulos, Antonios Roumpakis, 박형준. (2016).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오윤섭, 김문길, 황주희, 윤여선, 김명중, 강지원, 박형준, 이규환. (2017).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공공부조 제도(소득보장)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영미. (2013). '13년 기획조사 대비 조사대상 발굴 통계모델 개발연구. 서울: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정홍원, 박종서, 김동진, 강지원, 김진희, 윤자은. (2017).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현승, 고대명, 박문수, 이재원, 이종구. (2012).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서울:산업연구원
- 표준국어대사전. <https://dict.naver.com>에서 2019.11.4.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2019a).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협조자료('19. 8. 8 한국고용정보원 간담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9b).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범운영 및 활용 계획.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e나라도움 소개'

- www.kpfis.or.kr/lay1/S1T264C265/contents.do에서 2020.1.14. 인출.
- 한국재정정보원. (2019).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교재(예치형).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do?nttId=N_00091353&snsList=Y&backBtnText=LIST&backBtnFnc=f_go_list에서 2019.5.27. 인출.
- 한승희. (201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리·기능 개선방안: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정정보원.
- 함영진, 박선미, 김경준, 이대영, 장영미, 추병주, 이인수, 최현수, 이준영, 김철주, 김성욱, 정영철, 김영은. (20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발전 방향 마련 연구. 서울: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Arthur, D. (2015). Changes to welfare system compliance and ICT systems. *In Budget Review 2015-16* (pp. 138-139): Parliament of Australia.
-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0). *Centrelink Fraud Investigations: Attorney-General's Department*
- Bourn, J. (2008). *Progress in tackling benefit fraud: National Audit Office, Great Britain.*
- Cetnrelink. (2008). *Centrelink Fraud Control Plan 2008-10*: Centrelink.
- Commonwealth Ombudsman. (2019). *Centrelink's Automated Debt Raising and Recovery System*: Commonwealth Ombudsman.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0). Tackling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and tax credits systems Fraud and Error Strategy Division: HM Revenue & Customs and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5). Tackling fraud, error and ebt in the benefits and tax credits system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8).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Background information and methodology I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Ed.). Newcastle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9).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2018/19 estimates. I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Ed.).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a). *2016-17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b). *Digital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8). *2017-18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a). *90,000 Australians make the call to help stamp out welfare, Medicare and Child Support fraud*.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b). *Centrelink data matching activiti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c). *A guide to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d). Our department. Retrieved from <https://www.humanservices.gov.au/organisations/about-us/our-department>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e). Owing money for a Centrelink debt. Retrieved from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topics/owing-money-centrelink-debt/30701>
- Easton, S. (2019). Human Services beefs up digital forensics and data-matching capabilities to target fraud. *The Mandarin*. Retrieved from <https://www.themandarin.com.au/113218-human-services-beefs-up-digital-forensics-and-data-matching-capabilities-to-target-fraud/>
- Farrell, P., & McDonald, A. (2019). Centrelink robo-debt system is 'extortion', says former tribunal member.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06-27/centrelink-robo-debt-system-extortion-former-tribunal-member/11252306>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9). *Criminal Code Act 1995*.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8). IMPROPER PAYMENTS: Actions and Guidance Could Help Address Issues and Inconsistencies in Estimation Processes, GAO-18-377, May 2018.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Financial Audit: U.S. Government's

- Fiscal Years 2018 and 201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GAO-19-294R, March 28, 2019.
- Goldie, C. (2019). Robodebt is an abuse of power. It should never have seen the light of day.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aug/28/robo-debt-is-an-abuse-of-power-it-should-never-have-seen-the-light-of-day>
- Henriques-Gomes, L. (2019). Homeless Australians given financial penalties under Coalition's welfare regime.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an/31/homeless-australians-given-financial-penalties-under-coalitions-welfare-regime>
- Hickey, S. (2019). Centrelink's Flawed Robo-Debt System is Killing Our Most Vulnerable. Retrieved from <https://www.sydneycriminallawyers.com.au/blog/centrelinks-flawed-robo-debt-system-is-killing-our-most-vulnerable/>
- HM Government. (2012). Tackling Fraud and Error in Government: A report of the Fraud, Error and Debt Taskforce Cabinet Office: HM Government
- Legal Aid NSW. (2010). *Early intervention and diversion as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prosecution*: Legal Aid NSW.
- Lindley, J., Jorna, P., & Smith, R. G. (2012). *Fraud against the Commonwealth 2009-10 annual report to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Martin, S. (2016). Welfare debt squad hunts for \$4bn in over-payments. *The Austral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australian.com.au/nation/politics/welfare-debt-squad-hunts-for-4bn-in-overpayments/news-story/e19c5b0d4a39aa07364a41269fdc11c9>
- McClure, P. (2015). A New System for Better Employment and Social Outcomes - Interim Report of the Reference Group on Welfare Reform to the Minister for Social Service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National Audit Office. (2015). Fraud and error stocktak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and MH Revenue & Customs.
- National Audit Office. (2015). Understanding fraud and error in benefits and tax credits: a primer. London: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and HM Revenue

- & Customs.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OMB Guidance Circular A-123, Appendix C. M-18-20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June 26, 2018. <https://paymentaccuracy.gov/high-priority-programs/> accessed 2019.12.12.
- PaymentAccuracy.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paymentaccuracy.gov, from 2019.10.11.
- Prenzler, T. (2011a). *Detecting and Preventing Welfare Fraud*: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enzler, T. (2011b). *Welfare fraud in Australia: Dimensions and issue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enzler, T. (2012). *Responding to welfare fraud: The Australian experien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enzler, T. (2016a). Reducing welfare fraud: An Australian case study. *Security Journal*, 30(2), 569-584.
- Prenzler, T. (2016b). Welfare fraud prevention in Australia: A follow-up study.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18(3), 187-203.
-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Design, scope, cost-benefit analysis, contracts awarded and implementation associated with the Better Management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itiative*: Parliamentary of Australia.
- Social Security Rights Network. (2017). 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 merges with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Retrieved from <http://www.nssrn.org.au/social-security-rights-review/social-security-appeals-tribunal-merges-with-the-administrative-appeals-tribunal/>
- Tunley, M. (2011). Need, greed or opportunity? An examination of who commits benefit fraud and why they do it. *Security Journal*, 24(4), 302-319.
- Whiteford, P.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Whyte, D., & Wiegatz, J. (2016). Neoliberalism, moral economy and fraud. In *Neoliberalism and the moral economy of fraud* (pp. 13-28). Routledge.

- Wilcock, S. (2014). Official Discourses of the Australian 'Welfare Cheat'.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26(2), 177-194.
- Wilcock, S. (2016). Policing Welfare: Risk, Gender and Criminal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me, Justice and Social Democracy*, 5(1), 113-130.
- Wilcock, S. (2018). Why prosecutions for welfare fraud have declined in Australia. *The Conversation*.
- Wilson, P., Walker, J., & Mukherjee, S. (1986). *How the public sees crime: an Australian survey*.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부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관부처별 보장기관 현황(19년4월 기준)

□ 보장기관 및 보장기관별 사업 수

| | 보장기관 | 보장기관수 | 사업수 |
|-----------|-----------------|-------|-----|
| 경찰청 | 경찰청 | 1 | 1 |
| | 소계 | 1 | 1 |
| 고용노동부 | 고용부 | 1 | 1 |
| | 고용센터(플러스센터포함) | 1 | 5 |
| | 근로복지공단 | 1 | 12 |
| | 근로복지공단_고용센터 | 1 | 1 |
| | 근로복지공단_국민연금공단 | 1 | 1 |
| | 시군구 | 1 | 1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 6 |
| | 소계 | 7 | 27 |
| | 없음 | - | 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부_광역시도 | 1 | 1 |
| | 과기부_통신사업자 | 1 | 1 |
| | 광역시도 | 1 | 2 |
| | 한국장학재단 | 1 | 1 |
| | 한국정보화진흥원 | 1 | 3 |
| | 소계 | 5 | 10 |
| 교육부 | 없음 | - | 6 |
| | 교육부 | 1 | 1 |
| | 교육부_국립특수학교등 | 1 | 1 |
| | 교육부_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 1 | 1 |
| | 교육부_한국장학재단 | 1 | 5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 | 1 |
| | 시군구 | 1 | 2 |
| | 시도교육청 | 1 | 6 |
| | 한국장학재단 | 1 | 1 |
| 소계 | 8 | 24 | |
| 국가보훈처 | 보훈지청 | - | 32 |
| | 보훈처_대한법률구조공단 | 1 | 1 |
| | 보훈처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 | 3 |
| | 시군구 | 1 | 1 |
| | 제대군인지원센터 | 1 | 1 |
| 소계 | 4 | 38 | |
| 국토교통부 | 없음 | - | 1 |
| | LH | 1 | 2 |
| | LH_SH | 1 | 1 |
| | LH_SH_지방공사 | 1 | 1 |
| | 국토부_기금수탁은행 | 1 | 1 |
| | 국토부_우리은행 | 1 | 1 |

| | 보장기관 | 보장기관수 | 사업수 |
|---------------|-----------------|-------|-----|
| | 국토부_주택도시시기금수탁은행 | 1 | 1 |
| | 국토부_지자체_LH | 1 | 1 |
| | 시군구 | 1 | 4 |
| | 시군구_LH | 1 | 1 |
| | 소계 | 9 | 14 |
| 금융위원회 | 금융위 | 1 | 1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1 | 3 |
| | 소계 | 2 | 4 |
| 기획재정부 | 없음 | - | 1 |
| | 관할세무서 | 1 | 1 |
| | 소계 | 1 | 2 |
|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부_한국장학재단 | 1 | 1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1 |
| | 국민연금공단 | 1 | 1 |
| | 농림부_NH농협생명 | 1 | 1 |
| | 농협중앙회 | 1 | 1 |
| | 복지부_읍면동 | 1 | 1 |
| | 시군구 | 1 | 2 |
| | 소계 | 7 | 8 |
| 대검찰청 | 지방검찰청 | 1 | 1 |
| | . | 1 | 1 |
| 문화체육관광부 | 없음 | - | 3 |
| | 문체부_문화예술위원회 | 1 | 1 |
| | 문체부_한국문화원연합회 | 1 | 1 |
| | 시군구 | 1 | 1 |
| | 소계 | 3 | 6 |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_시청자미디어재단 | 1 | 1 |
| | 소계 | 1 | 1 |
| 보건복지부 | 없음 | - | 18 |
| |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 1 | 1 |
| | 광역 시도 | 1 | 6 |
| | 국립재활원 | 1 | 1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12 |
| | 국민연금공단 | 1 | 2 |
| | 대한적십자 | 1 | 1 |
| | 보건복지부 | 1 | 1 |
|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 | 1 |
| | 복지부 | 1 | 4 |
| | 복지부_권역재활병원 | 1 | 1 |
| | 복지부_노인보호전문기관 | 1 | 1 |
| | 복지부_대한적십자사 | 1 | 1 |
| | 복지부_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 | 1 |
| | 복지부_보건소 | 1 | 8 |
| | 복지부_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1 | 1 |
| | 복지부_한국실명예방재단 | 1 | 1 |
| 복지부_한국척수장애인협회 | 1 | 1 | |
| 사회보장정보원 | 1 | 1 | |

| | 보장기관 | 보장기관수 | 사업수 | |
|----------------|-------------------|-------------------|-----|---|
| | 시군구 | 1 | 72 | |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1 | 1 | |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1 | 1 | |
| | 한국장애인개발원 | 1 | 1 | |
| | 한국장애인도우미연합회 | 1 | 1 | |
| | 소계 | 23 | 139 | |
| 산림청 | 없음 | - | 1 | |
| | 광역시도 | 1 | 1 | |
| | 시군구 | 1 | 1 | |
| | 지방산림청 | 1 | 1 | |
| | 소계 | 3 | 4 | |
| 산업통상자원부 | 없음 | - | 2 | |
| | 산자부_한국가스안전공사 | 1 | 1 | |
| | 산자부_한국에너지공단 | 1 | 2 | |
| | 한국에너지공단 | 1 | 1 | |
| | 소계 | 3 | 6 | |
| 여성가족부 | 없음 | - | 11 | |
| | 검찰_경찰 | 1 | 1 | |
| | 광역시도 | 1 | 3 | |
|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1 | 1 | |
| | 시군구 | 1 | 9 | |
| | 여가부 | 1 | 3 | |
| | 여가부_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 | 2 | |
| | 여가부_무료법률구조사업수탁자 | 1 | 1 | |
| | 여가부_민혼모부자지원사업수행기관 | 1 | 1 | |
| | 여가부_양육비이행관리원 | 1 | 1 | |
| | 여가부_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 | 1 | |
| | 여가부_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1 | 1 | |
| | 여가부_전국가정폭력상담소 | 1 | 1 | |
| | 여가부_주거지원 운영기관 | 1 | 1 | |
| | 여가부_주민센터등 | 1 | 1 | |
| | 여가부_청소년교류센터 | 1 | 1 | |
| | 여가부_청소년성문화센터 | 1 | 1 | |
|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 1 | 1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 1 | |
| | 소계 | 18 | 42 | |
| | 중소벤처기업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1 | 1 |
|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1 | 3 |
| | | 중기부_(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1 | 1 |
| 중기부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 | 1 | |
| 중기부_중장년기술창업센터 | | 1 | 1 |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등 | | 1 | 1 | |
| 소계 | | 6 | 8 | |
| 통일부 | 없음 | - | 2 | |
| | 시군구 | 1 | 1 | |
| | 통일부 | 1 | 2 | |

258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 보장기관 | | 보장기관수 | 사업수 |
|-----------|-------------------|-------|-----|
| | 통일부_남북하나재단 | 1 | 1 |
| | 통일부_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1 | 1 |
| | 통일부_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 | 3 |
| | 통일부_하나원 | 1 | 1 |
| | 소계 | 6 | 11 |
| 해양수산부 | 시군구 | 1 | 1 |
| | 해수부_수협 | 1 | 2 |
| | 소계 | 2 | 3 |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1 | 3 |
| | 소계 | 1 | 3 |
| 환경부 | 시군구 | 1 | 2 |
| | 소계 | 1 | 2 |
| 전체(중복제외시) | | 94 | 354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19년 4월 기준) 활용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 아동안전지킴이 | 현금 |
| | 사회직기업과 | 사회직기업일자리창출사업 | 현금 |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프로그램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현물 |
| | 고용서비스정책과 |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 프로그램 |
| | 고용보험기획과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 대여/감면 |
| | 퇴직연금복지과 |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여/감면 |
| | 장애인고용과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현금 |
| | 산재보상정책과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현물 |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현금 |
|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현금 |
| | 장애인고용과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 현금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여/감면 |
|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 현금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 현금 |
|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현금 |
| |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현금 |
| | 인적자원개발과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대여/감면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시설입소 |
| | 장애인고용과 | 보조공학기기지원 | 현물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 현금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 현물 |
| | 여성고용정책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현금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 현물 |
|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현금 |
| 여성고용정책과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현금 | |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용자·지원 | 현물 | |
| 산재보상정책과 | 진폐근로자보호 | 현금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활용지원팀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현물 |
| | 통신경쟁정책과 | 이동통신요금감면 | 대여/감면 |
| | 정보활용지원팀 | 사랑의그린PC보급 | 현물 |
| | 정보활용지원팀 |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 프로그램 |
| | 통신경쟁정책과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
| | 정보활용지원팀 | 웹정보접근성제고 | 프로그램 |
| | 미래인재양성과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현금 |
| | 정보활용지원팀 | 온라인 정보화교육 | 프로그램 |
| | 정보활용지원팀 | 고령층 정보화교육 | 프로그램 |
| | 정보활용지원팀 | 장애인 정보화교육 | 프로그램 |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바우처 | 바우처 |
| | 교육복지정책과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바우처 |
| | 교육복지정책과 |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장학제도) | 현금 |
| | 방과후돌봄정책과 | 초등돌봄교실 | 프로그램 |
| | 교육기회보장과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자원봉사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 정보지원과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프로그램 |
| | 유아교육정책과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바우처 |
| | 학생건강정책과 | 급식비 | 현물 |
| | 이러닝과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현물 |
| | 교육복지정책과 | 고교 학비 지원 | 현금 |
| | 대학재정장학과 | 인문100년장학금 | 현금 |
| | 특수교육정책과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프로그램 |
| |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 프로그램 |
| | 대학재정장학과 | 국가장학금(I, II유형) | 현금 |
| | 대학재정장학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현금 |
| | 대학재정장학과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현금 |
| | 대학재정장학과 |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 현금 |
| | 교육복지정책과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현금 |
| |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현금 |
| | 교육기회보장과 | 탈북학생 교육지원 | 프로그램 |
| | 특수교육정책과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바우처 |
| | 학교생활문화과 | WEE 클래스 상담지원 | 프로그램 |
| 방과후돌봄정책과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프로그램 | |
| |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프로그램 |
| 국가보훈처 | 보상정책과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현금 |
| | 복지정책과 |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내항여객선, KTX등) | 대여/감면 |
| | 보훈의료과 |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프로그램 |
| | 복지운영과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현금 |
| | 복지운영과 |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프로그램 |
| | 보상정책과 | 무공영예수당 | 현금 |
| | 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현금 |
| | 보상정책과 |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현금 |
| | 공훈관리과 | 영주귀국정착금 | 현금 |
| | 생활안정과 |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 프로그램 |
| | 선양정책과 | 손자녀가계지원비 | 현금 |
| | 제대군인일자리과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 현금 |
|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대군인 대부지원 | 현금 |
| | 생활안정과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 현금 |
| | 생활안정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대여/감면 |
| | 복지정책과 | 재해위로금지급 | 현금 |
| | 보상정책과 | 참전명예수당 | 현금 |
| | 보상정책과 | 재해보상금 | 현금 |
| | 보상정책과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현금 |
| | 보상정책과 | 6.25자녀수당 | 현금 |
|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현금 |
| | 제대군인일자리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 바우처 |
| | 선양정책과 |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현금 |
| | 보상정책과 | 사망일시금 | 현금 |
| | 생활안정과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대여/감면 |
| | 보훈의료과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현물 |
| | 보상정책과 |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 현금 |
| 보상정책과 | 보상금 | 현금 |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 보상정책과 | 고엽제환자2세수당 | 현금 |
| | 제대군인일자리과 | 증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 프로그램 |
| | 복지운영과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대여/감면 |
| | 보훈의료과 | 고엽제특별지원 | 현금 |
| | 복지운영과 | 양로지원 | 시설입소 |
| | 선양정책과 | (독립유공자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 현금 |
| | 보훈의료과 | 위탁병원진료 | 프로그램 |
| | 생활안정과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 현금 |
| | 생활안정과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 현금 |
| | 보훈의료과 | 보훈병원진료 | 프로그램 |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행복주택 공급 | 현물 |
| | 주택기금과 | 주거안정 월세대출 | 현금 |
| | 주택기금과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현금 |
| | 공공주택지원과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현물 |
| | 공공주택총괄과 | 장기전세주택공급 | 현물 |
| |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 현금 |
| | 주택기금과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여/감면 |
| | 공공주택총괄과 |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 현물 |
| | 주택건설공급과 | 준주택지원(용자) | 대여/감면 |
| | 공공주택지원과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 현물 |
| | 공공주택총괄과 | 국민임대주택공급 | 현물 |
| | 주거복지정책과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현금 |
| | 공공주택총괄과 | 영구임대주택공급 | 현물 |
| 공공주택지원과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현물 | |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대여/감면 |
| | 가계금융과 | 버팀목대출보증 | 대여/감면 |
| | 가계금융과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현금 |
| | 은행과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 현금 |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국세감면(34종) | 대여/감면 |
| | 소득세제과 | 근로·자녀장려금 | 현금 |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 대여/감면 |
| | 축산경영과 | 학교우유급식 | 현물 |
| | 농촌복지여성과 |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 프로그램 |
| | 농촌복지여성과 |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 현금 |
| | 농촌복지여성과 |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 현금 |
| | 농촌복지여성과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 대여/감면 |
| | 식량정책과 | 양곡할인 | 현물 |
| 대검찰청 | 재해보험정책과 | 농업인안전보험 | 현금 |
| | 피해자인권과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현금 |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창작준비금 지원 | 현금 |
|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통합문화이용권 | 바우처 |
| | 도서관정책기획단 | 큰글자책 보급 및 활성화 지원 | 대여/감면 |
| | 지역문화정책과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 프로그램 |
| | 체육진흥과 | 스포츠강좌이용권 | 바우처 |
| 예술정책과 |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 프로그램 |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시청각장애이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 현물 |
| | 아동권리과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프로그램 |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현물 |
|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바우처 |
| | 자립지원과 | 청년희망키움통장 | 현금 |
| | 인구정책총괄과 | 다함께 돌봄 사업 | 현물 |
| |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수당 지급 | 현금 |
| | 보험정책과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현금 |
|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현물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틀니·치과임플란트 | 현물 |
| | 아동권리과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프로그램 |
| | 출산정책과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바우처 |
| | 출산정책과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현금 |
| | 치매정책과 | 노인 안검진 및 개인수술 | 현금 |
| | 보육사업기획과 | 시간제보육 | 바우처 |
| |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 | 현금 |
| | 질병정책과 | 원폭피해자지원 | 현금 |
| | 노인정책과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프로그램 |
| | 보육사업기획과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 바우처 |
|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현금 |
|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바우처 |
|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현금 |
| | 인구정책총괄과 | 지역아동센터 지원 | 현물 |
| | 아동복지정책과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현금 |
| | 장애인정책과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프로그램 |
| |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현금 |
| | 건강정책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프로그램 |
| | 지역복지과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현물 |
| | 아동학대대응과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 시설입소 |
| | 보육사업기획과 |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현금 |
| | 질병정책과 | 한센인 피해자지원 | 현금 |
| |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 프로그램 |
| | 국민연금정책과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현금 |
| | 결핵조사과 |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현금 |
| | 출산정책과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현금 |
| | 장애인서비스과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프로그램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 프로그램 |
| | 만성질환예방과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현금 |
| | 건강증진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현물 |
| | 출산정책과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현금 |
| | 치매정책과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현금 |
| | 요양보혜제도과 |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현물 |
| 출산정책과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 현물 |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 장애인서비스과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현금 |
| | 예방접종관리과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프로그램 |
| | 노인정책과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현물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현금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현금 |
| | 정신건강정책과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 현금 |
| | 정신건강정책과 |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 프로그램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 프로그램 |
| | 보육사업기획과 | 다문화보육료지원 | 바우처 |
| | 출산정책과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바우처 |
| | 아동권리과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현금 |
| | 장애인서비스과 | 언어발달지원사업 | 바우처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연금 | 현금 |
| | 자립지원과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 현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 현금 |
| | 보육사업기획과 | 가정양육수당 지원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현금 |
|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프로그램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현금 |
| | 보육사업기획과 | 장애아보육료지원 | 바우처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현물 |
|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재활서비스 | 바우처 |
| | 아동복지정책과 | 입양비용지원 | 현금 |
| | 보육기반과 | 방과후보육료지원 | 바우처 |
| | 보육기반과 |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바우처 |
| | 노인지원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현금 |
| | 아동복지정책과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현금 |
| | 노인정책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바우처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 현물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주거지원 | 현금 |
| | 요양보협제도과 | 시설급여 | 시설입소 |
| | 요양보협제도과 | 재가급여 | 프로그램 |
| | 요양보협제도과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 대여/감면 |
| | 요양보협제도과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현금 |
| | 요양보협운영과 | 사할린한인지원 | 현금 |
| | 자립지원과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현금 |
| | 아동복지정책과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현금 |
| | 아동복지정책과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현금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대여/감면 |
| | 건강증진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현물 |
| | 아동권리과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프로그램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생계지원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현금 |
| | 아동권리과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현금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장애비지원 | 현금 |
| | 출산정책과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장제급여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해산급여 | 현금 |
| | 보험급여과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 현금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현물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요양비) | 현금 |
|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활동지원 | 바우처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일반형 일자리 지원 | 현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수당 | 현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아동수당 | 현금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현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 현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 현금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현물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현금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현금 |
|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의료급여) | 현금 |
|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현금 |
| | 희귀질환과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대여/감면 |
| | 출산정책과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현금 |
| | 보험정책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대여/감면 |
| | 건강정책과 |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현물 |
| | 국민연금정책과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현금 |
| | 국민연금정책과 | 노후준비서비스 | 프로그램 |
| |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 | 노인정책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현물 |
| | 노인정책과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 현물 |
| | 노인정책과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프로그램 |
|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바우처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 프로그램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 프로그램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적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 프로그램 |
| | 아동학대대응과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프로그램 |
| | 질병정책과 | 암환자의료비지원 | 현금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프로그램 |
| | 공공의료과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현금 |
| | 질병정책과 | 재가암관리 | 현물 |
| | 아동권리과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 현금 |
| | 아동학대대응과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현금 |
| | 자립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운영 | 프로그램 |
| | 출산정책과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현물 |
| | 질병정책과 | 암검진사업 | 현물 |
| | 보육정책과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현금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대여/감면 |
|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현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의료비지원 | 대여/감면 |
| | 장애인정책과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 현금 |
| | 자립지원과 | 노숙인등 복지지원 | 시설입소 |
| 산림청 | 사회서비스자원과 | 의사상자지원 | 현금 |
| | 산림복지정책과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 |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보호지원단 | 현금 |
| | 산림자원과 | 공공산림가꾸기 | 현금 |
| 산업통상자 원부 | 도시숲경관과 | 산림서비스도우미 | 현금 |
| | 에너지지원정책과 | 에너지바우처 | 바우처 |
| | 재생에너지산업과 | 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 현금 |
| | 재생에너지산업과 |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급자리주택신재생보급) | 현금 |
| | 자원안보정책과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및고효 율보일러교체지원) | 현물 |
| 여성가족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현물 |
| | 에너지안전과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현물 |
| | 가족지원과 | 아이돌봄 서비스 | 대여/감면 |
| | 청소년정책과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 바우처 |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내일이룸학교 운영 | 현금 |
| | 권익보호과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프로그램 |
| |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프로그램 |
| | 가족지원과 | 양육비 이행 윈스톱 종합서비스 | 프로그램 |
| | 가족지원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현금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 프로그램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프로그램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 시설입소 |
| | 권익보호과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시설입소 |
| | 청소년보호환경과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시설입소 |
| |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프로그램 |
| | 청소년보호환경과 |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 폰과의존치료비지원) | 프로그램 |
| | 가족지원과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현금 |
| | 권익기반과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 프로그램 |
| | 가족정책과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프로그램 |
| 가족지원과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현금 | |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 프로그램 | |
| 가족지원과 |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 현물 |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청소년특별지원 | 현금 | |
|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프로그램 | |
| 다문화가족과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프로그램 | |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 프로그램 | |

| 소관부처명 | 소관부서명 | 사업명 | 지원형태 |
|----------|----------------|---|-------|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프로그램 |
| | 청소년활동진흥과 |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 프로그램 |
| |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프로그램 |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프로그램 |
| |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활동지원 | 프로그램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프로그램 |
| | 가족정책과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프로그램 |
| | 가족지원과 |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프로그램 |
| | 권익보호과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 프로그램 |
| | 권익보호과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프로그램 |
| | 청소년보호환경과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프로그램 |
| | 권익보호과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 프로그램 |
| | 권익지원과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 | 현물 |
| | 권익지원과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 현금 |
| | 권익정책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현금 |
| | 가족지원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입소 |
|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국제교류 | 프로그램 | |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 시설입소 |
| | 정책총괄과 | 여성기업판로지원 | 프로그램 |
| | 정책총괄과 | 여성창업지원 | 프로그램 |
| | 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지원(용자) | 현금 |
| | 소상공인정책과 | 장애인 창업접포 지원사업 | 대여/감면 |
| | 창업생태계조성과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시설입소 |
| | 소상공인정책과 | 장애인창업육성 | 프로그램 |
| 소상공인정책과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 시설입소 | |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 현금 |
| |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현물 |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 프로그램 |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 현금 |
| | 이산가족과 | 남북피해자 지원 | 현물 |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 프로그램 |
| |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현금 |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현금 |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 현금 |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 프로그램 |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 현금 | |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 자원봉사 |
| | 연안해운과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대여/감면 |
| | 소득복지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현금 |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풍수해보험료 지원 | 대여/감면 |
| | 지역일자리경제과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현금 |
|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현금 |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현물 |
| | 환경피해구제과 | 석면피해구제급여 | 현금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19년 4월 기준) 활용

부록 3 호주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If not delivered: Locked Bag 7834 Canberra BC, ACT 2610



Reference: [REDACTED]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entrelink



Ms. Linda Steven
[REDACTED]

03 October 2016

Dear Ms. Steven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income

We have received information from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bout your employment income. This shows that the amount reported to them is different to the amount you told us. To make sure you have been paid correctly, we need you to confirm your employment income information.

What you need to do

1. Please check the enclosed employment income information.
2. Confirm your employment income online **before 21 October 2016**.

You can do this by going to **my.gov.au** and signing in to access your Centrelink online account. If you do not have a myGov account, you can create one and link it to your Centrelink online account.

What you need to know

If you do not confirm your employment income online by **21 October 2016**, we will update your details using the enclosed employment income information.

If the employment income you told us is not correct, this may result in a debt that you will need to repay. A 10% recovery fee may be added to the debt amount. You will be advised of the outcome in writing.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income, please go to **humanservices.gov.au** and search for 'employment income'.

Yours sincerely

Director, Earned Income
Customer Compliance

자료: Reynolds(2017)

부록 4 : 실태조사표

부록 4-1 사회보장급여별 실태조사표 : 중앙부처 소관부서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 조사 예비조사표(중앙부처용)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은 사회복지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0년 수행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중 부정수급 관리실태조사의 예비조사입니다. 본 예비조사는 실태조사표를 점검하고 조사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검토의견)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조사표의 완성도 및 2020년 실시될 실태조사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조사표 질적 및 완성도 제고에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조사주관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조사시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 연구위원

○○○ 연구원

※ 조사표 작성과 검토의견 작성 방법

- 조사표의 작성은 객관식의 경우 해당 문항에 알맞은 보기를 질문 옆 괄호 안에 기입하시고 주관식의 경우 응답을 기입하는 네모 칸 또는 괄호 안에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조사표는 조사표가 송부된 이메일로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예비조사표에 한글의 ‘**메모 넣기**’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해당 문항의 적절성 및 오류 사항, 조사문항 수정사항, 질문 추가, 기타 의견 등입니다.

○ **조사표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사표 마지막 문항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전체 구성의 논리성 판단과 오류 사항, 문항추가, 해당 사업과 소관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표 수정에 대한 건의 사항 등 조사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앙부처 소관과 사업명단

| 소관부처 (담당국) | 소관부서명 | 소관부서 사업 기입란 | |
|--|--------|-------------|-----|
| | | 사업 ID | 사업명 |
| 보건복지부 (국) | _____과 | 1 | 기입란 |
| | | | |
| | | | |
| | | | |
| 소관부서(과) 소속 인원 : _____명 / 부정수급 관리 관련 담당자 수 : _____명 | | | |

〈본 조사에서 부정수급의 정의〉

본 조사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의미함.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함께 행정적 측면의 오류와 실수 그리고 수급자 측면의 실수 등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임.

② 아니오 →

Q4-2. 별도의 부정수급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① 있음 → (Q4-3)

② 없음 → (Q4-6)

Q4-3. 사업지침 또는 별도의 부정수급 관련 지침의 발간주기 형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기 발간 →

Q4-4. 지침의 발간 주기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후→Q4-5)

(발간주기 : 연간 회)

② 수시적 발간 → (Q4-5)

Q4-5. 사업지침 또는 별도의 부정수급 관련 지침에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
(응답후 → Q5)

| 부정수급 관련 내용 | 보기 | |
|------------------------------|------|------|
| 부정수급의 확인 또는 조사 방법 | ① 있음 | ② 없음 |
| 고의성 판단 기준 | ① 있음 | ② 없음 |
| 관련 연계정보 확인방법(각종 전산시스템 및 DB등) | ① 있음 | ② 없음 |
| 환수(징수, 반환 포함) 절차 | ① 있음 | ② 없음 |
| 중점 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 ① 있음 | ② 없음 |
| 신고자 보호 관련 절차 또는 규정 | ① 있음 | ② 없음 |
| 관련 교육 실시 또는 참가 | ① 있음 | ② 없음 |

Q4-6. 부정수급 관련 사업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미미해서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③ 보조금 환수에 관련 일반지침을 활용하므로 별도 지침 불필요

④ 기타 (기입 :)

Q5. 해당 사업에 대한(또는 관련된)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 또는 사업지침 (매뉴얼, 안내서 등)과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은 Q6~Q7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① 있음'으로 응답하신 경우 우측 기입란에 해당사항을 상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 조치사항에 대한 출처(조항, 쪽번호 등)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이 다른 법(또는 사업안내)을 준용하는 경우도 표기

| 유형 | 조치사항 | 여부 | 해당(관련) 법 또는 사업지침명 | 내용 |
|------------|---|----------------|-------------------|----|
| 금전적 제재 | 환수(징수) | ① 있음→ ② 없음↓ | | |
| | 과태료 | ① 있음→ ② 없음↓ | | |
| | 과징금 | ① 있음→ ② 없음↓ | | |
| | 벌칙금 | ① 있음→ ② 없음↓ | | |
| | 제재부가금 | ① 있음→ ② 없음↓ | | |
| | 기타 | ① 있음→ ② 없음↓ | | |
| 비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종사원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 ·자격취소, 폐쇄 등 | ① 있음→ ② 없음↓ | | |
| 형벌 | 재산형(벌금·과료 ·몰수), 자유형(징 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① 있음→ ② 없음↓ | | |

Q6. 귀 부서는 해당 사업의 환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Q6-3

Q6-2. 위의 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Q6-3으로)

- ② 아니오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작아서
 -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③ 집행기관 소관사항으로 별도 파악 불필요
 - ④ 부서의 인력부족
 - ⑤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 ⑥ 기타 (기입 :)

Q6-3.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실제 환수 현황(제재부가금 포함)을 별첨된 집계조사표에 작성해 주십시오.

(※ 환수 파악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시는 내용으로, 만약 사업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작성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집계조사표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Q7. 환수를 제외한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의 부정수급 조치 실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입해 주십시오

(단위: 건, 만원)

| 유형 | 조치사항 | Q7-1 부과 건수 | Q7-2 부과 금액 | Q7-3 미파악 사유 |
|------------|---|--------------------|---------------|----------------|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 | | |
| | 과징금 | | | |
| | 범칙금 | | | |
| | 기타 | | | |
| 비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종사원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폐쇄 등) | | 해당 없음 | |
| 형벌 | 형법상의 재산형·자유 형·명예형 | 재산형 (벌금·과료·몰수) | 해당 없음 | |
| | |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 | |
| | | 명예형 (자격상실·자격정지) | | |

Q7-3. 해당 조치 실적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작아서
-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③ 집행기관 소관사항으로 별도 파악 불필요
- ④ 부서의 인력부족
- ⑤ 해당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 ⑥ 기타 (기입 : _____)

Q8.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부정수급 유형,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까? ()

Q8-1. 해당 전산 시스템의 명칭과 관리기관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

| | | |
|---|------|--|
| 1 | 시스템명 | |
| | 관리기관 | |
| 2 | 시스템명 | |
| | 관리기관 | |

Q8-2. 부정수급 현황 자료 파악 시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십니까? () (응답후 → Q9)

- ① 예
- ② 아니오

② 아니오 → (Q9)

Q9. 집행기관으로부터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Q9-1. 집행기관의 보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① 예(정기적)
- ② 아니오(비정기적)

Q9-2. 2018년 기준(18.1.1~12.31) 집행기관의 연간 보고 횟수(응답후 → Q10)
(연간 회)

- ② 아니오 ➡ Q9-3. 보고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해서
 - ②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파악하기 때문에
(※ Q8.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선택 불가)
 - ③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④ 집행기관 소관사항이므로
 - ⑤ 기타 (기입 :)

Q10. 해당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수급자(제공 받는 자)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
- ② 행정담당자의 부패
- ③ 수급자의(제공받는 사람)의 실수(오류)
- ④ 행정담당자의 실수(오류)
- ⑤ 수급자와 행정 담당자의 공모
- ⑥ 기타()

Q11.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

- 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 ② 자격, 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엄격한 선정 과정 적용
- ③ 부정수급 관련 복지업무 인력 확대
- ④ 부정수급 신고방법 홍보
- ⑤ 부정수급 적발(단속, 지도점검 등) 강화
- ⑥ 보다 적극적인 환수조치
- ⑦ 처벌 강화(벌칙, 과태료 등)
- ⑧ 정보공유 등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력
- 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⑩ 관련 규정 정비
- ⑪ 기타()

Q12. 귀하의 부서는 해당사업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민간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12-1. 2018년 기준('18.1.1~12.31) 교육훈련 제공 횟수 및 참석자 수
(제공회수 : 연간 회) (참석자수 : 연간 총 명)

② 아니오 → (Q13)

Q13. 귀하의 부서는 부정수급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대응 수준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교육에 부서원을 참석시킨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13-1. 2018년 기준('18.1.1~12.31) 교육훈련 참여 횟수 및 참석자 수
(참여회수 : 연간 회) (참석자수 : 연간 총 명)

② 아니오 → (Q14)

Q14. 귀하의 부서는 부정수급 예방과 감소 등을 위해 해당사업의 관련 보조사업자 및 제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14-1. 2018년 기준('18.1.1~12.31) 지도점검 횟수 및 기관 수
(지도점검 회수 : 연간 회) (지도점검 기관수 : 총 개소)

② 아니오 → (Q15)

③ 비해당 → (Q15) ※ 해당 사업에 보조사업자 및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Q15. 해당 사업의 보장기관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명 :

※ 보장기관 :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보장기관 예시 : 광역시도, 시군구청, 읍면동 등 (만약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소관부서 외에 보장기관이 없는 경우 중앙부처 소관부서명을 기입)

Q16. 위(Q15)에 응답된 보장기관은 해당사업의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Q17

Q16-1.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후 Q17)

② 아니오 →

기관명

※ 예시 : 각종 공사와 공단, 지역사회활센터, 보훈(지)청, 진흥원, 각종 재단 등

Q17. 본 사업이 해당되는 예산서 상의 사업단위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Q17-1로)

① 단위사업

② 세부사업

③ 내역사업

④ 기타()

Q17-1. 본 사업의 예산서 상의 사업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후 17-2로)
(복수의 사업이 합쳐진 사업인 경우, 모든 사업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예산상 사업명 | <input type="text"/> |
|---------|----------------------|

Q17-2. 본 사업의 예산(2019년)을 기입해 주십시오.

(복수의 사업이 합쳐 경우 합산된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Q18.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

Q18-1. 국고보조금상의 사업명은 무엇입니까?

① 예 →

사업명

② 아니오 → Q19 응답후

Q19. 본 예비조사에 소요된 시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간이 아닌 실제 투입된 시간만 기입)

총 시간

- 조사표 종료 -

부록 4-2 사회보장급여별 실태조사표 :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 조사 예비조사표(지자체용)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은 사회복지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0년 수행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중 부정수급 관리실태조사의 예비조사입니다. 본 예비조사는 실태조사표를 점검하고 조사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검토의견)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조사표의 완성도 및 2020년 실시될 실태조사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조사표 질적 및 완성도 제고에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조사주관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조사시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본 조사에서 부정수급의 정의〉

본 조사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은 광의의 개념을 의미함.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함께 행정적 측면의 오류와 실수 그리고 수급자 측면의 실수 등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임.

사업별 관리실태 조사표 : 집행조직(지자체) 대상

※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소관 국·실과 팀·과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사업명 | | 소관부서(과) | |
| 지자체명 | | 소관부서(팀·계) | |
| 소관 국·실 | | 부서원 수 | 과 _____명, 팀 _____명 |

Q1. 귀 부서(과)의 해당사업 업무 담당자는 총 몇 명입니까?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현원 기준)

| | |
|--|---|
| | 명 |
|--|---|

Q2. 해당사업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Q2-1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은 몇 명입니까?

| | |
|--|---|
| | 명 |
|--|---|

② 없음 → Q3

Q3. 귀 기관은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별도의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 센터·신고홈페이지, 부정수급 담당 부서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있음 → Q3-1. 신고체계 명칭 기입 (기입 후 → Q4)

기입란

| |
|--|
| |
|--|

② 없음 → Q4

Q4. 지난 1년간('19.1.1~12.31) 해당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5.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집행기관용 해당사업 부정수급 관리지침 또는 부정수급 관리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침(사업안내)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Q5-1. 해당 관리지침의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후 → Q5-2)
(기입란 :)

② 없음 → Q6

Q5-2. 사업지침 또는 별도의 부정수급 관련 지침이 부정수급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 | | | | |
|--------------|--------|----|-----|-----------|
| 1 | 2 | 3 | 4 | 5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Q6.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Q6-1. 부정수급 확인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① 예 →
- ① 확인 대상자의 비협조 ② 기관 간 정보 연계의 미흡
 - ③ 제한적인 업무 권한 ④ 인력부족 또는 업무과중
 - ⑤ 민원 및 소송 등의 두려움 ⑥ 사업수행 관련 미흡한 전산화
 - ⑦ 매뉴얼이 없거나 대응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⑧ 기타 ()

② 아니오 → Q7

Q7. 해당 사업의 확인된 부정수급에 대해 법령 또는 사업안내 규정된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Q8

Q7-1. 법령 또는 사업안내 규정대로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아니오 →

- ①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불분명해서
- ② 관련 조치사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 ③ 제한적인 업무 권한
- ④ 인력부족 또는 업무과중
- ⑤ 민원 및 소송 등의 부담
- ⑦ 기타()

③ 비해당 → Q8

※ 해당 사업 관련 법률 또는 사업안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환수·징수), 과태료, 벌칙(징역, 벌금, 구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 관련 법률 또는 사업안내가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

Q8. 해당 사업의 환수 등 부정수급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Q9

Q8-1. 위의 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아니오 →
(응답 후 Q9로)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작아서
-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③ 집행기관 소관사항으로 별도 파악 불필요
- ④ 부서의 인력부족
- ⑤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 ⑥ 기타 (기입 :)

Q9.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을 아래(Q9-1~Q9-4)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Q9-1.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의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의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단위 : 건)

| 총계 (접수건수) | 접수 경로 | | | | | | | | |
|--------------|-------|----|----|-------------|--------------|------------------|--------------|--------------|----|
| | 제보* | | 감사 | 상담· 가정방문 | 제공기관 현장점검 | 정보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이상결제 모니터링 | 타기관의 조사의뢰 | 기타 |
| | 내부 | 외부 | | | | | | | |
| | | | | | | | | | |

* 해당 지자체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내부)와 복지로 국민신문고 등 외부에서 접수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입

Q9-2.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 실시한 부정수급 조사건수와 그로 인한 환수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환수 실적은 환수결정 대상 중 환수금액을 납부한 건수와 그 금액임).

(단위 : 건, 만원)

| 조사건수 | 환수 결정 대상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실 환수건수 | 실 환수금액 | 제재부가금 |
| | | | | | |

※ 아래 집계표는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집계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주요 사업에 적용
 〈선택〉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실제 환수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환수 실적은 환수결정 대상 중 환수금액을 납부한 건수와
 그 금액임)

〈집계표 1〉

(단위 : 건, 만원)

| 유형 구분 | | | 규모 | | | | |
|--------------|-------|--------|---------|------|----------|--------|-------|
| 대분류 | 행위 주체 | 중분류 | 환수결정 대상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실 환수건수 | 실 환수금액 | 제재부가금 |
| 고의성 | 수급자 | 기망 | | | | | |
| | 행정담당자 | 부패 | |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수급자 오류 | | | | | |
| | 행정담당자 | 행정 오류 |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부적정 수급 | | | | | |
| | 행정담당자 | 부적정 지출 | | | | | |

〈집계표 2〉

(단위 : 건, 만원)

| 대분류 | 행위 주체 | | 중분류 | 환수결정 | | 실제 환수 실적 | | |
|-----------------|-------|---------|------------|------|------|----------|--------|-------|
| | | | | 결정건수 | 결정금액 | 실 환수건수 | 실 환수금액 | 제재부가금 |
| 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기망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부패 | | | | | |
| 비고의성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수급자 오류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행정 오류 | | | | | |
| 고의성 판단 불가 | 수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부적정 수급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 | | | | | |
| | 행정담당자 | | 부적정 지 출 | | | | | |

Q9-4.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의 부정수급 조치 실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단위: 건, 만원)

| 유형 | 조치사항 | | 대상 구분 | 부과 건수 | 부과 금액 | |
|---------|--|--------------------|-------|-------|-------|-------|
| 수사·고발 | 수사의뢰 건 | | 수급자 | | 해당 없음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 고발건수 | | 수급자 | | 해당 없음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 | 수급자 | |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 과징금 | | 수급자 | |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 범칙금 | | 수급자 | |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 기타 | | 수급자 | |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비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종사원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폐쇄 등) | | 수급자 | | 해당 없음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형벌 | 형법상의 재산형·자유형·명예형 | 재산형 (벌금·과료·몰수) | 수급자 | |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 |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 | 수급자 | | 해당 없음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 | | 명예형 (자격상실·자격정지) | | 수급자 | | 해당 없음 |
| | | | | 제공자 | | |
| | | | | 행정담당자 | | |

Q10. 해당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① 수급자(제공 받는 자)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
- ② 행정담당자의 부패
- ③ 수급자의(제공받는 사람)의 실수
- ④ 행정담당자의 실수(오류)
- ⑤ 수급자와 행정 담당자의 공모
- ⑥ 기타()

Q11.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

- 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 ② 자격, 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엄격한 선정 과정 적용
- ③ 부정수급 관련 복지업무 인력 확대
- ④ 부정수급 신고방법 홍보
- ⑤ 부정수급 적발(단속, 지도점검 등) 강화
- ⑥ 보다 적극적인 환수조치
- ⑦ 처벌 강화(벌칙, 과태료 등)
- ⑧ 정보공유 등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력
- 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⑩ 기타()

Q12. 귀하의 부서는 부정수급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대응 수준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교육에 부서원을 참석시킨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 Q12-1. 2019년 기준('19.1.1~12.31) 교육훈련 참여 횟수 및 참석자 수
 (참여회수 : 연간 회) (참석자수 : 연간 총 명)
- ② 아니오 → (Q12)

Q13. 귀하의 부서는 부정수급 예방과 감소 등을 위해 해당사업의 관련 보조사업자 및 제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 Q12-1. 2019년 기준(19.1.1~12.31) 지도점검 횟수 및 기관 수
- ① 예 → (지도점검 회수 : 연간 회) (지도점검 기관수 : 총 개소)
- ② 아니오 → (Q13)
- ③ 비해당 → (Q13) ※ 해당 사업에 보조사업자 및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Q14. 본 예비조사에 소요된 시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작성기간이 아닌 실제 투입된 시간만 기입) 총 시간

- 조사표 종료 -

부록 4-3 지방자치단체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 조사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 조사 예비조사표(지자체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복지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0년 수행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중 부정수급 관리실태조사의 예비조사입니다. 본 예비조사는 실태조사표를 점검하고 조사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검토의견)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조사표의 완성도 및 2020년 실시될 실태조사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조사표 질적 및 완성도 제고에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조사주관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조사시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임완섭 연구위원

안영 연구원 (044-287-8171)

〈본 조사에서 부정수급의 정의〉

본 조사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의미함.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함께 행정적 측면의 오류와 실수 그리고 수급자 측면의 실수 등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임.

Q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감사조직 외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까?()

(※ 감사조직·통합조사관리팀·사업부서 이외에 부정수급을 담당하는 실·국, 팀·과, 센터, 위원회 등)

① 예 → (Q2-1)

② 아니오 → (Q3)

Q2-1.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은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자체 조직입니까?
아니면 외부위탁 기관입니까? ()

① 자체 조직

② 외부위탁 기관

Q2-2. 해당 조직의 명칭과 조직 출범시점(연·월)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조직명 | |
| 출범시점 | _____년 _____월 |

Q2-3. 해당 조직의 규모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개의 국·과·팀(계)로 구성되었는지 와 해당 조직의 인원수 기입

| | | | | | | | | |
|------|----------------------|---|----------------------|---|----------------------|----|----------------------|---|
| 조직구성 | <input type="text"/> | 국 | <input type="text"/> | 과 | <input type="text"/> | 인원 | <input type="text"/> | 명 |
|------|----------------------|---|----------------------|---|----------------------|----|----------------------|---|

Q2-4. 해당 조직(기구)에서 수행하는 부정수급 관련 업무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기입란 |
|-----|

부록 4-4 공단본부용 부정수급 관리 실태 조사표

공단본부의 부정수급 관리 담당부서 및 사업 명단

| 소관 공단 | 소관부서명 | 소관부서의 사업 기입란 | |
|--|----------|--------------|-----|
| | | 사업 ID | 사업명 |
| ○○○○○○공단 _____(실) _____(국) | _____(과) | | 기입란 |
| | _____(팀) | | |
| | | | |
| | | | |
| 담당과 소속 인원 : _____명 / 담당 팀 소속 인원 : _____명 | | | |

〈본 조사에서 부정수급의 정의〉

본 조사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의미함.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함께 행정적 측면의 오류와 실수 그리고 수급자 측면의 실수 등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임.

사업별 관리실태 조사표 : 공단본부의 부정수급 관리 담당부서

※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응답시점은 11월(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금) 사업명 | 소관 (실·국) | 소관 부서(과·팀) |
|----|----------|----------|------------|
| 기입 | | _____(실) | _____(과) |
| | | _____(국) | _____(팀) |

Q1. 귀 부서의 해당사업 업무 담당자는 총 몇 명입니까?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현원 기준, '과' 기준이며 '과'가 없을 경우 '팀' 기준으로 작성)

명

Q4-5. 사업지침 또는 별도의 부정수급 관련 지침에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
 (응답후 → Q5)

| 부정수급 관련 내용 | 보기 | |
|------------------------------|------|------|
| 부정수급의 확인 또는 조사 방법 | ① 있음 | ② 없음 |
| 고의성 판단 기준 | ① 있음 | ② 없음 |
| 관련 연계정보 확인방법(각종 전산시스템 및 DB등) | ① 있음 | ② 없음 |
| 환수(징수, 반환 포함) 절차 | ① 있음 | ② 없음 |
| 중점 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 ① 있음 | ② 없음 |
| 신고자 보호 관련 절차 또는 규정 | ① 있음 | ② 없음 |
| 관련 교육 실시 또는 참가 | ① 있음 | ② 없음 |

Q4-6. 부정수급 관련 사업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미미해서
-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③ 보조금 환수에 관련 일반지침을 활용하므로 별도 지침 불필요
- ④ 기타 (기입 : _____)

Q5. 해당 사업에 대한(또는 관련된)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 또는 **사업지침** (매뉴얼, 안내서 등)과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은 Q6~Q7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① 있음'으로 응답하신 경우 우측 기입란에 해당사항을 상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 조치사항에 대한 출처(조항, 쪽번호 등)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이 다른 법(또는 사업안내)을 준용하는 경우도 표기

| 유형 | 조치사항 | 여부 | 해당(관련) 법 또는 사업지침명 | 내용 |
|------------|---|----------------|-------------------|----|
| 금전적 제재 | 환수(징수) | ① 있음→ ② 없음↓ | | |
| | 과태료 | ① 있음→ ② 없음↓ | | |
| | 과징금 | ① 있음→ ② 없음↓ | | |
| | 벌칙금 | ① 있음→ ② 없음↓ | | |
| | 제재부가금 | ① 있음→ ② 없음↓ | | |
| | 기타 | ① 있음→ ② 없음↓ | | |
| 비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종사원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 ·자격취소, 폐쇄 등 | ① 있음→ ② 없음↓ | | |
| 형벌 | 재산형(벌금·과료 ·몰수), 자유형(징 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① 있음→ ② 없음↓ | | |

Q6. 귀 부서는 해당 사업의 환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Q6-3

Q6-2. 위의 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Q6-3으로)

- ② 아니오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작아서
 -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③ 집행기관 소관사항으로 별도 파악 불필요
 - ④ 부서의 인력부족
 - ⑤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 ⑥ 기타 (기입 :)

Q6-3.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실제 환수 현황(제재부가금 포함)을 별첨된 집계조사표에 작성해 주십시오.

(※ 환수 파악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시는 내용으로, 만약 사업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작성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집계조사표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Q7. 환수를 제외한 해당 사업의 지난 1년간('19.1.1~12.31)의 부정수급 조치 실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입해 주십시오

(단위: 건, 만원)

| 유형 | 조치사항 | Q7-1 부과 건수 | Q7-2 부과 금액 | Q7-3 미파악 사유 |
|------------|---|---------------|---------------|----------------|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 | | |
| | 과징금 | | | |
| | 범칙금 | | | |
| | 기타 | | | |
| 비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종사원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폐쇄 등) | | 해당 없음 | |
| 형벌 | 재산형 (벌금·과료·몰수) | | 해당 없음 | |
| |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 | | |
| | 명예형 (자격상실·자격정지) | | | |

Q7-3. 해당 조치 실적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작아서
- ②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③ 집행기관 소관사항으로 별도 파악 불필요
- ④ 부서의 인력부족
- ⑤ 해당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 ⑥ 기타 (기입 : _____)

Q8.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부정수급 유형,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까? ()

Q8-1. 해당 전산 시스템의 명칭과 관리기관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예 → | 1 | 시스템명 | |
| | | 관리기관 | |
| | 2 | 시스템명 | |
| | | 관리기관 | |

Q8-2. 부정수급 현황 자료 파악 시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십니까? () (응답후 → Q9)

- ① 예
- ② 아니오

② 아니오 → (Q9)

Q9. 집행기관으로부터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Q9-1. 집행기관의 보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① 예(정기적)
- ② 아니오(비정기적)

Q9-2. 2018년 기준(18.1.1~12.31) 집행기관의 연간 보고 횟수(응답후 → Q10)
(연간 회)

② 아니오 ➡

Q9-3. 보고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해서
- ②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파악하기 때문에
(※ Q8.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선택 불가)
- ③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은 관행 때문에
- ④ 집행기관 소관사항이므로
- ⑤ 기타 (기입 :)

Q10. 해당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수급자(제공 받는 자)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
- ② 행정담당자의 부패
- ③ 수급자의(제공받는 사람)의 실수(오류)
- ④ 행정담당자의 실수(오류)
- ⑤ 수급자와 행정 담당자의 공모
- ⑥ 기타()

Q11.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

- 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 ② 자격, 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엄격한 선정 과정 적용
- ③ 부정수급 관련 복지업무 인력 확대
- ④ 부정수급 신고방법 홍보
- ⑤ 부정수급 적발(단속, 지도점검 등) 강화
- ⑥ 보다 적극적인 환수조치
- ⑦ 처벌 강화(벌칙, 과태료 등)
- ⑧ 정보공유 등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력
- 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⑩ 관련 규정 정비
- ⑪ 기타()

Q12. 귀하의 부서는 해당사업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민간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12-1. 2018년 기준('18.1.1~12.31) 교육훈련 제공 횟수 및 참석자 수
(제공회수 : 연간 회) (참석자수 : 연간 총 명)

② 아니오 → (Q13)

Q13. 귀하의 부서는 부정수급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대응 수준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교육에 부서원을 참석시킨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13-1. 2018년 기준('18.1.1~12.31) 교육훈련 참여 횟수 및 참석자 수
(참여회수 : 연간 회) (참석자수 : 연간 총 명)

② 아니오 → (Q14)

Q14. 귀하의 부서는 부정수급 예방과 감소 등을 위해 해당사업의 관련 보조사업자 및 제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14-1. 2018년 기준('18.1.1~12.31) 지도점검 횟수 및 기관 수
(지도점검 회수 : 연간 회) (지도점검 기관수 : 총 개소)

② 아니오 → (Q15)

③ 비해당 → (Q15) ※ 해당 사업에 보조사업자 및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Q15. 해당 사업의 보장기관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명 :

※ 보장기관 :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보장기관 예시 : 광역시도, 시군구청, 읍면동 등 (만약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소관부서 외에 보장기관이 없는 경우 중앙부처 소관부서명을 기입)

Q16. 위(Q15)에 응답된 보장기관은 해당사업의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Q17

Q16-1.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후 Q17)

② 아니오 →

기관명

※ 예시 : 각종 공사와 공단, 지역사회활센터, 보훈(지)청, 진흥원, 각종 재단 등

Q17. 본 사업이 해당되는 예산서 상의 사업단위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Q17-1로)

① 단위사업

② 세부사업

③ 내역사업

④ 기타()

Q17-1. 본 사업의 예산서 상의 사업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후 17-2로)
(복수의 사업이 합쳐진 사업인 경우, 모든 사업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예산상 사업명 | <input type="text"/> |
|---------|----------------------|

Q17-2. 본 사업의 예산(2019년)을 기입해 주십시오.

(복수의 사업이 합쳐 경우 합산된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Q18.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

Q18-1. 국고보조금상의 사업명은 무엇입니까?

① 예 →

사업명

② 아니오 → Q19 응답후

Q19. 본 예비조사에 소요된 시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간이 아닌 실제 투입된 시간만 기입)

총 시간

- 조사표 종료 -